

2022년 청소년사업 안내(I)

2022. 2.



여성가족부



제1편 2022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I. 청소년정책 현황	3
II. 2022년도 사업 주요사항	10
III. 2022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19

제2편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I. 청소년정책위원회	63
II.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64
III.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	68
IV. 2021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청소년 분야)	74

제3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I. 청소년 참여 증진	79
II.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146

제4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I.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89
II.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238
III.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	290
IV.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299
V.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320



제1편 2022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I. 청소년정책 현황	3
II. 2022년도 사업 주요사항	10
III. 2022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19

제2편 청소년 복지사업 현황

I.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63
II.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111
III.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56
IV. 청소년쉼터 운영	187
V.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374
VI.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402
VII.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437
VIII.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508
IX.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553
X.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665

제3편 청소년 보호사업

I.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관리	735
II.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	773
III.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	835
IV.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845
V.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857
VI.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888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사업 담당과 및 연락처 〉

구 분	담 당 과	전 화 번 호
청소년 참여 증진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34 02-2100-6249(운영위)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청소년정책과	02-2100-623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정책과	02-2100-6242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7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청소년정책과	02-2100-623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9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지원사업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48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점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2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9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7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7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7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7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5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6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7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6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308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1 PART

2022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 I. 청소년정책 현황
- II. 2022년도 사업 주요사항
- III. 2022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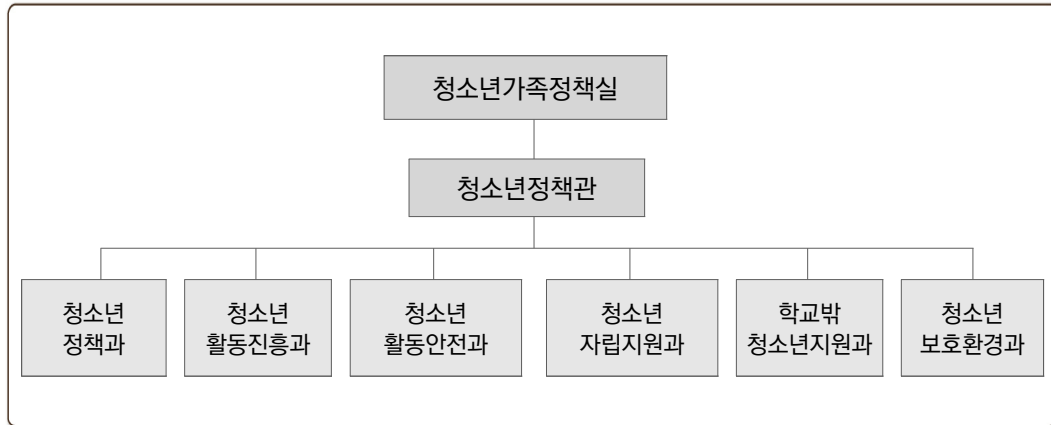
청소년정책 현황

1

청소년정책 연혁

〈시기〉	〈담당기구〉	〈주요기능〉
'85. 2 ~ '88. 6	청소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청소년정책심의관)	○ 청소년 선도·지도·육성·보호에 관한 종합기획 시도, 문제 청소년 중심 소극적 행정
	↓	
'88. 6 ~ '90. 9	체육부 청소년국	○ 청소년 보호·육성·선도·지원에 관한 조정·총괄 시도
	↓	
'90. 9 ~ '93. 3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 선도·지도·보호·육성·교정·지원 등을 청소년 육성으로 개념 및 내용 정립 ○ 청소년기본법제정('91.12.31)
	↓	
'93. 3 ~ '98. 2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 청소년보호위원회설치('97.7.7)	○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93.9) ○ 청소년육성 중 청소년보호업무 별도 설정 ○ 청소년보호법제정('97.3.7)
	↓	
'98. 2 ~ '05. 4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98.7) ○ 청보위 총리실소속으로 분리('98.2.28) ○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수립('03.12)
	↓	
'05. 4 ~ '08. 2	(국가)청소년위원회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보위 통합, 국무총리실 소속의 청소년위원회 설치('05.4.27) ○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변경('06.3.30)
	↓	
'08. 3 ~ '10. 3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통합 ○ 제4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수립('08.12)
	↓	
'10. 3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업무 여성가족부로 이관 ○ 제4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수정('10.11) ○ 제5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수립('12.12)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5.28)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신설('15.2.26) ○ 제6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수립('18.3)

■ 조 직



■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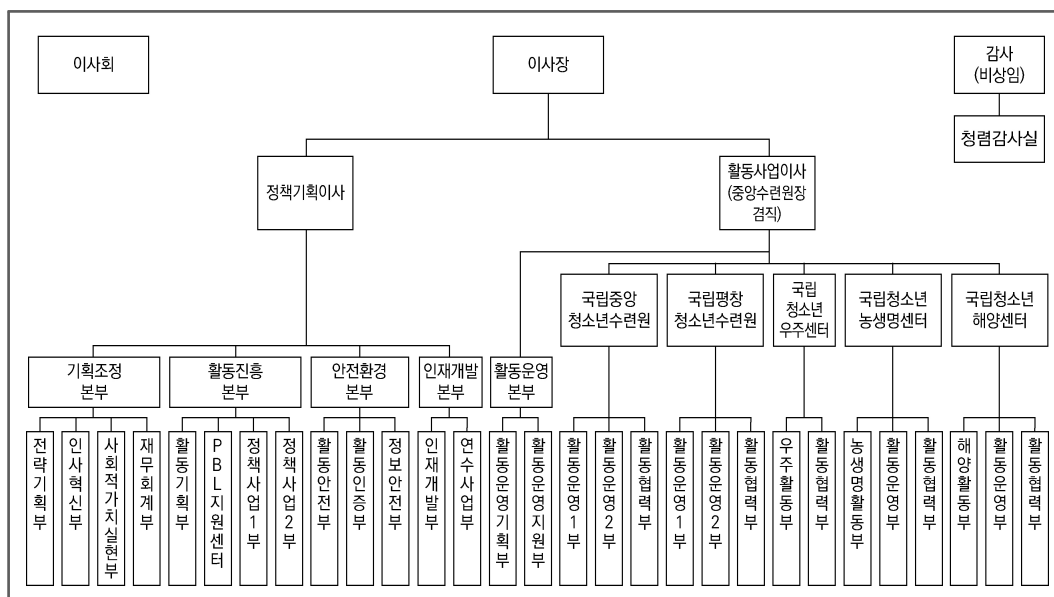
청 소 년 정 책 과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청소년정책 기반 확대, 청소년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청소년 권리증진, 청소년 참여확대, 청소년관련 행사 등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국제교류,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정책 총괄,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국공립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국립수련원 운영·관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평가 실시 등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 복지정책 총괄,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상담·통합지원,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등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획·종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보호정책 총괄,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등 유해환경개선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개선,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매체물 역기능 해소 등

3 소관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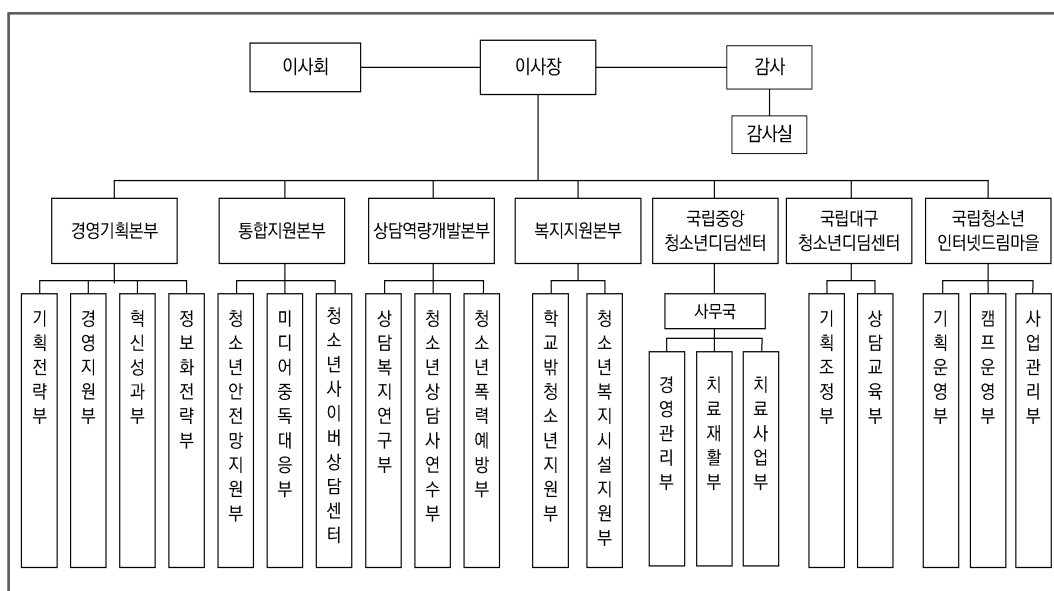
법률명	제정일	법률 주요내용	최근 개정내용
청소년 기본법	'91.12.31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20.5.19 개정, 20.11.20.시행〉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근거 마련,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기준일 명시,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신설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04.2.9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18.3.13 개정, '18.9.14 시행〉 ■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및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의 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청소년복지 지원법	'04.2.9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1.3.23. 개정, '21.9.24. 시행〉 ■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1.4.20. 개정, '22.4.21. 시행〉 ■ 강제로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근거 마련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및 '보건위생용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 변경
청소년 보호법	'97.3.7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지원 사항을 규정	〈'21.12.7, 개정, '22.1.1. 시행〉 ■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 까지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등

법률명	제정일	법률 주요내용	최근 개정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4.5.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상담·교육·자립·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체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지정 및 학교장의 동 센터 연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21.3.23. 개정, '21.9.24. 시행〉 ■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 연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원센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3년 주기로 지원센터의 운영 실적 평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	'18.12.18 (제정법)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위원회 및 정부지원 위원회 등 추진체계,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근거,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사항 등을 규정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81.4.13	(사)한국청소년연맹지원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	〈'11.5.19. 개정, '11.5.19. 시행〉 ■ 어려운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10.5.17. 개정, '10.5.17. 시행〉 ■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변경 (200만원 이하의 벌금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스카우트 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69.7.28	스카우트활동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	〈'11.5.19. 개정, '11.5.19. 시행〉 ■ 어려운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10.5.17. 개정, '10.5.17. 시행〉 ■ 스카우트 주관단체에서 정한 표지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변경(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1.12.31. 기준, 단위 : 개소)

번호	시 설 별	시설수	대상	기 능	이용기간	시설 종류
1	청소년수련관	191	청소년 (9~24세)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	-	활동 시설
2	청소년수련원	159	청소년 (9~24세)	숙박 제공 및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	-	활동 시설
3	청소년문화의집	294	청소년 (9~24세)	정보·문화·예술중심의 간단한 수련활동 실시	-	활동 시설
4	청소년특화시설	15	청소년 (9~24세)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	-	활동 시설
5	청소년야영장	32	청소년 (9~24세)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	-	활동 시설
6	유스호스텔	108	청소년 (9~24세)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	활동 시설
7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17	청소년 (9~24세)	지역의 청소년 활동 진흥, 역량개발, 참여 활성화 등 청소년지원체계 구축	-	지원 기관
8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238	위기청소년 (9~24세)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상담·보호· 의료·자립지원	-	이용 시설
9	청소년쉼터	134	가정 밖 청소년 (9~24세)	가출예방, 상담 및 보호, 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일시(7일이내) 단기(3~9개월) 중장기(3~4년)	생활 시설
10	청소년 자립지원관	10	쉼터 등 퇴소 청소년 (19~24세 이하)	쉼터 등 퇴소 후에도 추가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자립 여건 마련을 지원	1~2년	생활· 이용
11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15	소년법 처분 청소년 (1호 보호자감호위탁)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	처분기간 내	생활 시설
12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220	학교밖청소년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교육, 취업 등 자립지원	-	이용 시설
13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1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만 13~18세)	인터넷·스마트폰과 차단된 환경에서 상담· 교육·활동 등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	1주(7회) 2주(11회) 3주(3회) 4주(1회)	생활 시설
14	국립청소년 치료재활센터	2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 (만 9~18세)	상담·치유 등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	11박12일 (단기과정) 4주(오름과정) 16주(디딤과정)	생활 시설
15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8 (설치 추진중)	청소년 (만 15세 이상)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권의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부당처우 중재 해결, 찾아가는 노동권교육 운영 등	-	-

구 분	훈 격	포상 시기	대 상
청소년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5월	청소년단체 종사자, 청소년업무담당 공무원, 일반인, 단체·기관, 청소년
지방청소년활동정책 진흥 유공자 포상	장관표창	12월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지도자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보호 분야 유공자 포상	장관표창	12월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치료·재활 활동 청소년지도자
전국청소년지도자 대회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9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시상식	장관표창, 장관상	11월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우수 수행기관 및 개인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성과 보고대회	장관표창, 장관상	12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유공자, 유공기관, 우수사례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12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장관표창	12월	청소년단체·기관 등 종사자, 일반인, 단체·기관,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유공자 포상	장관표창	12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지도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보고대회	장관표창, 장관상	12월	유관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 학교 밖 청소년
전국 또래상담 성과보고대회	장관표창, 장관상	12월	우수학교, 우수 지도교사 및 지도자, 또래상담자
청소년보호유공자 표창	장관표창	12월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개선 활동 청소년지도자
매체분야 청소년 보호 유공자 포상	장관표창	12월	매체 분야 청소년보호활동 단체 및 개인

Ⅱ 2022년도 사업 주요사항

1 청소년정책과

사업명	주요내용	문의처
청소년 특별회의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 목적·기능 : 청소년이 발굴한 정책과제를 정부부처에 제안 ○ 구성 : 중앙 청소년참여위원회(선발직) 및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당연직)을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으로 위촉 ○ 운영 : 구성(1월~3월) → 출범식(5월) → 정책발굴활동(6월~9월) → 결과보고회(12월)	02-2100-6234
청소년 참여위원회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 목적·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 의견 반영 ○ 운영현황 : 전국 234개(중앙 1개, 지역 233개) ※ 개소당 시·도 1,000만원, 시·군·구 280만원 지원(국고보조율 50%) ○ 주요활동 :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제안,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포럼·토론회 참여 및 개최 등	02-2100-6234
청소년 우대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 우대기준 - 만 9~18세 청소년 또는 만 19~24세의 초·중·고 재학생 ○ 우대시설 - 대중교통,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등 ○ 우대내용 :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02-2100-6232

사업명	주요내용	문의처
청소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발급대상 : 만 9~18세 청소년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용도 : 공적 신분증, 청소년 이용시설 면제 또는 할인, 대중교통 및 가맹점 선불결제 가능 ○ 교통카드 : 3개(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신청인이 택일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02-2100-6232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대상사업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8~’22)」의 5대 영역 중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부문에 해당하는 시행계획 세부과제 및 포괄적 사업 *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등 ○ 평가지표 :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세부 평가지표(시·도 12개 지표, 시·군·구 11개 지표) 구성 ○ 결과활용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자체별 정책컨설팅에 활용	02-2100-623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 만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금액 : 생리용품 구입 비용 연 최대 144천원(월 12,000원) * 단, 19~24세는 5월부터 지원되며, 연 최대 96천원 지원 ○ 신청방법 :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모바일앱	02-2100-6242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6조 ○ 개최 : 지자체와 공동주최, 5월 중 3일 ○ 참석대상 :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일반국민 등 ○ 주요내용 :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멘토 특강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강연·체험·전시 프로그램 운영	02-2100-6234

사업명	주요내용	문의처
청소년의 달 기념식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6조 ○ 개최 : 5월(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막식과 통합 운영) ○ 참석대상 :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일반국민 등 ○ 주요내용 : 청소년육성 및 보호유공자 시상 등	02- 2100-6242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60조 ○ 포상대상 : 청소년단체 종사자, 청소년업무담당 공무원, 일반인, 단체·기관, 청소년 등 93명(개) ※ 포상규모는 해당연도 공고에 따름 ○ 포상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민총리표창, 장관표창 ○ 공모시기 : 매년 1월 ~ 2월 ○ 포상시기 : 매년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식	02- 2100-6242
청소년 푸른성장 대상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60조 ○ 포상대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성인·단체,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청소년동아리 등 ○ 훈격/상금 : 장관표창 / 총 50백만원 ○ 공모시기 : 매년 9월~10월 ○ 포상시기 : 매년 12월,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시상식	02- 2100-6242

사업명	주요 내용	문의처
지역청소년 활동정책 진흥업무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37조 ○ 주요기능 : 청소년 활동 전달체계 역할, 지역사회 청소년단체·청소년기관(시설)과 연계·협력 기능 강화 ○ 운영 : 전국 17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진흥원 협력 운영	02-2100-625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 ○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중3) - 우선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 기타대상 :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 청소년 ○ 지원내용 :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 건강한 성장 및 자립역량 배양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02-2100-6259
청소년 어울림 마당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 및 제61조 ○ 주요내용 : 공연, 경연, 전시,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상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운영 ○ 운영기간 : 3월 ~ 12월(시·도 연간 8회, 시·군 연간 5회 이상) ○ 운영 : 지자체별로 운영기관 공모 선정	02-2100-6248
청소년 동아리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 및 제64조 ○ 주요내용 :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를 가진 청소년들에 의해 자치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동아리 육성·지원 ○ 지원요건 - 10명 이상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연중 10회 이상 활동 가능한 동아리 - 구성 이후 6개월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동아리 ※ 신규동아리 지원시 인원수 및 활동경력이 미달되더라도 동아리선정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 가능 - 동아리 지도자가 반드시 배치된 동아리	02-2100-6248
청소년 운영위원회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 목적·기능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 반영 ○ 설치현황 : 전국 331개 ○ 운영 :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 개선·개선	02-2100-6249
청소년 지도사 양성 및 보수교육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제24조의2 ○ 사업목적 : 청소년 활동 지도 분야의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지식 함양 및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지도사 양성 : 등급별(1·2·3등급) 자격검정(필기, 면접) 합격 후 자격연수 이수자(30시간 이상)에게 자격증 발급 - 보수교육 : 2년마다 15시간 이상 이수 필요	02-2100-6249

사업명	주요내용	문의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제19조2 ○ 대상시설 :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 등 ○ 사업내용(실시기관) - 종합 평가 :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체계, 프로그램 운영상황, 인사 및 조직 등 운영 관련 제반 사항 평가 - 안전·위생점검 : 안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 결과공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http://www.youth.go.kr)공개	02-2100-6262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 지원시설 - 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한 공공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등 ○ 지원내용 - 수련시설 지도사 기본급(50%) 지원(정규직전환 수당도 지원 가능)	02-2100-6269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 신고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수련활동 및 비숙박 수련활동 중 대규모이거나 위험도 높은 활동 ○ 신고처 :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시·군·구 ○ 신고인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운영하려는 자 ○ 신고방법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http://www.youth.go.kr)	02-2100-6267

사업명	주요내용	문의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청소년안전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교·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02-2100-6277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 ○ 사업목적 :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청소년동반자 배치현황 : 1,363명('22년 기준)	02-2100-6277
청소년쉼터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제31조, 제32조 ○ 사업목적 :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 지원대상 : 1순위 : 9~19세 미만, 2순위 : 19~24세	02-2100-6278
청소년자립 지원관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32조 ○ 사업목적 : 시설 퇴소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 지원대상 : 1순위 : 시설 퇴소 후기청소년, 2순위 : 그 밖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02-2100-6278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이용대상 및 지원내용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 청소년을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 보호기간 : 보호기간 6개월, 법원(소년부 판사)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기간 연장가능	02-2100-6277
청소년 상담사 양성 및 보수교육	○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 사업목적 :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상담 인력 선발 및 양성,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지식 함양 및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등급별(1·2·3등급) 필기·면접시험 합격 후 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증 발급 - 보수교육 : 매년 8시간 이상,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청소년단체, 청소년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	02-2100-6277

사업명	주요내용	문의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연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운영 - 학업중단숙려제, 전국 교육청에 설치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참여 제도화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를 위해 법률개정 ※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 없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연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02-2100-63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법적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센터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20개소) ○ 지원내용 - (학업지원)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 (취업지원) 적성검사, 직업탐색, 직업체험 등 직업역량강화 사업 및 내일이룸학교 운영 지원 등 - (의료·복지) 건강검진 및 주거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02-2100-6317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 ○ 검진대상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단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건강검진은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 신청장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검진내용 : 상담 및 진찰, 혈액검사, 간염검사, 결핵검사 및 구강검진 등	02-2100-6315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15조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 (단, 생활·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등	02-2100-6313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24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 ※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사업목적 : 중도입국·다문화·북한이탈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 지원내용 : 맞춤형 정보제공, 기초 한국어, 진로지도, 문화 활동 등	02-2100-6316

사업명	주요 내용	문의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조, 제48조 ○ 목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흡연·음주 등 유해환경 개선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 주요활동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02-2100-6299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 대상 : 만 19세 미만 청소년 ○ 주요내용 -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실시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수준별 맞춤형 상담·치유 등 종합서비스 운영	02-2100-6296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 자격요건 -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등 ○ 역할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예방·해소사업 상담치료 서비스 지원, 인터넷치유캠프 운영	02-2100-6297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 마을 운영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 설립목적 :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치료 및 상담, 대안활동 등 종합적·전문적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해소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사업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위험군(주의사용자군 + 위험 사용자군) 청소년	02-2100-6296

사업명	주요내용	문의처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운영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설립목적 : 정서·행동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치료·보호·교육 등 종합적·전문적 기숙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영위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사업대상 : 정서·행동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만 9~18세 청소년	02-2100-6308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 감시체계 강화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27조 등 ○ 목적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 주요내용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의 본인확인제도 이행여부 점검 - 인터넷신문의 청소년 유해성광고 게재현황 점검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모니터링	02-2100-6293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제8조의2, 제52조의3 ○ 목적 :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해결 및 청소년 근로 보호 인식 제고를 통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 청소년 및 고용주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및 캠페인 - 청소년근로권의 침해 정기 점검·단속	02-2100-6294

Ⅲ

2022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1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

■ 청소년증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신청	○ 대리인 증명 서류 (예시) - (공통)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 후견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대리인에게 별도 요구하지 않고 처리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 대리인 증명 서류 (예시) • 공통 : <u>대리인 신분증</u> • 친권자 : <u>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u> * <u>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u> • 후견인 : <u>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u> •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u>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u> ※ <u>청소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음</u>	
발급비용	○ 청소년증 발급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우송료(3,820원)는 신청인 부담 * 청소년증 발급 단가 : 비교통 4,500원, 교통 5,500원	○ 청소년증 발급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우송료(3,820원)는 신청인 부담 * <u>청소년증 발급 단가 : 비교통 4,500원, 교통 5,600원</u>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교 부	○ 시·군·구청장이 청소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교부인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교부	○ 시·군·구청장이 청소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u>청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교부일과 수령자의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며, 행복e음 시스템에서 교부처리</u>	
파기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 청소년증을 파기해야 함(시·군·구에서 취합하여 파기) -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으로 인해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훼손된 청소년증 -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 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 청소년증을 파기해야 함(시·군·구에서 취합하여 파기) -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 <u>기재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하는 경우 기존 청소년증</u> -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 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청소년증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지원대상	○ 지역 수요에 따라 예비 4학년도 참여 가능(3학년 10월부터)	○ 지역 수요에 따라 예비 4학년(3학년), 예비 중학생(6학년)도 참여 가능(10월부터)	
지원내역		○ (주말형) 학교 방학기간 중 평일 운영 가능	
유휴교실 활용절차		○ 용도변경 신청 절차 (삭제)	
운영요건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기관 내 독립된 부서(팀)로 설치·운영을 권장하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업무만 전담하도록 함	
운영유형 및 인원	○ (일반형) <u>기본지원형</u> , <u>농산어촌형</u> , <u>장애형</u> , <u>다문화형</u> , <u>인원축소형</u>	○ (일반형) <u>기본형</u> , <u>농산어촌형</u> , <u>장애형</u> , <u>다문화형</u> , <u>탄력운영형</u>	
		○ 기본형과 농산어촌의 1개반(30)은 지역적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사전 승인에 따라 최소 20명 이상으로 예외적 운영 가능	
프로그램 운영기준		○ (주말형) 학기 초 청소년(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분기별 및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참가대상자 선정기준		○ (주말형) 프로그램 운영기간(연간, 반기, 분기)별 수시모집 가능	
청소년 이용절차		○ (주말형) 별도의 증빙서류 및 지원 협의회 적격여부 심의 필요 없음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청소년 출결관리		○ (주말형) 전자출결관리시스템 또는 별도 출석부 관리	
귀가지도 관리		○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학 버스 운영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운영	
운영인력 자격요건 (담임)	○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 예정자	
운영인력 근무환경		○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종사자 휴가 부여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무시간(주 40시간), 휴가, 휴계시간을 준수하도록 함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연간 지원협의회 운영계획 수립·시행 ○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보고서(3월 이내) 및 지원협의회 운영결과 보고서(11월)를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과후 아카 데미 지원단은 우수 운영사례 선발·공유	○ 연간 지원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시행(주말형 제외) ○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보고서(3월 이내) 및 지원협의회 운영결과 보고서(11월)를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신규기관의 경우 참여청소년 모집단계 에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야 함(지역사회 추천 전형 청소년 선발과 관련)	
지역자원 관리	○ 연계된 지역자원을 포함하여 전체 적인 지역자원의 체계적 관리	○ 지역의 연계자원 리스트를 작성 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체계적 관리	
긴급돌봄 지원		○ 긴급돌봄의 경우 운영기관의 교급 (초등/중등)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예산편성 기준	○ 장애형의 경우 인건비 외 예산에서 보조인력 채용 가능 (연간 8,000천원) ○ 학교 등 유휴시설 활용 운영기관 지원 없음	○ 장애형, 탄력운영형의 경우 인건비 외 예산에서 보조인력 채용 가능 (연간 8,000천원) ○ 학교 등 유휴시설 활용 '22년 신규 운영기관 추가지원(30,000천원)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사업 종합평가	○ 평가주기 : 2년에 1회	○ 평가주기 : 3년에 1회	
컨설팅 운영		○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이 평가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동료(멘티-멘토) 컨설팅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점검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평가대상	○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	○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청소년야영장	변경																				
평가지표	○ 시설운영·관리체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운영 전반 사항에 대하여 정량 및 정성지표로 구성 * 평가지표(안)에 대하여 피 평가시설에 대해 의견수렴 및 설명회 등을 거쳐 지표 확정	○ 코로나19로 운영을 하지 못한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 또는 완화하고 청소년 이용률 등 일부 지표는 실태만 조사하고 평가 미반영 * 평가지표(안)에 대하여 피 평가시설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21년 말 지표 확정	변경																				
평가등급	○ 시설별 총 점수 기준으로 5단계 등급(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미흡)으로 부여 <table><tr><th>평가 등급</th><th>최우수</th><th>우수</th><th>적정</th><th>미흡</th><th>매우 미흡</th></tr><tr><td>평가 점수 (100점 기준)</td><td>90점 이상</td><td>80점 이상 90점 미만</td><td>70점 이상 80점 미만</td><td>60점 이상 70점 미만</td><td>60점 미만</td></tr></table>	평가 등급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 미흡	평가 점수 (100점 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 시설별 총 점수 기준으로 3단계 등급(적정, 보 완,미흡)으로 부여 <table><tr><th>평가등급</th><th>적정</th><th>보완</th><th>미흡</th></tr><tr><td>평가점수 (100점 기준)</td><td>80점 이상</td><td>70점 이상 80점 미만</td><td>70점 미만</td></tr></table>	평가등급	적정	보완	미흡	평가점수 (100점 기준)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미만	변경
평가 등급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 미흡																		
평가 점수 (100점 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평가등급	적정	보완	미흡																				
평가점수 (100점 기준)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미만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 연계	○ 7개 점검분야(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위생) 중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종합평가' 등급 부여시 미흡이하*로 조정 * 1개 분야 부적합 : 미흡 등급, 2개 분야 이상 부적합 : 매우미흡 등급	○ 7개 점검분야(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위생) 중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종합평가' 등급 부여시 보완이하*로 조정(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 * 1개 분야 부적합 : 1등급 하향 조정, 2개 분야 이상 부적합 : 미흡 등급	변경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결과 통보 및 공개 - (여가부) 교육부 및 지자체에 평가 결과 통보 및 대국민 공개 * 홈페이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공개	○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결과 통보 및 공개 - (여가부) 교육부 및 지자체에 평가 결과 통보 및 대국민 공개* * 홈페이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공개	변경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 (교육부) 수학여행·수련활동 시 종합평가 결과 활용 - (기초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개선요구 및 미이행시 시정명령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개별 시설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결과 보고(여가부 및 기초 지자체) ○ 평가거부 시설에 대한 조치 - (여가부)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시 거부시설임을 명시 - (교육부) 학교대상 프로그램 참여 제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현장체험 학습 운영 매뉴얼) - (지자체) 과태료부과,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별도의 지도점검 실시 ○ 미흡·매우미흡 등급 시설에 대한 조치 - (여가부) 지자체에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여부 확인(년 2회 이상)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미흡 및 매우미흡 시설에 대한 컨설팅, 개별시설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결과 보고(여가부 및 기초 지자체) - (기초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개선요구 및 미이행시 시정명령 -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컨설팅 후 개선 추진 ○ 최우수등급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여가부) - 최우수등급 시설 인증 표식 게시 (2년간) - 장관상 시상 및 부상 제공* 등 *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등급 시설 중에서 선정(시설유형 고려)	- (교육부) 수학여행·수련활동 시 종합평가 결과 활용 - (기초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개선요구 및 조치결과 확인, 미이행시 시정명령 ○ 평가거부 시설에 대한 조치 - (여가부)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시 거부시설임을 명시 - (교육부) 학교대상 프로그램 참여 제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현장체험 학습 운영 매뉴얼) - (지자체) 과태료부과,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별도의 감독 실시 * 종합평가 자료제출 거부 및 지적사항 미이행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흡·매우미흡 등급 시설에 대한 조치 - (여가부) 지자체에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여부 확인(년 2회 이상) - (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피드백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미흡 등급이하 시설에 대한 컨설팅 - (기초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개선요구 및 미이행시 시정명령 - (수련시설) 지적사항 개선 추진 ○ 성적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여가부) - 성적 우수시설(평가심의위원회 선정)에 대해 “우수시설” 인증 표식 게시(2년간) - 장관상 시상 및 부상 제공 등 *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수시설 중에서 선정(시설유형 고려)	변경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점검대상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전수 및 '20년 휴지 등으로 미점검된 시설 * 흡수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짝수해: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여성가족부: 민간 설치시설 전수 및 공립 시설의 모험시설 및 가스 시설 - 지방자치단체: 관내 공립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타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도 포함	변경
점검일정 및 세부 점검방법	(점검일정) -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지자체 현장점검 - (하반기) 취약시설*에 대한 우리 부 및 전문기관 합동 점검 * 샌드위치패널·모험시설·숙박시설 설치 시설, 19년 점검 보통이하 등급시설 등 (점검결과) ~'21.6.30까지 점검표 제출(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안전부) (안전교육이수) 지자체주관 안전 점검을 위해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므로 점검 인력은 교육 이수('21.1월~2월) 후 점검 실시 ※ 세부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참조	<지자체 점검> (점검기간) 4월~10월 중 (점검대상) 관내 공립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점검결과) '22. 10. 30까지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공문제출 - 지자체 공무원 대상 대면 또는 비대면 안전점검관련 교육 실시 ※ 세부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참조	변경

■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인건비 편성	- 기본급: 2020년 대비 약 0.9% 인상 - 청소년지도사 1급: 2,038천원 - 청소년지도사 2급: 1,934천원 - 청소년지도사 3급: 1,867천원	- 기본급: 2021년 대비 약 1.4% 인상 - 청소년지도사 1급: 2,064천원 - 청소년지도사 2급: 1,960천원 - 청소년지도사 3급: 1,894천원	변경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개요	다. 설치 현황 ○ 전국 23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다. 설치 현황 ○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변경
기능 및 역할	라. 기능 및 역할 지역 특성화 사업 (예시) ○ 비행 영역 : 청소년폭력예방 및 가·피해 청소년 지원, 소년 보호 처분자 지원	라. 기능 및 역할 지역 특성화 사업 (예시) ○ 구조 영역 :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지원 ○ 비행 영역 : 청소년폭력예방 및 가해 청소년 지원, 소년보호 처분자 지원	변경
설치·운영 기준	라. 안전기준 ※ 세부사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전 매뉴얼'(2020년 중 배포 참고)	〈삭제〉 * 既 배포 및 내용 중복	삭제
	마. 운영 기준 - 청소년상담사가 직원 수의 1/3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마. 운영 기준 - 청소년상담사가 직원 수의 1/3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해당 기준의 "직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명시된 종사자를 의미	신설
	마. 운영 기준 - 위탁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함	마. 운영 기준 -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함	변경
	바. 개인정보보호	바.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s://www.privacy.go.kr/a3sc/per/tec/chk/checkToolReq.do)에서 업무용PC 보호조치 점검도구 신청 가능	신설
조직 구성	가. 공통 사항 ○ ~ '실행위원회'를 두어~	가. 공통 사항 ○ ~ '실무위원회'를 두어~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일괄 반영	변경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구성 - 장 1명,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	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구성 - 장 1명,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 수행 직원	변경												
인사 관리	나. 종사자 결격 사유 5) 직원 채용 시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작성 비치	나. 종사자 결격 사유 5) 직원 채용 시 센터 규정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등 서류 작성 비치	변경												
	바. 종사자 보수 ○ 기본방향 - 근로기준법상 2021년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 - 2021년 보수수준이 2020년에 비해 높아지도록 치우개선 방안 마련	바. 종사자 보수 ○ 기본방향 - 근로기준법상 2022년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 - 2022년 보수수준이 2021년에 비해 높아지도록 치우개선 방안 마련	변경												
인사 관리	바. 종사자 보수 ○ 보수의 구성 및 지급방향 - 생활지도원의 연봉은 직무 난이도, 전문성, 근무시간 등에 따라 정하되,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8,720원) 이상 준수	바. 종사자 보수 ○ 보수의 구성 및 지급방향 - 생활지도원의 연봉은 직무 난이도, 전문성, 근무시간 등에 따라 정하되,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9,160원) 이상 준수	변경												
	바. 종사자 보수 〈지급 수당의 종류 및 내용(참고)〉 <table><tr><th>종 류</th><th>지 급 내 용</th></tr><tr><td>정액급식비</td><td>• 월 14만원</td></tr><tr><td>기타</td><td>•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근속수당 등 기타 제 수당</td></tr></table>	종 류	지 급 내 용	정액급식비	• 월 14만원	기타	•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근속수당 등 기타 제 수당	바. 종사자 보수 〈지급 수당의 종류 및 내용(참고)〉 <table><tr><th>종 류</th><th>지 급 내 용</th></tr><tr><td>정액급식비</td><td>•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월 14만원)</td></tr><tr><td>기타</td><td>•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기타 제 수당 * 예시) 청소년상담사 1급 : 5만원, 2급 : 3만원, 3급 : 1만원</td></tr></table>	종 류	지 급 내 용	정액급식비	•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월 14만원)	기타	•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기타 제 수당 * 예시) 청소년상담사 1급 : 5만원, 2급 : 3만원, 3급 : 1만원	변경
종 류	지 급 내 용														
정액급식비	• 월 14만원														
기타	•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근속수당 등 기타 제 수당														
종 류	지 급 내 용														
정액급식비	•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월 14만원)														
기타	•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기타 제 수당 * 예시) 청소년상담사 1급 : 5만원, 2급 : 3만원, 3급 : 1만원														
	사. 종사자 역량 강화 - 모든 직원(센터장 제외)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간 15시간 이상 업무관련 교육(슈퍼비전 제외)을 수료해야 함	사. 종사자 역량 강화 - 모든 직원(센터장 제외)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간 15시간 이상 업무관련 교육(슈퍼비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제외)을 수료해야 함	변경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인사 관리	사. 종사자 역량 강화 ② 법정 교육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사. 종사자 역량 강화 ② 법정 교육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함	신설
	사. 종사자 역량 강화	사. 종사자 역량 강화 ③ 이직자 교육 이수 기준 - 이직 전 법정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종사자 법정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연 단위 기준) 가. 센터로 이직한 경우(예 : A청소년상담복지센터 → B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 센터 내 근무형태가 변경된 경우(예 : 계약직→정규직) - 원칙적으로 센터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는 연 15시간 이상의 업무 관련 교육과 법정교육(15시간 업무관련 교육과는 별도로 이수)	신설
	사. 종사자 역량 강화 ○ 자격증 보수 교육 등	사. 종사자 역량 강화 ○ 자격증 보수 교육 등 ※ 상담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인사, 회계, 총무, 시설관리, 운전원 등 청소년상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종사자) ※ 보수교육 참여 시 근무시간 내 이수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함	신설
	사. 종사자 역량 강화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노력	사. 종사자 역량 강화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노력 ※ 예산 범위 내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자격수당 등 지급 가능	신설
	아. 종사자 보호 - 휴게공간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마련	아. 종사자 보호 - 휴게공간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22.8.18 시행)에 따라 사업장 내 휴게공간 마련 필요	신설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평가 및 현장점검	가. 센터 평가 ○ 2020년 센터 평가 결과 최우수 및 우수 센터 현황 공개(보도자료 등)	가. 센터 평가 ○ 2022년 컨설팅 대상 : 2022년 신규 설치 센터 및 컨설팅 희망 센터	변경																
	나. 현장점검 - (점검기간) 4~6월 ※ 단, '21년 신규 개소 센터는 개소 후 3개월 내 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함	나. 현장점검 - (점검기간) 4~6월 ※ 단, '22년 신규 개소 센터는 개소 후 3개월 내 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함	변경																
	나. 현장점검 - (점검결과) 시·도에서 시· 군·구 자체 점검 결과를 취합 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 '21.7.31.까지 여성가족부로 공문 제출	나. 현장점검 - (점검결과) 시·도에서 시·군·구 자체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 '22.7.31.까지 여성가족부로 공문 제출	변경																
	나. 현장점검 - (주제) 여성가족부, 시·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나. 현장점검 - (주제) 여성가족부, 시·도,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 시·도센터는 시·군·구센터 현장점검 시 지원 가능	변경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 운영		<신설>	신설																
별표 1	<table><tr><th>센터 수</th><th>시·도</th></tr><tr><td>25</td><td>서울</td></tr><tr><td>10</td><td>인천</td></tr><tr><td>238개소</td><td></td></tr></table>	센터 수	시·도	25	서울	10	인천	238개소		<table><tr><th>센터 수</th><th>시·도</th></tr><tr><td>26</td><td>서울</td></tr><tr><td>11</td><td>인천</td></tr><tr><td>240개소</td><td></td></tr></table>	센터 수	시·도	26	서울	11	인천	240개소		변경
센터 수	시·도																		
25	서울																		
10	인천																		
238개소																			
센터 수	시·도																		
26	서울																		
11	인천																		
240개소																			
별표 2		<변경>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종사자 자격 기준 수정	변경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별표 3	○ 전문상담원·생활지도원		○ 전문상담원(센터장·팀장·팀원)·생활지도원		변경
	구 분	경 력	구 분	경 력	
	“갑” 경력	○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 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갑” 경력	○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 상담원 근무경력 (다만, 법인단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소년 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6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기관’은 동일하게 인정)	변경
	○ 행정원		○ 행정원		
구 분	경 력	구 분	경 력		
“갑” 경력	○ 국가,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행정실무 경력(상근) ○ 군 의무복무경력	“갑” 경력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복지지원 기관에서의 행정실무 경력(상근) ○ 국가, 학교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행정실무 경력(상근) ○ 군 의무복무경력		
별표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		〈변경〉		변경
별표 5	〈원고료 및 강사료 지급 기준〉 〈다음 기준에 따라 원고료 및 강사료를 지급하며, 센터 및 지 자체 예산 내에서 운영하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원고료 및 강사료 지급 기준〉 〈원고료, 강사료 등은 자체규정에 의해 책정 및 집행.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 지자체 규정 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원고료 및 강사료를 지급하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변경
	나. 강사료 사례비 지급 기준		나. 강사료 사례비 지급 기준 ○ 비대면 강의의 경우에도 대면 강사료에 준해서 지급 가능		신설
	다. 연구, 심사, 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지급기준		다. 연구, 심사, 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지급기준 ○ 비대면 회의(위원회) 등의 경우에도 대면에 준해서 지급 가능		신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개요	다. 사업내용 ○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실행위원회 운영, 필수연계 기관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 조치	다. 사업내용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실무위원회 운영, 필수연계기관 상호 연계 및 1388청소년지원단 등 민간기관 협력 촉진 조치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일괄 수정 반영	변경
	다. 사업내용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이 설치된 지자체는 「2021년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사업 안내」 참고	다. 사업내용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이 설치된 지자체는 「2022년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사업 안내」 참고	변경
	마. 현 황 ○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안전망 운영(계획) : 총 238개	마. 현 황 ○ 2022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안전망 운영(계획) : 총 240개	변경
	바. 성과목표	바. 성과목표 - 목표치 삭제 *** 성과목표치는 지자체 합동평가 및 센터 종합평가를 통해 각 지역별·센터별 설정	삭제
	아. 추진 체계 ○ 청소년안전망 운영 체계 ● 상담채널 : 청소년전화 1388, 문자, 사이버상담	아. 추진 체계 ○ 청소년안전망 운영 체계 ● 상담채널 : 청소년상담1388 (전화·모바일·사이버상담)	변경
청소년 안전망 구성	가. 청소년안전망 구성 4) 필수연계기관 이외의 협력 강화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복지관	가. 청소년안전망 구성 4) 필수연계기관 이외의 협력 강화	변경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청소년 안전망 구성	다.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실행위원회의 운영	다.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실무위원회의 운영 * 실무위원회 참여위원 대상 자문수당 지급 관련 : 본 지침 II.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7. 회계처리-라. 각종 수당 등의 지급 참조	신설
	마. 1388청소년지원단 구성 및 운영 4) 운 영 ○ 반기별 하부지원단 운영 및 연 1회 이상 1388청소년 지원단장 중심의 총회 실시(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마. 1388청소년지원단 구성 및 운영 4) 운 영 ○ 1388청소년지원단장 중심의 총회 연 1회 실시 (단, 하부지원단은 자율적으로 운영,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 ※ 총회 운영시 하부지원단 2개 이상 참가 필수	변경
	마. 1388청소년지원단 구성 및 운영 4) 운 영 ○ 지원단 위촉절차 - 희망기관·단체·개인 신청서 제출 → 신청 기관 단체에 대한 적격성 심사(지자체) → 심사 후 결정여부 통보(지자체) → 위촉장 수여 (지자체장)	마. 1388청소년지원단 구성 및 운영 4) 운 영 ○ 지원단 위촉절차 - 희망기관·단체·개인 신청서 제출 → 신청 기관 단체에 대한 적격성 심사(지자체, 센터) → 심사 후 결정여부 통보(지자체) → 위촉장 수여(지자체장)	변경
청소년 안전망 운영	가.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12) ~9세 이상 24세 이하~	가.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12)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변경
	가.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가.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시설·종사자 안전관리 - 24시간 운영되는 일시보호소의 특성 상 시설 및 종사자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입소 청소년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운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 참고	신설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청소년 안전망 운영	나. 상담전화(청소년전화 1388) 설치·운영 ○ 악성내담자 대응조치방안 마련 • 내담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휴게 시간 제공 및 성희롱의 경우 남성 상담사 등 악성내담자로부터 분리, 심리치료 지원 및 복무 편의 조치 지원 등 자체 보호조치 규정 마련·운용	나. 상담전화(청소년전화 1388) 설치·운영 ○ 악성내담자 대응조치방안 마련 • 내담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휴게 시간 제공 및 성희롱의 경우 타 상담사 등 악성내담자로부터 분리, 심리치료 지원 및 복무 편의 조치 지원 등 자체 보호조치 규정 마련·운용	변경									
	나. 상담전화(청소년전화 1388) 설치·운영 ○ 청소년전화 1388 모니터링 - 상반기 및 하반기 연2회 청소년 전화 1388운영실태 모니터링 실시 * 청소년전화 1388 수신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전화 수신 및 상담내용에 유의	나. 상담전화(청소년전화 1388) 설치·운영 ○ 청소년전화 1388 모니터링 실시 * 추후 별도계획 수립하여 통보	변경									
	나. 상담전화(청소년전화 1388) 설치·운영 * 단, 시·군·구에서의 시·도 등으로의 착신전환 횟수·사유 등도 모니터링 예정임(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전화 착신일 경우 모니터링 시 감점 처리)	나. 상담전화(청소년전화 1388) 설치·운영	삭제									
	다.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2) 긴급지원 서비스 <table><tr><th>구 분</th><th>지급 기준(안)</th></tr><tr><td>식비 및 간식비</td><td>• 1인당 10,000원 이내/1회</td></tr></table>	구 분	지급 기준(안)	식비 및 간식비	• 1인당 10,000원 이내/1회	다.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2) 긴급지원 서비스 <table><tr><th>구 분</th><th>지급 기준(안)</th></tr><tr><td>식비 및 간식비</td><td>• 식비 : 1인당 10,000원 이내/1회 • 간식비 : 1인당 5,000원 이내/1회</td></tr><tr><td>생계비</td><td>• 1인당 400,000원 이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타 법령의 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자가 즉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td></tr></table>	구 분	지급 기준(안)	식비 및 간식비	• 식비 : 1인당 10,000원 이내/1회 • 간식비 : 1인당 5,000원 이내/1회	생계비	• 1인당 400,000원 이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타 법령의 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자가 즉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구 분	지급 기준(안)											
식비 및 간식비	• 1인당 10,000원 이내/1회											
구 분	지급 기준(안)											
식비 및 간식비	• 식비 : 1인당 10,000원 이내/1회 • 간식비 : 1인당 5,000원 이내/1회											
생계비	• 1인당 400,000원 이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타 법령의 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자가 즉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청소년 안전망 운영 인력 관리	- (시·군·구 청소년안전망 인력) 2~3명	- (시·군·구 청소년안전망 인력) 2~3명 ※ 청소년안전망 운영 인력의 경우, 고위기 청소년 대상 상담지원 수행인력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	신설
청소년 안전망 사례 및 실적 관리	나. 실적의 상시적 등록 관리	나. 실적의 상시적 등록 관리 - 직영센터의 경우 행정포털(새올 행정) 및 전자결재, 메일 계정 등 사용권한 부여 가능	신설
예산 편성 및 집행	나. 예산 편성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 대상: '21년 이전의 기존 정규직 종사자 및 '21년 연도 중 정규직 전환 종사자	나. 예산 편성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 대상: '22년 이전의 기존 정규직 종사자 및 '22년 연도 중 정규직 전환 종사자	변경
	나. 예산 편성 3) 청소년안전망 사업과 지방청소년 상담사업의 구분 청소년안전망사업(A) 〈시·도, 시·군·구 공통〉 ○ 긴급구조지원(시·군·구는 주간만)	나. 예산 편성 3) 청소년안전망 사업과 지방청소년 상담사업의 구분 청소년안전망사업(A) 〈시·도, 시·군·구 공통〉 ○ 긴급구조지원	변경
	나. 예산 편성 4) 청소년안전망 예산 편성 기준 ○ 시·도 사업비 : 25% 이상	나. 예산 편성 4) 청소년안전망 예산 편성 기준 ○ 시·도 사업비 : 20% 이상	변경
	나. 예산 편성 4) 청소년안전망 예산 편성 기준 - 교육연수 및 홍보, 기타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 사업	나. 예산 편성 4) 청소년안전망 예산 편성 기준 - 교육연수 및 홍보, 기타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 사업 * 프로그램 및 회의 진행 관련 부대비용 (식사, 다과 제공 등)은 사업비 내 편성 가능	변경
	라. 청소년안전망 예산 집행 원칙 시·도 25% 이상	라. 청소년안전망 예산 집행 원칙 시·도 20% 이상	변경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회계처리	라. 각종 수당 등의 지급 강사료, 심사수당, 회의수당, 원고료의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책정 및 집행.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	라. 각종 수당 등의 지급 강사료, 심사수당, 회의수당, 원고료의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책정 및 집행.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 지자체 규정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	변경
참고 1	시·도(시·군·구)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예시)	시·도(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예시)	변경
참고 2	나. 등록 신규 개소 센터인 경우 해당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식정보 TF팀(051-662-3141)으로 신청해서 사용자 발급 ID와 비밀번호를 받아야함	나. 등록 신규 개소 센터인 경우 해당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정보보안팀(051-662-3141)으로 신청해서 사용자 발급 ID와 비밀번호를 받아야함	변경
서식 1	서비스연계동의서 - 요청기관	서비스연계동의서 - 요청기관 ☐ 지자체	변경
별표 1	가출청소년 발견·지원을 위한 비상연락망	가정 밖 청소년 발견·지원을 위한 비상연락망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일괄 수정 반영	변경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개요	라. 사업 내용 및 성과지표 -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현황 '21년(계획) : 1,355명	라. 사업 내용 및 성과지표 -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현황 '21년 : 1,354명 '22년(계획) : 1,363명	변경
	라. 사업 내용 및 성과지표 (2021년도 성과목표) 청소년동반자 수해청소년 수와 만족도 평가 ① 청소년동반자 수해청소년 수 - 청소년안전망 시스템에 입력된 청소년동반자 수해청소년 수는 【붙임1】을 참조하여 시·도별 최소인원 이상 관리 ② 청소년동반자 수해청소년의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 정도 : 90.7% 이상 ※ 지자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동반자 성과지표 항목 추가·별도 관리 ③ 기타 청소년안전망운영 공통 성과지표 적용	라. 사업 내용 및 성과지표 (2022년도 성과목표) 청소년동반자 수해청소년 수 ① 청소년동반자 수해청소년 수 - 청소년안전망 시스템에 입력된 청소년동반자 수해청소년 수는 【붙임1】을 참조하여 시·도별 최소인원 이상 관리 ② 기타 청소년안전망운영 공통 성과지표를 적용하며, 목표치 등은 지자체 합동평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계획 확정 시 수립	변경
	가. 종사자 채용 청소년동반자 공개채용을 위해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적격자의 지원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개월 이내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 중 선발 가능	가. 종사자 채용 청소년동반자 공개채용을 위해 채용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적격자의 지원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담복지 분야 석사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채용 가능	변경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인사 관리	나. 예산 편성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 대상 : '21년 이전의 기존 정규직 종사자 및 '21년 연도 중 정규직 전환 종사자	나. 예산 편성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 대상 : '22년 이전의 기존 정규직 종사자 및 '22년 연도 중 정규직 전환 종사자	변경
	다. 종사자 복무 ○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자(수석 동반자 포함)는 주당 40시간, 시간제근무자는 주당 12시간 근무	다. 종사자 복무 ○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자(수석 동반자 포함)는 주당 40시간, 시간제근무자는 주당 12시간(1달 5주인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무	변경
	다. 종사자 복무 ○ 근무 시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의거하여 센터에서는 종사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함	다. 종사자 복무 ○ 근무 시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의거하여 센터에서는 종사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함 * 단 근로기준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조항에 따라 동법 제55조와 제60조 미적용	변경
	다. 종사자 복무 ○ 근무 특성 - 청소년이 요청하는 시간대 활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방과후 또는 토요일·공휴일로 근무시간·일자 조정 가능	다. 종사자 복무 ○ 근무 특성 - 청소년과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방과 후 또는 토요일, 공휴일로 근무시간 일자 조정 가능	변경
	라. 종사자 보수 ○ 기본방향 - 종사자 보수가 근로기준법상 2021년 최저임금(시간당 8,720 원)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 - 2021년 보수수준이 2020년에 비해 높아지도록 치우개선 방안 마련	라. 종사자 보수 ○ 기본방향 - 종사자 보수가 근로기준법상 2022년 최저임금(시간당 9,160 원)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 - 2022년 보수수준이 2021년에 비해 높아지도록 치우개선 방안 마련	변경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인사 관리	〈청소년동반자 예산 체계〉 ◆ '21년 1인당 예산 단가(연) : 전일제 29,920천원, 시간제 11,410천원 - 예산 단가 포함사항 : 보수, 법정 부담금(기관분, 근로자분), 사례 진행비, 사업운영비 ※ 컨설팅, 정규직 예산 : 별도	〈청소년동반자 예산 체계〉 ◆ '22년 1인당 예산 단가(연) : 전일제 30,324천원, 시간제 11,556천원 - 예산 단가 포함사항 : 보수, 법정 부담금(기관분, 근로자분), 사례 진행비, 사업운영비 ※ 컨설팅, 정규직 예산 : 별도 ※ 동반자 처우개선,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방비 추가 편성 가능	변경
	〈청소년동반자 예산 체계〉 ○ (사례진행비) (※ 사례진행비는 경비성 비용으로, 통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1) 전일제동반자: 월 182,000원 기준 2) 시간제동반자: 월 83,000원 기준 * 지역별 운영여건에 따라 정액의 사례 진행비 대신 사례 당 단가 적용 가능	〈청소년동반자 예산 체계〉 ○ (사례진행비) (※ 사례진행비는 경비성 비용으로, 통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액 지급) 1) 전일제동반자: 월 185,000원 기준 2) 시간제동반자: 월 84,000원 기준 * 지역별 운영여건에 따라 정액의 사례 진행비 대신 사례 당 단가 적용 가능	변경
	〈청소년동반자 예산 체계〉 ○ (사업운영비) 예산 단가 범위 (10% 이내) 적정 분배	〈청소년동반자 예산 체계〉 ○ (사업운영비) 예산 단가 범위 (5% 이내) 적정 분배	변경
	마. 종사자 역량 강화 ○ 자격증 보수 교육 등	마. 종사자 역량 강화 ○ 자격증 보수 교육 등 ※ 보수교육 참여 시 근무시간 내 이수와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이 가능	신설
	마. 종사자 역량 강화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노력 - 청소년동반자 채용권자는 동반자의 청소년상담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권장	마. 종사자 역량 강화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노력 - 청소년동반자 채용권자는 동반자의 청소년상담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권장 ※ 예산 범위 내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자격수당 등 지급 가능	신설
붙임 1	2021년 시·도별 청소년동반자 기준 인원 및 사례관리 목표	2022년 시·도별 청소년동반자 기준 인원 및 사례관리 목표	변경

■ 청소년쉼터 운영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청소년쉼터 개요	1-3. 청소년쉼터의 주요 업무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협력 강화 * 청소년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이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이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내용 반영 (청소년안전망실행위원회→실무위원회)	변경
청소년쉼터 설치 등	2-1. 청소년 복지시설 신고제도	2-1. 청소년 복지시설 신고제도 6.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신설
	2-2. 청소년복지시설의 민간위탁 3.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위탁계약 기간 : 3년 이내 * 연장된 계약기간은 2년 이내	○ 위탁계약 기간 : 5년 이내 * 연장된 계약기간은 5년 이내	변경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5.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가. 교육훈련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원격연수 의무 이수과정 5개 과정 이상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원격연수 의무 이수과정 4개 과정 이상	변경
	나. 법정교육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추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반영	신설
시설 설치·운영 기준	1. 청소년쉼터의 설치 기준 ○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의 건축물 설정용도는 노유자 시설	○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의 건축물 설정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노유자 시설	변경
	2. 청소년쉼터의 운영 기준 ○ 행정지원시스템을 활용한 분기별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은 익월 5일 까지	○ 행정지원시스템을 활용한 분기별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은 익월 10일 까지	변경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시설 설치·운영 기준	3.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작성 회의록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 작성 회의록은 관할 시·군·구청 장에게 제출	변경
	3-3. 시설안전	8. CCTV 설치 시 준수사항	신설
예산 편성	1. 보조금 지원 기준 ○ '21년 정부예산 기준	○ '22년 정부예산 기준으로 정비	변경
	2. 시설의 예산 편성 기준 ○ 예산편성 구성 항목 - 자립준비지원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 지원	- 자립활동실비는 개소당 500만원 내에서 시설 사정 및 청소년 특성에 맞게 집행	변경
	○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는 정부보 조금 중 추가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최소사업비)에 별도로 자립준비지원비, 건강특화사업비를 더한 금액이상을 필수로 편성	○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u>'21년</u>) <u>최소사업비</u> 에 별도로 자립 준비 지원비, 건강특화사업비를 더한 금액 이상을 필수로 편성 * 최소사업비 : 정부보조금 중 추가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21년 금액)	변경
	○ 급식단가는 성장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으로 편성	○ 청소년을 위한 급식비는 성장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수 준으로 하며, <u>1식당 최소 3,500원</u> <u>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함</u>	신설
예산 집행	2. 인건비 지급 기준 ○ 연봉제의 보수 기준 가이드라인	○ 연봉제 보수 기준 가이드라인 조정	변경
	○ 수당 등의 편성·지급	○ 지급 수당의 종류 및 내용 안내 *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자체에서 편성하며 수당의 종류 및 지급 내용은 자체 규정,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변경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후원금 관리	1.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영수증 발급	〈참고〉 청소년복지시설도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인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임을 명시	신설
행정 사항	3. 지도·감독 ○ 청소년쉼터 운영실태 지도 및 점검 실시기관은 관할 자치단체	○ 청소년쉼터 운영실태 지도 및 점검 실시기관은 관할 기초자치단체	변경
청소년의 인권 및 보호	1. 인권침해에 대한 관리 강화 ○ 이용청소년이 작성한 진정서를 지자체로 송부	○ 이용청소년이 작성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송부	변경
	2. 청소년쉼터의 인권실천 및 의무 등 ○ 시설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교육 6개월 1회 연간 8시간 이상 의무 실시	○ 시설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교육 연간 8시간 이상 의무 실시	변경
	○ 종사자 인권보호	〈신설〉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실시, 고충 창구 마련 등	신설
쉼터 유형별 적용사항	3. 중장기 청소년쉼터 라. 중장기쉼터 특성에 알맞은 입·퇴소 관리 철저 ○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 요청받은 갈 곳 없는 청소년을 기 관리하고 있는 연계망을 활용, 조치	○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 요청받은 갈 곳 없는 청소년을 기 관리하고 있는 연계망(<u>아동보호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일시쉼터 및 단기 쉼터</u>)을 활용, 조치	추가
참고3	○ 쉼터·자립지원관 종사자 기본급 (호봉제) 가이드라인	호봉제의 보수 기준 가이드라인 조정	변경
참고5 및 관련 서식	○ 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 임대주택 공급방식	기존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외 건설 임대 방식 추가 지원	신설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편입)	별도 지침으로 규정되어있던 자립 지원수당을 청소년사업안내 내 편입	편입
	○ 자립지원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 - 변경이 15일 이전인 경우 : 변경 후 시·군·구(또는 시·도)에서 지급 - 변경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 전 시·군·구(또는 시·도)에서 지급	- 변경이 10일 이전인 경우 : 변경 후 시·군·구(또는 시·도)에서 지급 - 변경이 11일 이후인 경우 : 변경 전 시·군·구(또는 시·도)에서 지급	변경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 연속입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퇴소 와 재입소 사이의 기간은 퇴소 후 3일 이내	- 연속입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퇴소와 재입소 사이의 기간은 퇴소 후 7일 이내	변경

■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운영 개요	1-2. 근거 및 적용범위 ○ 용어 정의 - 자립준비청소년 :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등록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 생활관 : 시설이 마련한 청소년 주거공간 - 독립주거 : 시설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원룸, 공공임대주택 등) - 사례관리 등록·종결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자립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등록 및 종결로서 서비스 대상 여부를 구분(사후관리 별도) - 자립지원관 유형 : 생활형, 주거연계형(이용형), 혼합형 * 생활형 해당시설 없음	- 자립준비청소년 :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등록하여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 생활관 :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운영하는 청소년 거주 시설 - 독립주거 : 생활관 이외 독립적인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는 경우(공공임대주택 등) - 사례관리 등록·종결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자립을 지원하므로 사례관리 등록 및 종결로 대상 여부를 구분(사후관리 별도)	변경
		- 자립지원관 유형 : 주거연계형(이용형), 혼합형	변경
	1-4. 이용대상 및 지원기간 등 ○ 이용대상 - 퇴소 후 추가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퇴소(예정)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변경
	○ 청소년 정원 ** 생활관 입소인원에 대해 별도 사례관리 기준 적용 가능(지자체 승인사항) - 생활관 입소 1인당 사례관리 1.5인으로 간주 등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대상자별로 사례심의위원회에서 별도 기준 적용 가능(지자체 승인사항) - 생활관 입소시 1.5인 간주 규정 삭제	변경, 삭제
	1-5.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유형 ○ 생활관 이용 - 경제선지능청소년, 미성년자 등으로서 독립생활이 곤란하여 생활관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경제선지능청소년, 미성년자 등으로서 독립생활이 곤란하여 생활관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사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도록 함	변경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운영 일반	5.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가. 교육훈련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원격연수 의무 이수과정 5개 과정 이상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원격연수 의무 이수과정 4개 과정 이상	변경
	3-2. 시설 설치·운영기준 1.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기준 (유형별)	생활형(숙박형 생활시설) 삭제 * 혼합형을 숙박형 생활시설로 봄	삭제
예산 편성	1. 국비 지원 기준	'22년 정부예산 기준으로 정비	변경
	2. 시설의 예산 편성 기준 ○ 예산편성 구성 항목 - 자립준비지원비는 1인당 연 100 만원 한도 지원	- 개소당 20백만원 내에서 시설 사정 및 청소년 특성에 맞게 집행 하되, 청소년들이 고루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변경
	○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는 정부 보조금 중 추가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최소사업비)에 별도로 자립준비지원비를 더한 금액이상을 필수로 편성	○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21년) 사업비 금액 이상을 필수로 편성	변경
	○ 급식단가는 성장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으로 편성	○ 청소년을 위한 급식비는 성장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 으로 하며, 1식당 <u>최소 3,500원</u>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함	변경
예산 집행	2. 인건비 지급 기준 ○ 연봉제의 보수 기준 가이드라인	연봉제 보수 기준 가이드라인 조정	변경
	○ 수당 등의 편성·지급	지급 수당의 종류 및 내용 안내 *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자체에서 편성하며 수당의 종류 및 지급 내용은 자체 규정,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변경
행정 사항	3. 지도·감독 ○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실태 지도 및 점검 실시기관은 관할 자치단체	○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실태 지도 및 점검 실시기관은 관할 기초 자치단체	변경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자립준비 청소년 관리 및 지원	◆ 사례관리 규모 - 해당 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청소년 1명을 1.2명, 0.8명 등으로 간주하여 관리할 수 있음	- 해당 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등 평가결과에 따라 청소년 1명을 1.5명, 0.5명으로 간주하여 관리 할 수 있음	변경
	6-1. 사례관리 등록 및 종결 관리	입소청소년에게 적합한 청소년안전망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u>7개 이상</u> <u>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u>	신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설치 등	마. 청소년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 다만 위의 사항은 적용에 다소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안내했던 유예기간을 2021.06.30.까지 연장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마. 청소년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삭제								
	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 '2021년 청소년쉼터 운영 지침' 준용	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 '2022년 청소년쉼터 운영 지침' 준용	변경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운영 일반	3-1.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가. 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기준 ○ 직종별 배치기준 <table><tr><th>시설장</th><th>보호·상담원</th></tr><tr><td>1</td><td>1</td></tr></table>	시설장	보호·상담원	1	1	3-1.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가. 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기준 ○ 직종별 배치기준 <table><tr><th>시설장</th><th>보호·상담원</th></tr><tr><td>1</td><td>2</td></tr></table>	시설장	보호·상담원	1	2	변경
	시설장	보호·상담원									
1	1										
시설장	보호·상담원										
1	2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운영 일반	3-1.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나.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관리 -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은 종사자에 대 해서는 인건비 보조금 교부하여 서는 아니 됨 다만, 위의 사항은 현재 시설관련 고용실정 등을 고려하여, '20년 12월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시정·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1년 1월부터 적용할 것	3-1.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나.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관리 -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은 종사자에 대 해서는 인건비 보조금 교부하여 서는 아니 됨 〈삭제〉	삭제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운영 일반	3-1.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다. 복무관리 (2) 근무형태 및 시간 ○ 근무형태는 정규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휴일근무로 구분 단,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보호소년들과 24시간 함께 할 수 있어야 함에 따라 시설장과 보호·상담원이 시설의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음	3-1.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다. 복무관리 (2) 근무형태 및 시간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보호소년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시행(2교대, 3교대 등)	변경
	3-2. 시설 설치·운영 기준 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기준	3-2. 시설 설치·운영 기준 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기준 ○ CCTV 설치 시 준수사항 - CCTV는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운영 - CCTV 활용 목적과 활용 방안, 관리자·담당자 접근 제한 및 모니터 기록 비치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게시 -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는 행위 금지 ※ 그 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	신설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운영 일반	3-2. 시설 설치·운영 기준	3-2. 시설 설치·운영 기준 마.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21.12.30 시행)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급식소에 해당 ○ 시설장은 관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장에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문의는 시·군·구청 또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https://ccfsm.foodnara.go.kr/)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시설에서 입소 청소년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신설
	3-3. 시설 안전 나. 안전관리 (5) 그 밖의 시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2021년 청소년쉼터 운영' 준용	3-3. 시설 안전 나. 안전관리 (5) 그 밖의 시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2022년 청소년쉼터 운영' 준용	변경
	3-5. 감독 및 평가 나. 평 가 ○ 평가주기 : 3년 - 평가 실시년도 : 2023년(예정)	3-5. 감독 및 평가 나. 평 가 ○ 평가주기 : 3년 - 평가 실시년도 : 2024년(예정)	변경
재무회계	4-2. 예산 집행 나. 인건비 지원 기준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시급 시간당 8,720원, 월 1,822,480원 기준 준수하여 각 지자체별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	4-2. 예산 집행 나. 인건비 지원 기준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시급 시간당 9,160원, 월 1,914,440원 기준 준수하여 각 지자체별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 * 지자체별로 호봉제, 연봉제 등 적용하여 지급 가능	변경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청소년 관리 및 지원	5-1. 입·퇴소 관리 및 감호활동 가. 입소(신병인수) 및 관리	5-1. 입·퇴소 관리 및 감호활동 가. 입소(신병인수) 및 관리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자는 보호 청소년이 시설 입소 기간과 퇴소 후에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의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 절차를 활용하도록 함 - 시설 운영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에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 ※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은 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청	신설
	5-2. 그 밖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2. 그 밖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공동생활가정용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자*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0.12.9) 제30조(공동생활가정 운영 특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신청 가능 * 시설 운영자는 국토교통부 지침 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자에 해당하여 공공임대 주택 신청 가능 - 시설을 신고한 지역의 시·도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와 임대주택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 선정 후 보증금, 임대료*는 시설 운영자 자비로 부담 * 보증금,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이하 수준	신설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청소년 관리 및 지원	5-2. 그 밖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2. 그 밖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안내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 공백 발생 시 최단 1일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최대 30일 이내 지원(이용비용 무료) ○ 대체인력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www.w4c.go.kr)에서 신청 -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안내서, 업무공백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필요	신설
참고 3		3.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예시	신설
참고 4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관련 문의처	신설
서식 17		17.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	신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출생년도 : 2003년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 사이 출생 여성청소년 ○ 지원금액 : 연 최대 138,000원 * 월 11,500원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 * 단 19~24세는 2022년 5월부터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144,000원 * 월 12,000원	변경
	○ 결제가능 유통점 - BC카드 • (온라인) G마켓, 옥션, 먼슬리썸(앱) • (오프라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노브랜드, PK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 삼성카드 • (온라인) 삼성카드쇼핑몰 • (오프라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노브랜드, PK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 롯데카드 • (온라인) 올마이쇼핑몰 • (오프라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VIC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자 확대에 따라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등 추가 예정 (관련 사항 추후 안내, '21.3월 이후)	○ 결제가능 유통점 - BC카드 • (온라인) G마켓, 옥션, 먼슬리썸(앱), <u>페이북쇼핑, 국민행복몰</u> • (오프라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노브랜드, PK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 삼성카드 • (온라인) 삼성카드쇼핑몰, <u>국민행복몰</u> • (오프라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노브랜드, PK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 롯데카드 • (온라인) 올마이쇼핑몰 • (오프라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VIC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 신한카드, KB국민카드 • (온라인) <u>국민행복몰</u> • (오프라인) <u>GS25편의점</u>	변경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변경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8조 개정, 시행 9.24.)
	○ 지원의 종류 및 내용			○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생활 지원	가.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50 만원 이내	생활 지원	가.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55 만원 이내	
	학업 지원	가.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 만원 이내 (수업료 등) 월 30 만원 이내 (검정고시)	학업 지원	가.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라. 학원비	월 15 만원 이내 (수업료 등) 월 30 만원 이내	
	상담 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월 20 만원 이내 (상담 지원비) 연 25 만원 이내 (별도심리 검사비)	상담 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 위한 청소년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월 30 만원 이내 (상담 지원비) 연 40 만원 이내 (별도심리 검사비)	
	활동 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에 필요한 경비 라. 교류활동비	월 10만원 이내	활동 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다. 특기활동에 필요한 경비 라. 교류활동비	월 30 만원 이내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청소년이 심각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교정 - 위기청소년의 교복지원 등		(위 제시된 유형과 관련 있거나 비슷한 유형의 지원금액 상한액 참조)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청소년이 심각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교정 -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준비물 지원 등		(위 제시된 유형과 관련 있거나 비슷한 유형의 지원금액 상한액 참조)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심의 예외 사항 - 또한 시·군·구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면 또는 사후 운영위원회 개최가 가능함	○ 심의 예외 사항 - 시·군·구는 수시 신청의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면 심의 또는 사후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함 *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한 후 30일 이내 지원되도록 함	변경
	○ 사후관리 • 시·군·구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보하여 사례관리 추진 - 해당 센터의 사례관리자는 특별 지원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 확인·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용 관련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공통매뉴얼 참조	○ 사후관리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필요시 지자체에서 직접 사례 관리 가능	신설
	○ 지원방식 • 심의위원회 결정 후 즉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지급일 설정 권장(매월 20일 등) - 급여신청일을 개시일로 설정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니라 신청일자를 급여개시 일자로 산정	○ 지원방식 • 심의위원회 결정 후 즉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지급일 설정 권장(매월 20일 등) - 급여신청일을 개시일로 설정 * 단,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을 급여개시일자로 산정 가능	변경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8. 제정, 2015.5.29. 시행)	○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1.3.23. 일부 개정, 2021.9.24 시행)	변경
	○ 설치·지정 센터 : 총 219개소	○ 설치·지정 센터 : 총 220개소	변경
	○ 추진체계(여성가족부) • 사업방향 설정 등 사업총괄 • 사업안내(지침) 마련 및 보급 • 예산지원 및 사업평가 총괄 • 중앙지원기관 선정 및 관리 등	○ 추진체계(여성가족부) • 사업방향 설정 등 사업총괄 • 사업안내(지침) 마련 및 보급 • 예산지원 및 사업평가 총괄 • 중앙지원기관 선정 및 관리 등 •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신설
	○ 설치·지정 기준 - 5명 이상(시·도센터) - 시설공간 상담실 공용가능	○ 설치·지정 기준 - 6명 이상(시·도센터) - 시설공간 상담실 전용	변경
	○ 직원의 보수 - 보수의 구성(예시)	○ 직원의 보수 - 지급 수당의 종류 및 내용(참고) - 호봉의 확정 및 재확정, 승급	변경 및 신설
	○ 직원 교육 - 시도센터 중심으로 신규직원 입문 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보수 교육, 정보망 활용 교육 등 실시	○ 직원 교육 - 중앙지원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신규직원 입문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정보망 활용 교육, 보수교육 포함 - 시도센터 : 실무자교육 운영	변경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 종사자 보호 - 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휴게시간, 소진방지 프로그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그 외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신설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 예산편성 기준: 시도센터는 지원단가의 25% 이상, 시군구센터는 지원단가의 20% 이상을 사업비로 편성 - 지원단가 • 시·도 센터: 239,580천원 • 시·군·구 센터: 84,517~165,633천원 - 편성기준 • 시·도센터 동일, 시·군·구센터 가~다(3단계) ○ 집행 원칙 - 예산 편성 항목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예산변경 시에도 사업비 편성기준 준수 - 예산 항목 간 변경 및 사업비 항목 내에서 당초 계획의 100만원을 초과하여 예산 변경 필요 시 공문을 통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후 변경·집행 가능 * 예산항목간 변경은 모두 지자체 승인 대상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 예산편성 기준: 시도센터는 지원단가의 20% 이상, 시군구센터는 지원단가의 15% 이상을 사업비로 편성 - 지원단가 • 시·도 센터: 242,026~327,916천원 • 시·군·구 센터: 85,500~215,370천원 ○ 집행 원칙 - 예산 편성 항목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예산변경 시에도 사업비 편성기준 준수 - 예산 항목 간 변경 및 주요 항목 내에서의 소요경비 및 예산 변경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후 변경 집행 가능. 단, 주요 항목 내 100만원 미만 예산 변경 필요시 센터장의 내부 승인으로 전용가능하며, 예산 전용 후 1주일 내 지자체에 공문 보고 (* 사업비의 예산감액 조정은 불가능 / 시·도 20%, 시·군·구 15% 이상)	변경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 나. 연계방법 • 가) 교육청, 경찰서	신설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 정보는 연계되었으나 지원을 거부하는 청소년 발굴·연계(변경)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연계 받은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 동반자 1인당 연 사례수(전일제 연 48사례 이상, 시간제 연 24사례 이상)의 5% 이상을 관리하도록 권장	○ 정보는 연계되었으나 센터이용(방문)이 힘든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발굴·연계	변경 및 삭제
	○ 급식 지원 - 집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필수 포함사항 • 급식의 형태(도시락, 인근식당 등 센터 여건에 맞는 급식의 형태 결정) - 집행방법 • (사후지출)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익월초 전월 실제 급식 지원 인원에 대한 급식비 지출	○ 급식 지원 - 집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필수 포함사항 • 급식의 형태(도시락, 인근식당, 급식카드 등 센터 여건에 맞는 급식의 형태 결정) - 집행방법 • (사후지출) 사전계약(약정)을 통해 익월중 전월 실제 급식 지원 인원에 대한 급식비 지출. 단, 12월의 경우 당월내 지출 필요	변경
	○ 점검 및 평가, 평가운영 - 평가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실적평가를 3년마다 실시 - 평가항목 : 사업 인프라, 운영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반조성, 운영사례 등의 영역으로 구성	○ 점검 및 평가, 평가운영 - 평가 주체 : 여성가족부 - 근거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평가 주기 : 3년 ※ 최초 센터 평가는 2024년 시행 예정 - 평가항목 : 사업 인프라, 운영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반조성,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반 노력도, 우수 운영사례 등 - 평가결과를 기관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위탁운영기관 종료 이전에 여성가족부의 센터 평가를 참조 활용 - 평가를 위해 제출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 각종 증빙자료는 3년 보관 후 자동 폐기	변경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 (별표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가이드라인 ○ (별표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경력 산정 기준표	신설
		○ (별표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원고료 및 강사료 지급 기준 - 강사료 사례비 지급기준, 일반 3	신설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관리	○ 시민단체 감시단(청소년단체 감시단포함) 지정대상 -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u>50인 이상</u> 규모의 상시 구성원 수를 가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	○ 시민단체 감시단(청소년단체 감시단포함) 지정대상 - (좌동) - (좌동) - <u>30인 이상</u> 규모의 상시 구성원 수를 가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	변경
인터넷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운영	○ 전담상담사 처우개선 (인건비 0.9% 증액)	○ 전담상담사 처우개선 (인건비 1.4% 증액)	변경
청소년 치료재활 센터 운영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개소 운영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개소 운영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및 <u>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u>	변경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단일 수행기관을 통한 청소년 근로 보호 사업 추진 - 수행주체 : 여성가족부(민간보조) - 전달체계 : 중앙지원단 1개소, 전국 권역별 지역본부 4개소 (수도, 경상, 전라, 충청)	○ 지역 청소년근로보호 사업 전달 체계 확대 - (중앙지원단 1개소) 여성가족부, 민간보조(현행과 동일) - (지역청소년근로보호 사업) 전국 시·도 확대, 지자체 보조사업 전환	변경

2 PART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 I. 청소년정책위원회
- II.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 III.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
- IV. 2021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청소년 분야)



I 청소년정책위원회

1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제3조의2(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2 위원회 개요

- 구 성 :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 위원
 - 위원장 : 여성가족부 장관
 - 위 원 (26명)
 - 당연직(13명)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차관) :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산자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청장 등)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경찰청장
 - 민간위원(7명)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 청소년위원(6명) :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한 청소년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
- 기 능 :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Ⅱ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1 목 적

- 청소년 정책의 거시적 운영 방향 설계 및 세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 청소년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환류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기 정책 과제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근 거

-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4항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추진경과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법적근거 마련('15.5월)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시범운영('16.6~8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별평가 인정('17.3월)
- 청소년정책 지정과제 분석평가 실시('17년, 42개 지자체 대상)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18년, 19년 17개 시·도 및 시·군·구 50%(114개))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19년, 17개 시·도 및 시·군·구 50% (114개))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20년, '21년,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가. 대상 기관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나. 평가 체계

-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상 ‘활동·참여’, ‘보호·복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영역의 시행계획 세부과제 및 포괄적 정책 사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
- 실적 중심의 평가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과정 중심의 평가

다. 평가절차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과정	실적보고서 제출	서면 평가	자료 보완	질의응답 진행 후 최종평가	최종 평가 결과 확정	평가환류
대상	평가 참여 기관	평가 위원	평가 참여 기관	평가 위원	평가 위원	평가 참여 기관
내용	실적 보고서 제출 (증빙자료 포함)	실적 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서면평가	자료보완 요청 해당 기관의 추가자료 제출	실적 보고서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및 조별 평가 의견 작성	조별 평가 결과 확정	우수사례 발굴·공유 우수지자체 포상

라. 평가지표

- 정책과정을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세부 평가지표* 구성

* 시·도 및 시·군·구 각 12개 세부 평가지표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지표 개선(안) ■

평가 영역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시·도(12개 지표)	시·군·구(12개 지표)
1. 정책형성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 수립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 수립*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② 정책기반 확보수준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자체예산 확보노력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자체예산 확보노력
2. 정책집행	③ 추진과정의 효율성	- 추진일정의 충실성 -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 -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 추진일정의 충실성 -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 -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④ 정책소통 노력	-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3. 정책성과	⑤ 정책성과 및 효과성	- 정책목표 달성도 - 정책효과성	- 정책목표 달성도 - 정책효과성

* 광역 및 기초지자체 평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추가 지표

** 전년도 평가 개선의견 반영의 충실성 여부 내용 포함

【붙임1】 2022년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현황

□ 운영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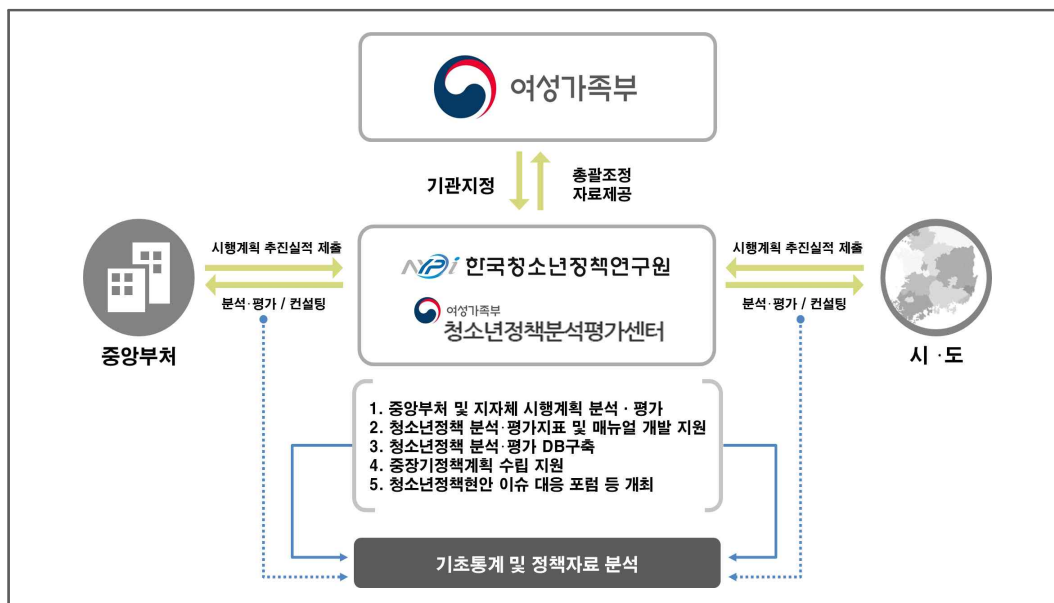
- 중앙부처·지자체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점검,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 추진 지원
 -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법적근거 마련(「청소년기본법」 제14조 개정, '15.5.4 시행)
- 정책 현황 분석 및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청소년정책 추진의 효과성 제고

□ 주요 내용

-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시행계획 이행사항 점검 및 종합·분석
- 청소년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청소년백서 발간 지원
- 청소년정책 현황 이슈 대응 및 제도개선 지원
- 그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위탁 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추진체계



Ⅲ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

1

포상 개요

가. 추진 목적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우수기관 격려
- 청소년정책 관심도 제고 및 청소년 업무 추진의 적극성 유도

나. 추진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60조(포상)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다. 대상 기관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기초지자체

라. 선정 기준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

마. 포상 훈격 및 규모

-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5점('21년 기준)
※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3월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인센티브 부여

- 재정인센티브 : 포상금 수여
※ 포상규모에 따라 재정인센티브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행정인센티브 : 우수 지자체 관계공무원에 차년도 국외연수 기회 제공 가능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포상 계획

가. 선정 계획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우수 지자체 심사
- 포상대상 지자체에 대한 현지실사 및 대국민 검증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추천 제한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관련법 등을 위반한 기관
- 제시한 공적내용이 현장실사 결과와 상이한 경우 등

나. 포상 대상기관 추천계획

- 추천 시기 : 8~9월(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사업 결과 산출 이후 예정)
- 추천 접수기한 : 9월(청소년정책과)
- 추천 절차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 구비서류

구 분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공적조서	1부	○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 인을 날인하여 제출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 (A4용지 2매 이상)
공적요약서	1부	○ 청소년정책 관련 업무요약서를 각각 작성 (공적요약은 200자 이내)

- 행정안전부와 포상규모 협의 : 2~3월
- 2022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 등 수합 : 8~9월
 - ※ 2022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 시기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지자체에 포상대상기관 통보 및 추천 요청 : 10월
- 정부포상 대상기관 공적 공개검증 : 10월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부24, 행정안전부 상훈 포털사이트
- 추천 제한 여부 확인 : 10월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관련법 등 위반 여부 조회
- 정부포상 대상기관 공적 현지실사 : 10~11월
- 여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11월
- 정부포상대상자 추천(행정안전부)
 - 상훈시스템 입력 및 대상기관 추천 : 11월
-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예정) : 12월

【서식 제1호】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④ 주 소	★ 반드시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 (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담당자명, 연락처 기재 (지역번호 표기, 연락 가능한 담당자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여성가족부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후보자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단체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쪽 이내로 작성)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별첨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서식 제2호】 공적요약서

공 적 요 약 서

추천기관(추천인)	예시) 00기관(000)	추천순위	예시) 1* (동일 훈격 내 다수 추천시)
단체명(대표자 성명)	예시) 기관명(홍길동)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000
추천훈격	예시) 국무총리표창	공적기간	예시) 27년 5월
과거 포상기록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공적내용			
○ - ※ 동일 훈격에 여러 개의 단체를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추천순위 기재 ※ 후보 단체 1개당 공적요약서 1장씩 작성(공백 포함 1,000자 이상) ※ 양식 변경 절대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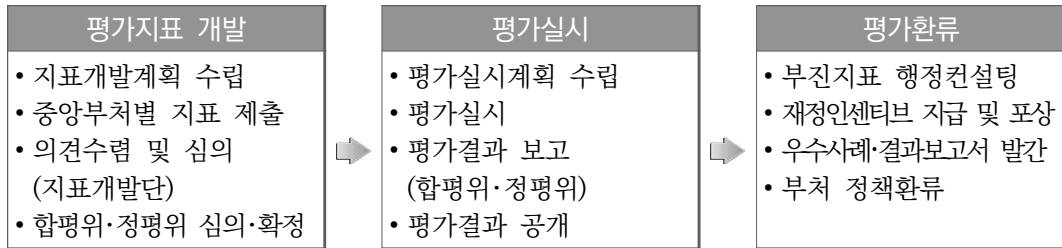
IV

2021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청소년 분야)

1

합동평가 현황

- (평가목적)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 (평가대상)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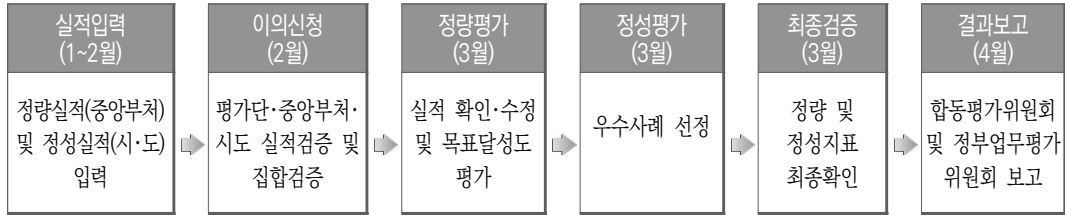
- (지표개발 및 평가수행) 민간전문가로 구성·운영

2

실시 계획

- 대상기관 :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
- 평가지표 : 정량지표 2개
- 평가기간 : '21.1~3월(실적기준일 : '20.1.1. ~ '20.12.31.)
- 평가수행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20.12월)
- 평가방법
 - 실적입력(VPS시스템)
 - (정량) VPS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에 대하여 검증(증빙자료 확인 등)을 완료한 최종 통계자료 입력(중앙부처)
 - (정성) 우수사례 요약서 및 증빙자료 입력(시·도)

○ 평가절차



○ 후속조치 : 정책환류,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급 및 유공자 포상

3 평가 지표 상세

○ '21년 실적 평가지표

국정과제	지표번호	지 표 명	담당부서
3-2-6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3-2-6-가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	청소년정책과
	3-2-6-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학교밖청소년지원과
	3-2-6-다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청소년자립지원과
	3-2-6-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	청소년보호환경과

※ (참고) '22년 실적 평가지표

국정과제	지표번호	지 표 명	담당부서
3-2-6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3-2-6-가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	청소년정책과
	3-2-6-다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청소년자립지원과
	3-2-6-라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	학교밖청소년지원과
	3-2-6-마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	청소년보호환경과

3 PART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 I. 청소년 참여 증진
- II.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I 청소년 참여 증진

1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1-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청소년의 사회성, 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함양을 통해 민주시민 육성
-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 및 UN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참여 확대 권고 준수

나. 추진경과

-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1999년 4월 제주도, 2000년 6월 경기도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확대
-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전국 단위의 청소년 참여기구 요구 증대
- 2004년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설정·추진, 점검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시범 개최하고 2005년부터 매년 개최
- 2012년 청소년 참여기구 역할 강화를 통한 청소년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청소년 정책 UN공공행정상 수상,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

다. 사업개요

구분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기능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에 청소년 참여	청소년들이 국가 및 지자체 정책과정에 참여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프로그램 운영에 참여
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청소년위원 500여명	전국 234개소 (중앙 1개, 시·도 17개, 시·군·구 216개)	전국 33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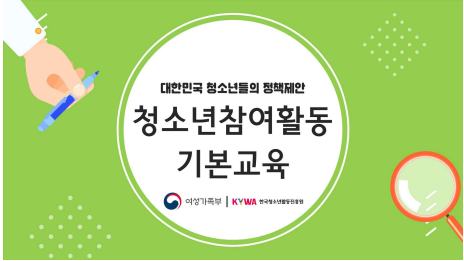
라.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및 역할
여성 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 참여기구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청소년 참여기구 사업지침 수립, 국고보조, 홍보 등 ○ 청소년 참여기구 사업 점검·평가 *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활동진흥과
	위탁 운영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특별회의 운영·관리 - 출범식, 정책발굴워크숍, 결과보고회 등 기획·진행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관리 - 정책기획팀, 온라인소통팀 구성 및 운영
시·도	담당 사업과	○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 총괄 ○ 시·도 청소년포럼·토론회·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 - 자치단체장 간담회 등 행·재정적 지원 ○ 정책과제 발굴 등 정기회의 관리 ○ 운영 성과(제안과제 모니터링 등) 관리
	위탁 운영기관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특별회의 지역회의) 운영·관리 - 모집·구성, 정기회의 및 참여활동 등 기획·진행 - 시·도 청소년포럼·토론회·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지원 ○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지원 (컨설팅, 연합활동 등)
시·군·구	담당 사업과	○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 총괄 ○ 자치단체장 간담회, 청소년포럼·토론회 등 행·재정적 지원 ○ 정책과제 발굴 등 정기회의 관리 ○ 운영 성과(제안과제 모니터링 등) 관리
	위탁 운영기관 (위탁 운영시)	○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모집·구성, 회의 및 참여활동 등 기획·진행 - 시·도 단위 연계활동 참여 및 협조(청소년포럼·토론회 등 참석, 시·군·구 대표 위원 시·도 참여위원회 참석 등)

마. 2022년 사업 추진방향

○ 온라인 참여·소통창구 확대

- ‘청소년참여포털(youth.go.kr/ywith)’ 내 정책제안 게시판 연중 운영 및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등을 통한 참여 활성화 추진
- 청소년 참여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 자료 활용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정책제안 청소년참여활동 기본교육 여성가족부 KYMA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나의 참여 메이트 청소년 참여활동 안내서 KYMA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온라인 참여활동 기본교육 강의	청소년 참여활동 안내서

○ 청소년들이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및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독려

- * 화상회의 등 온라인을 통한 참여활동도 월별 활동으로 인정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

□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개정내용(개정일 2017.12.12. 시행일 2018.6.13.)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 청소년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 참여 및 개최

□ 운영현황

-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 233개소(시·도 17개, 시·군·구 216개) 운영지원
 - 시·도 : 1,000만원(국고보조율 50%)
 - 시·군·구 : 280만원(국고보조율 50%)

1) 위원회 명칭은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통일하고, 지자체별 실정(이전 사용 명칭 등)에 따라 부제 사용 가능

■ 2022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233	22	14	9	10	6	6	6	1	32	19	9	16	15	23	24	20	1
시·도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16	21	13	8	9	5	5	5	-	31	18	8	15	14	22	23	19	-

나.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1) 역 할

- ☐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 ☐ 지자체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 ☐ 지역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 참여 및 개최
 - ※ 시·도 단위 반드시 연 1회 이상 개최
- ☐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의 간담회 운영(연 1회 이상)

(2) 구 성

☐ 기본방향

- 다양한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 이외에 교육(지원)청·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 청소년 직접선거 등 구성방식을 다양화하여 대표성 제고

☐ 기 준

- 공 통(시·도, 시·군·구)
 - 지역 내 청소년(만 9세~24세)
 -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구성
 - * '20년 이후 위촉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경우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최대 3회 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가능함을 사전 안내(소속지역 변경된 경우 포함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연령별 기준

- 연령·성별 등 구분·선발하되, 지역 내 연령별 인구 및 참여역량을 고려하여 구성(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들을 포함)

구분	계	만 9세~15세 (초등·중학생 연령)	만 16세~18세(고등학생 연령)				만 19세~24세
			소 계	일반	특성화	특목, 기타	
비율	100%	20~30% 내외	50~60% 내외	60~70%	5~10%	5~10%	10~30%

※ 관할구역 내 연령별 청소년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 (구성) 1개소당 25명~30명 내외

- ※ 단, 당연직 위원(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표)이 30명 이상인 시·도(경기 등)의 경우라도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촉직 위원을 일정 비율 추가로 구성 가능

- 당연직

- 해당 시·도의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가능

- ※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중 시·도 참여위원회 활동이 적극적으로 가능한 위원을 추천 및 위촉하며, 시·도 상황에 따라 당연직 위원 구성 비율을 50~100%로 구성할 수 있음
- ※ 당연직 위원은 가급적 많은 관내 시·군·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필요하며, 온라인 회의 개최 등 시·도와 시·군·구와의 소통을 위한 창구 마련

- 위촉직

- 관내 교육(지원)청·학교 추천(학생회 대표 등),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청소년 운영위원회 대표 등), 지역 청소년 선거 등을 통해 위촉 가능

- ※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게 대표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구성방식 시행 가능
- ※ 특히, 당연직 위원이 20명 미만인 시·도는 기관추천(학생회 대표,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 지역 청소년 선거 등을 통해 대표성 있는 위원을 위촉할 필요

- 다문화, 북한이탈, 근로,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을 일정 비율 (10% 내외) 구성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홍보 및 협조 요청

○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 1개소당 20명~25명 내외
- 공개모집 이외에 관내 교육(지원)청·학교 추천(학생회 대표 등),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 지역 청소년 선거, 청소년 자기 추천 등을 통해 구성 가능
 - ※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게 대표성 제고를 위한 구성방식 시행 가능
- 다문화, 북한이탈, 근로,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추천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시·군·구)에서 유관기관에 홍보 및 협조 요청

□ 모집 및 구성【붙임1~8】

○ 모집시기 : ~3월까지 반드시 구성 완료(모집공고 : 1~2월 중순)

※ 시·도는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일정을 고려하여 모집하되,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늦어도 3월 중순까지 구성을 마칠 필요

○ 구성방식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참여 청소년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구성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시행

※ 지역 실정에 맞게 대표성 제고를 위한 방식 가능하며, 복수의 방식 혼합하여 시행 가능

〈구성방식 예시〉

① 청소년 선거

-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을 통해 후보를 구성한 후, 지역 청소년의 투표 (온·오프라인)로 위원 선출
 - ※ (절차 예시) 후보 구성(추천(50%), 공개모집(50%) 등) → 청소년 선거 → 선출 및 위촉

② 유관 기관추천

-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을 받아 학생회 대표,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 대표성 있는 청소년을 선발
 - ※ (절차) 추천의뢰(기관) → 심사 또는 청소년 선거 등 → 선발(선출) 및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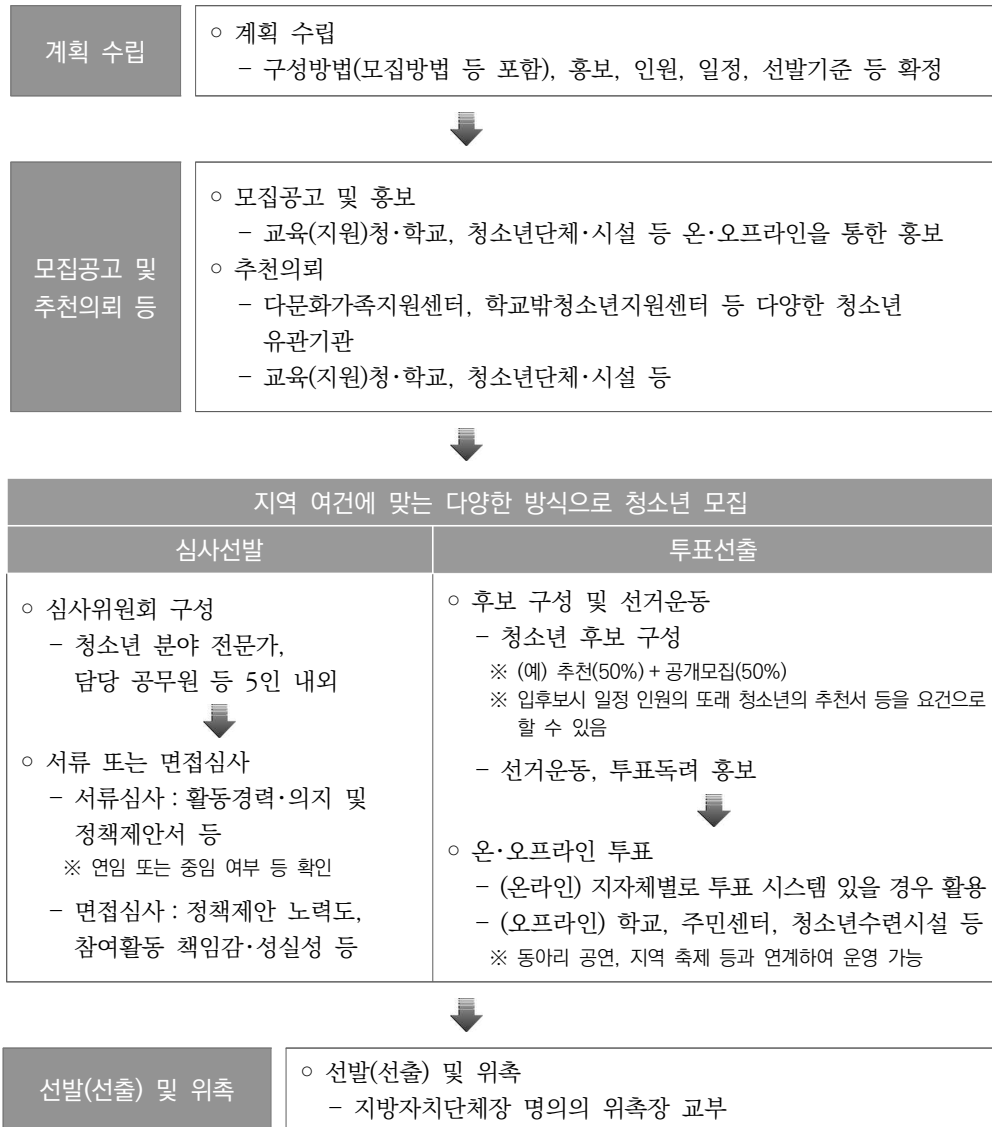
③ 공개모집(추천병행)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하여 기회균등 및 다양한 청소년 참여 보장
 - ※ 공개모집 시 학교,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등을 참고하여 선발
- 지자체 주관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등 절차를 통해 위원 선발
 - ※ (절차) 모집공고 및 추천의뢰 → 서류 및 면접심사 → 선발 및 위촉
- 모집 시 또는 선발 이후 또래 청소년의 추천서(10명 이상)를 지자체(위탁기관)로 제출
 - ※ 청소년 스스로 참여기구를 홍보하고 활동의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위촉 및 임기

- 최종 선발된 청소년위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위촉장 교부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 '20년 이후 위촉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경우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최대 3회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가능함을 사전 안내
(소속지역 변경된 경우 포함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위촉 시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할 수 있음

○ 위촉절차(주체 : 시·도, 시·군·구)



□ 해 축 【붙임9】

- (공통)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해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축 가능
 - 연도말 각 청소년 위원들에 대한 활동확인서 발급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활동기준에 미달하는 위원들에 대한 해축 처리 절차 등 마련

해축 기준(안)

-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축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청소년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해축에 동의한 자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이내)의 상(喪) 및 결혼
 5.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도)

- 당연직 위원이 해당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해축될 경우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도 위원직 상실
 - ※ 해당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다른 청소년 위원으로 보임하되, 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10월 이후에 해축될 경우에는 추가 보임 불필요
- 당연직 위원이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해축될 경우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님
 - ※ 다만 해당 시·군·구 참여위원회는 해축된 위원 이외의 다른 위원을 정하여 시·도 참여위원회로 통지해야하나,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10월 이후 해축시 추가 통지 불필요

(3) 주요 활동

구 분	주 기	내 용
시·도	연 8회 이상	- 시·도(시·군·구)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 청소년포럼·토론회·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참여
시·군·구	연 4회 이상	

※ 화상회의 등 온라인을 통한 참여활동도 월별 활동으로 인정

□ 시·도(시·군·구)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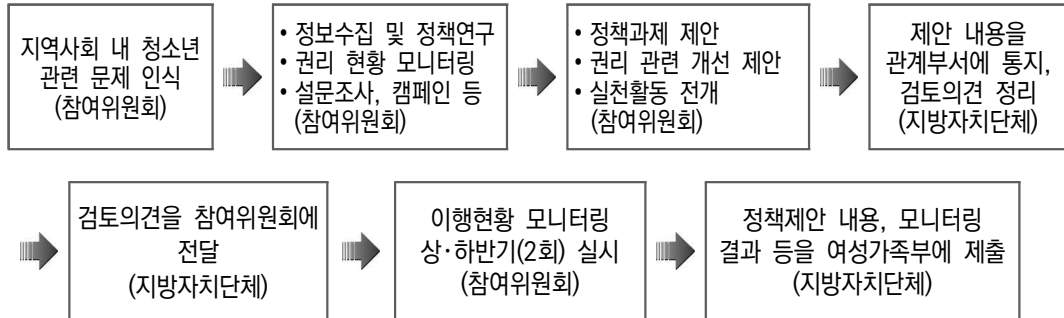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문제를 안건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 모색
 - 시·도(시·군·구)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권리·인권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제안
 - 소관부서에 정책제안서 제출 등 정책 제안 및 실천활동 전개(캠페인 등)
-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들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참여위원회가 아닌 다양한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 할 수 있도록, 투표·설문조사 등 권장

참고 : 다양한 청소년 의견수렴

- 예) “청소년전화 1388”을 홍보하고자 할 경우,
 안건 제안 ☞ 라디오를 통해 홍보(×) → 청소년 구독자가 많은 ○○○프로그램의 ○○○코너에서 사연 읽어주기 이벤트(○), 청소년 1388 홍보영상 제작 후 SNS를 활용하여 배포(○)
 의견 수렴 ☞ 청소년 구독자가 많은 ○○○프로그램의 ○○○코너에서 사연 읽어주기 이벤트(1안), 청소년 1388 홍보영상 제작·SNS를 활용하여 배포(2안) 등 다양한 대안을 토론·논의하고, 참여위원회 뿐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 투표(선관위 K-VOTING, 청소년 참여포탈, 지자체 홈페이지, 직접 투표 등 활용), 득표 수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 각종 선거 후보자의 청소년 정책 관련 공약에 대한 제안·점검
-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의 추진·이행현황 모니터링

■ 주요활동 과정 ■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토론회·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참여

- 청소년포럼·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참여활동 사례 공유
 -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도 단위 연계활동 적극 참여(시·도 단위 청소년포럼·토론회 등 참석)
- 현안 발굴을 위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
-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진행하는 행사 추진
- 타 청소년참여기구와의 간담회 등 교류활동

Tip : 청소년참여위원회 안건 선정 및 검토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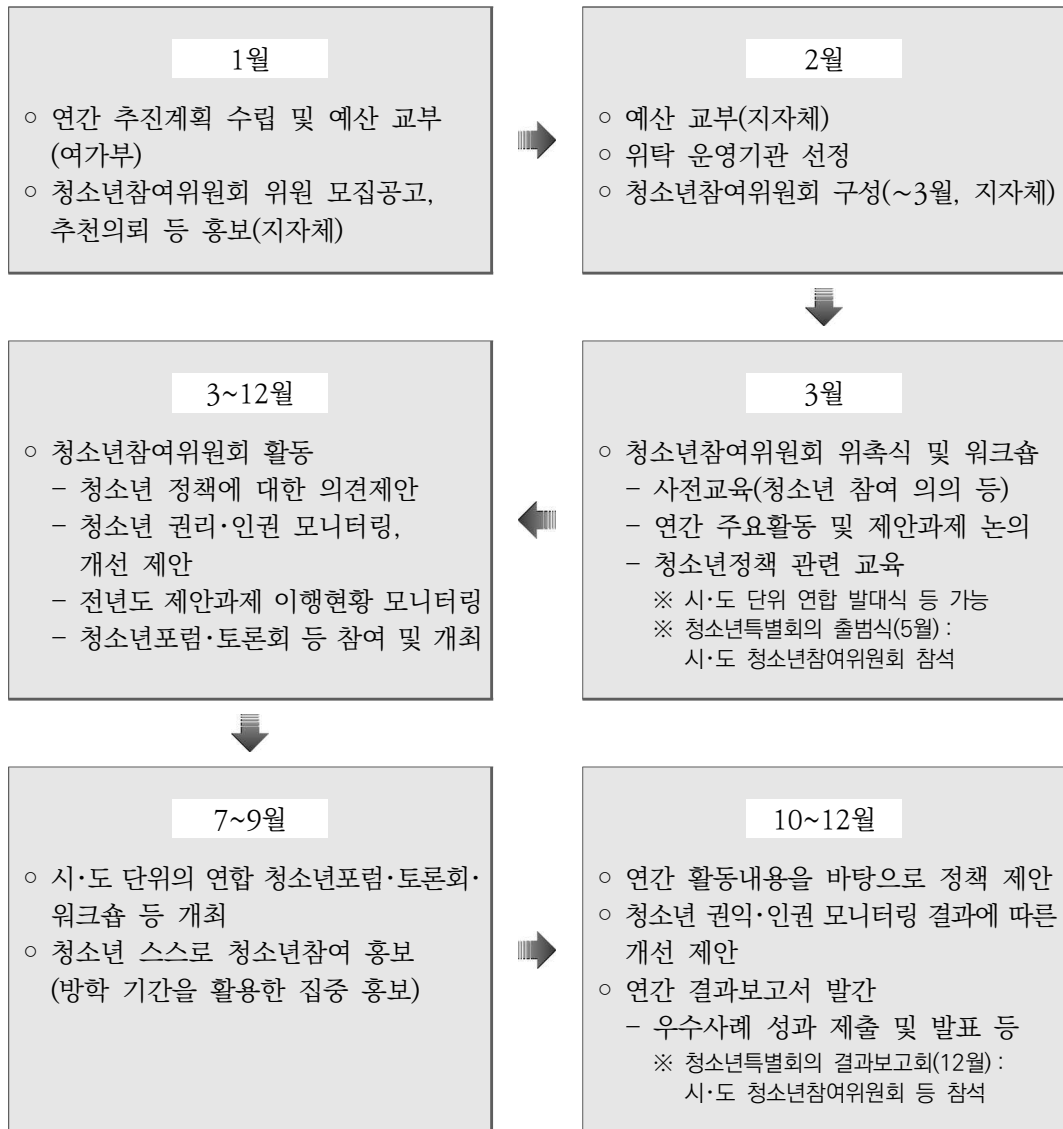
- 청소년들이 발굴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안건을 선정하거나, 각 부서에 수요조사(기관 인트라넷 등 활용)를 통해 선정된 안건을 청소년들에게 제안할 수도 있음
 - 구체적인 안건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안건은 위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1주전까지 공지,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안 할 수 있도록 지도

예) “청소년전화 1388”을 홍보하고자 할 경우,

안건 ☞ “청소년전화 1388” 홍보 방법(×) → 매체를 통한 홍보 방법(○)

제안 ☞ 라디오를 통해 홍보(×) → 청소년 구독자가 많은 ○○○프로그램의 ○○○코너에서 사연 읽어주기 이벤트(○)

(4) 연간 추진일정(예시)



(5) 협조사항

□ 지역 내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확대 및 청소년 참여예산제 활성화

○ 지역 단위에서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설치 시·군·구에 대해 우선 지자체 자체적으로 구성·운영 추진 필요

-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질적 기회보장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국정과제 53-3-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및 창의적 역량 강화 :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참여예산제 확대

※ 청소년 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 주체를 청소년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지자체 예산 일정 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청소년위원회 분과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연계 운영,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식 가능)

- 국고보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사업 수행 시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널리 공지하여야 함

- 인쇄물·홍보물 등에 ‘여성가족부, ○○시·도(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임을 표시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원활한 업무 협조

* 시·도 참여위원회 당연직 위원(시·군·구 대표 등)이 시·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구(운영기관) 협조 등 필요

	홍 보	지 원
여성 가족부	○ 참여활동 언론 홍보 등 총괄 - 행사 및 참여활동 보도 등	○ 우수기관 발굴·표창 - 우수사례 발굴 및 장관상 수여
	○ 청소년참여포탈 운영 및 홍보 - 참여기구 간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 - SNS 등을 통한 홍보 활성화	○ 지도자(공무원) 역량강화 - 사업안내·운영매뉴얼 배포 및 교육 실시
	○ 구성 시 타기관 홍보협조, 포스터 제작 등 홍보 지원	○ 참여기구 간 정보교류 및 연계 등
	홍 보	지 원
지방 자치단체	○ 청소년참여위원회 홍보물 제작·배포 (캠페인 등 대외 활동 시 적극 활용)	○ 자치단체장 등과의 간담회 추진
	○ 지역 TV, 신문 등에 모집, 우수 활동 사례, 지역회의 활동 등 홍보 (예) 참여위원회와 자치단체장 간담회 등	○ 타 참여기구와의 연합 워크숍 및 토론회 등 개최 ※ 시·도 연합활동 추진 및 참여
	○ 청소년참여포탈에 활동 상황 게시 (사진, 행사개최 안내 등)	○ 참여활동 우수자 및 지도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 위원 임기 종료 시 활동확인서 교부

다.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등 제출(각 시·도에서 시·군·구 자료 취합 제출)

- '22. 1월 : '22년 사업계획서 및 '21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붙임13】**
 - 담당 공무원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인원, 구성, 선발 일정, 활동계획 및 위탁 운영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 시·도 단위 청소년포럼·토론회 등 개최 계획 반드시 포함(온라인 가능)
 -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시 전년도 제안과제 반영여부 및 이행현황 등 포함
- '22. 4월 : '22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현황 제출
 -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참여예산제 구성현황 반드시 포함
- '22. 10~11월 : 우수사례 제출
 -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정책제안·활동운영) 선정·시상·사례집 발간을 통해 지역 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제출

□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청소년참여위원회 제안 정책과제에 대한 수용성 강화
 - 지자체에서는 정책과제별 소관부서에 통지하고, 검토의견을 취합·정리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반드시 회신(서면·구두,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 등)
 - 연말 정책과제 발표회 또는 결과보고회에 지자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적극 참여하여 검토의견을 회신함으로써 청소년 위원들의 연간 활동에 대한 격려 등 추진
-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제·개정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도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지도자의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 필요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 청소년참여위원회 서포터즈 등 구성·운영 가능

□ 기 타

-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시 활동 참가 청소년위원에게 교통비 지급 가능
※ 참가수당 별도 지급 불가
-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 가능(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 위탁기관 선정 시 청소년 참여 관련 사업 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관내 교육청 협의 등을 통한 자원봉사 실적 인정 등 가능(지자체별)

〈참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시·도(시·군·구)²⁾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시·도(시·군·구)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
2. 타 시·도 및 도내 시·군·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기타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안·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도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 내외로 한다.

2) 시·도(시·군·구)는 이하 “도”로 통일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를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연 8회 이상(시·군·구-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도지사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이행
-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민주시민역량 함양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 추진 경과

- '04년에 시범사업 후 매해 개최
- '18년부터 시·도 참여위원회 위원 전원을 특별회의 위원으로 위촉

나.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 주요 운영방향

□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중앙 팀 체제 운영 지속

- 중앙에서 선발하는 청소년 위원 규모를 확대하여 정책기획팀 및 온라인소통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선발시부터 기준을 달리하여 선발
- 선발직(70명 내외)과 당연직(430명 내외)을 포함하여 총 500여명 규모로 구성
 - ※ 지역(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을 기존대로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되, 지역 단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천과제 활동 중심으로 운영
 - ※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특별회의 지역회의)에서 발굴한 전국 확산·공통 논의 가능한 과제는 전체 안건으로 상정

□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참여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역량강화교육 등 추진

다. 구 성

(1) 청소년 위원

구 분		기능 및 역할
의장단 (3명)	의장, 부의장	- 청소년특별회의 주재 및 대표로서 활동 - 정책제안, 행사 기획·진행 총괄 등
선발직 (중앙선발, 70명 내외)	정책 기획팀	- 정부에 제안할 정책제안과제 발굴 및 제안 • 온라인 정책과제, 사회적 이슈 발굴 등 - 정책제안과제 실천활동 -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평가
	온라인 소통팀	- 특별회의 홍보 활동(청소년 에디터 활동)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유튜브 운영 등) -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운영 - 청소년 여론 동향 파악, 이슈 발굴 및 이슈화
당연직 (특별회의 지역회의, 450명 내외)	17개 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책과제 발굴 및 활동 ○ 청소년포럼·토론회, 캠페인, 워크숍 등 개최 및 참여 ○ 공동 실천활동 전개 및 대외 홍보 추진·운영

□ 개 요

○ 의장단

-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 중 투표를 통한 선출(의장 1명, 부의장 2명)
 - ※ 반드시 남성 및 여성 청소년을 각 1명 이상 포함
 - ※ 청소년참여 관련 활동 등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선발

○ 청소년특별회의의 선발직

- 정책기획팀, 온라인소통팀으로 구분하여 활동
 - ※ 활동 내용에 따라 선발시부터 기준을 달리하여 선발

○ 청소년특별회의의 당연직

- 17개 시·도 지역회의, 총 450여명(시·도별 각 25~30명 내외)
-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으로 위촉
 - ※ 청소년특별회의의 선발직 및 당연직은 겸임 불가
 - ※ 지역별 의제 등에 따라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이외 청소년을 청소년 특별회의의 위원으로 추가로 추천 가능(시·도 → 여성가족부)

□ 위촉 및 임기

- 중앙에서 선발하는 청소년 위원 및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청소년 특별회의로 위촉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위촉장 교부【붙임10】
- 청소년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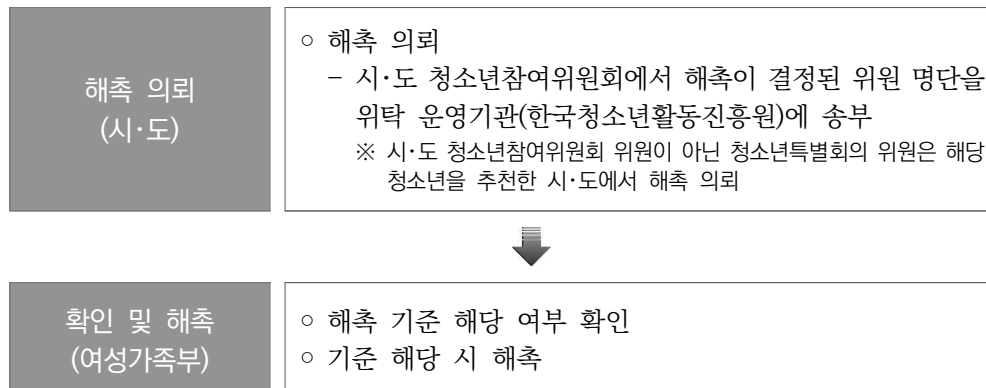
□ 해 촉【붙임11】

○ 기 준

- 청소년 위원이 소속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해촉될 경우 청소년특별회의에서도 위원직 상실
- ※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아닌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은 아래 기준에 해당 시 해촉

- ①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자
 2. 범죄, 청소년특별회의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청소년특별회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해촉에 동의한 자
 3.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이내)의 상(喪) 및 결혼
 5.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절 차



(2) 전문가 자문단

□ 역 할

- 참여 청소년 역량 강화 교육 및 특별회의 운영 지원 등
 - 정책과제 분석·구체화·발굴 지원
 - 청소년, 홍보 관련 데이터 수집, 콘텐츠 제작 지원
 - 청소년참여활동 관련 전문정보 제공 및 자문
 - 청소년 선정 의제에 따라 적절한 전문가 자문단 지원
- ※ 출범식, 정책발굴워크숍, 지역회의 등 참여

□ 구 성

-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와 청소년 참여 관련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임기는 1년이며, 연임 또는 중임 가능

라. 연간 추진일정

□ 운영계획 수립 및 확정(1월)

- 청소년특별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운영계획 수립·시행

□ 구 성(1~3월)

- 전문가 자문단 구성(1~2월)
- 청소년특별회의 선발직 및 당연직 구성(시·도별 늦어도 3월말까지 구성 필요)

□ 청소년참여기구 담당자 워크숍(2월, 온라인)

-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 사업 안내 및 세부 일정·운영 논의
-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4~5월)

- 위촉장 수여 및 의장단 선출·임명장 수여, 출범선언
- 청소년 참여 관련 기본 교육

- 전국 공통 실천과제 논의 및 선정
- 17개 시·도 지역회의 대표자 회의 등
- 정책발굴워크숍 등(5~8월)
 - 정책제안과제 체계화·구체화 작업
- 본회의(9월)
 - 의결투표에 상정할 최종 정책과제 도출
 - 최종 의결투표 진행(전체위원 대상)
- 제안 정책과제 정부부처 협의 등(10월)
 - 제안 정책과제 관련 정부부처 협의
 -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활동
- 결과보고회(12월)
 - 정책과제 수용 결과보고 및 연간 활동 내용 공유
- 지역회의 정책제안 및 공동 실천과제 활동(4~12월)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책과제 발굴 활동
 - 청소년포럼·토론회, 캠페인, 워크숍 등 온·오프라인 개최 및 참여
 -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와 관련한 전국 단위의 실천 활동 추진 및 운영
- 청소년특별회의 온라인소통 및 홍보 활동(연중)
 -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운영
 - 특별회의 전반 홍보 콘텐츠(영상, 카드뉴스 등) 제작 및 배포

마.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등 제출

- '22.1월 : '22 사업계획서, '21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붙임13】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세부 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지도자의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 필요
-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필요

□ 기 타

-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시 활동 참가 청소년 위원에게 교통비 지급 가능
※ 참가수당 별도 지급 불가
- 활동확인서는 청소년참여포탈(youth.go.kr/ywith)을 통해 발급 가능
【붙임12】

연도별 정책의제 및 과제 현황

년 도	정 책 의 제
2004년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2005년 (제1회)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20개 과제)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영역 18과제 수용
2006년 (제2회)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37개 과제)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
2007년 (제3회)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18개 과제) -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2008년 (제4회)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35개 과제)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
2009년 (제5회)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20개 과제)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2010년 (제6회)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2011년 (제7회)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41개 과제)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6개 수용
2012년 (제8회)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89개 과제)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81개 수용
2013년 (제9회)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29개 과제) - 진로체험활동 인프라 확대 등 28개 수용
2014년 (제10회)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31개 과제) - (가칭) '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운영 등 28개 수용
2015년 (제11회)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23개 과제) - 역사이해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 20개 수용
2016년 (제12회)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29개 과제)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28개 수용
2017년 (제13회)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30개 과제)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24개 수용
2018년 (제14회)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올림이 되다(22개 과제) -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등 20개 수용
2019년 (제15회)	○ 청소년 경제활동, 안전, 양성 평등, 인권, 학교 밖 청소년지원 총 5개 정책영역과 특별과제 1건 포함 총 28개 과제 제안, 25개 수용
2020년 (제16회)	○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33개 과제) - 청소년 근로 부정적 인식 개선, 청소년수당 등 32개 수용
2021년 (제17회)	○ 시작점이 같은 청소년, 각자의 기회에서 빛나다(30개 과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등 28개 수용

【붙임1】 청소년참여위원회 : 구성 계획(예시) - 지역별 상황에 맞게 변경사용

제○○기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계획(안)

1. 심사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 ○○○○. ○○. ○○ (월)
 - 1차 심사(서류) : ○○○○. ○○. ○○ (수) / ○○○도청 회의실
 -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 ○○○○. ○○. ○○ (금) / 홈페이지 공지
 - 2차 심사(면접) : ○○○○. ○○. ○○ (월) / ○○○도청 회의실 또는 줌
 - 최종합격자 발표 : ○○○○. ○○. ○○ (화) / 홈페이지 공지 및 전화 통보
- ※ 선발인원 : 각 지역별 비례에 맞게 인원 구성(선발하는 기간은 연초 2~3월 내 모두 구성 완료)

2. 접수 현황

※ 지역별 현황에 맞게 공개모집(학교급별, 종류별 구분 등), 추천(자치기구 청소년, 시·군·구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현황 작성

3.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기준 :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을 선발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를 포함하여 ○명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안)
 - 1차 심사(서류)

성 명	소속 및 직급	성 명	소속 및 직급

- 2차 심사(면접)

성 명	소속 및 직급	성 명	소속 및 직급

4. 선발 기준 및 방법

○ 선발 방법

- 1차 심사(서류) : 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
- 2차 심사(면접) : 최종 선발

○ 선발 기준 :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기준(붙임3 참조)

○ 선발 세부 기준

- 연임 또는 중임 청소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청소년 위원의 0% 내외로 구성(청소년은 최대 3회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가능)
- 대표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으로 구성되도록 심사하여 선발
 - 연령, 성별 등 비율을 고려하여 선발
 - 고등학생 연령은 일반고·특성화고·특목고·자율고, 대학은 전공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생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발
 - 근로, 북한이탈, 다문화,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청소년을 포함하여 대표성 확보

【붙임2】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 위원 선발 공고(예시) - 구성 계획에 따라 변경

○○도 공고 <제○○○○-○○호>

제○○기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선발(안)

○○도에서는 청소년들을 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기 ○○○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 할 예정이오니, ○○○도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방법

- 지원자격 : ○○○도 청소년
- 접수기간 : ○○○○년○○월 ○○일~○○월 ○○일(○요일)
- 구비서류
 - 1차 서류 심사 : 지원신청서(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추천서* 포함)
 - * 추천서 : 교육(지원청)·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
 - 최종합격자 : 보호자 동의서 및 학교장 동의서
 -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및 초·중·고교생인 경우 해당

■ 접 수

- 접수처 : ○○○도○○○○과 담당(ooooo@oooo.go.kr)
- 문의처 : ○○○도 홈페이지(www.oooo.go.kr)
○○도○○○○과(☎000-000-0000)

■ 선발계획

- 1단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년○○월 ○○일(○요일)
- 2단계 면접 : ○○○○년○○월 ○○일(○요일) / ○○○○ 대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년○○월 ○○일(○요일)
 - * 최종합격자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전화 통보예정
youth.go.kr/ywith(청소년참여포털), www.oooo.go.kr(○○도청)
- 오리엔테이션 : ○○○○년○○월 ○○일~○○월 ○○일(불참 시 합격 취소)
- 위촉시 : ○○○○년○○월 ○○일(○요일)
 - * 위촉기간 중 회의 및 행사 불참 등 활동이 부진할 경우 해촉될 수 있음

【붙임3】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 위원 서류 및 면접 심사 기준(예시)

1차(서류) 심사 기준(예시)

심사항목	배점	평가세부내용	비 고
합 계	100		
자기소개서	40		
■ 참여활동 이해도	10	• 청소년 참여활동 기능·역할에 대한 이해 정도	■ 최우수 : 10~9 ■ 우수 : 8~7 ■ 보통 : 6~5 ■ 미흡 : 4~3
■ 참여활동 의도·의지	20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도 및 활동 의지	■ 최우수 : 20~16 ■ 우수 : 15~11 ■ 보통 : 10~6 ■ 미흡 : 5~1
■ 성품 등	10	• 봉사정신, 사회적 협력 정신, 어려운 환경 극복 등 인성(*소수청소년 우대)	■ 최우수 : 10~9 ■ 우수 : 8~7 ■ 보통 : 6~5 ■ 미흡 : 4~3
정책제안서	60		
■ 정책제안의 창의성	20	• 제안한 정책의 창의성 및 독창성	■ 최우수 : 20~16 ■ 우수 : 15~11 ■ 보통 : 10~6 ■ 미흡 : 5~1
■ 정책제안의 논리성	15	• 정책제안서 내용의 논리성 및 구체성	■ 최우수 : 15~13 ■ 우수 : 12~10 ■ 보통 : 9~7 ■ 미흡 : 6~4
■ 정책제안의 기여도	15	• 제안한 정책의 사회적 필요성과 기여정도	■ 최우수 : 15~13 ■ 우수 : 12~10 ■ 보통 : 9~7 ■ 미흡 : 6~4
■ 정책제안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10	• 제안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 •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 여부	■ 최우수 : 10~9 ■ 우수 : 8~7 ■ 보통 : 6~5 ■ 미흡 : 4~3

2차(면접) 심사 기준(예시)

심사항목	배점	평가세부내용	평가척도
합 계	100		
자기소개	20		
■ 참여활동 의지 · 책임감	20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 및 의지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가능 여부	■ 최우수 : 20~16 ■ 우수 : 15~11 ■ 보통 : 10~6 ■ 미흡 : 5~1
의제발표	30		
■ 정책제안의 이해도, 노력도	30	• 정책제안 목적, 배경,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설명능력 • 정책제안서 발표 능력 및 노력도	■ 최우수 : 30~26 ■ 우수 : 25~21 ■ 보통 : 20~16 ■ 미흡 : 15~11
질의응답	50		
■ 사회성, 협력성	20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중 타 청소년과의 사회적 협력	■ 최우수 : 20~16 ■ 우수 : 15~11 ■ 보통 : 10~6 ■ 미흡 : 5~1
■ 성실성	15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방침 및 과제발굴 등 참여의 성실성	■ 최우수 : 15~13 ■ 우수 : 12~10 ■ 보통 : 9~7 ■ 미흡 : 6~4
■ 문제해결력	15	• 문제발생 시 대처 능력, 위급상황 시 해결 능력 등	■ 최우수 : 15~13 ■ 우수 : 12~10 ■ 보통 : 9~7 ■ 미흡 : 6~4

위 촉 장(안)

생년월일 : 0000. 00. 00

성 명 : ○ ○ ○

위 청소년을 ○○시·도 제○○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00.00~0000.00.00)

0000년 00월 00일

※ 본 위촉장으로 활동내용을 증명할 수는 없으며, 활동내용은 '활동확인서'를 통해 확인가능함
(‘활동확인서’는 본 사업의 위탁기관인 ○○○○○○○○에서 발급 : 위탁기관의 경우)

○○도지사 ○ ○ ○

【붙임5】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 위원 활동확인서(안)

활 동 확 인 서(안)

○○호

인적 사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경력 사항	소 속				
	직 위				
	기 간 및 활동시간		. . . ~ . . . (총 시간)		
	활 동 내 용				
용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도지사 / ○○○○단체장(위탁의 경우) 붙임 : 세부활동내역 1부					

【붙임6】 청소년참여위원회 : 지원 서류

지 원 신 청 서

청소년 개인정보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	
연 락 처		E-mail	
소 속 (학교, 단체명)		학년/반 (전공)	
활 동 경 력			
기 간	소 속	내 용	비고
	※ 소속(학교, 단체명)된 곳에서 활동했던 기간과 주요 내용을 적어주세요 (기존 참여 기구 활동 경력 포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년 ○○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자 기 소 개 서

※ 일정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활동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2매 이내)

정 책 제 안 서

※ 일정한 양식 없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안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제〇〇회 〇〇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추천서(안)

청소년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				
연락처			E-mail		
소속 (학교, 단체명)			학년/반(전공)		
활동경력					
기간	활동내용 (추천사유)				
년 월 일~ 년 월 일					
추천기관 정보					
소속 (학교, 단체명)			연락처	대표전화	
				메일	
주소			홈페이지		
추천자	직위		성명		

위 청소년을 제〇〇회 〇〇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년 ○○ 월 ○○ 일

추천인 : 직인

○○도지사 귀하

청소년(또래) 추천서

○○도 청소년을 대표하는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
(생년월일 : ○○○○.○○.○○.)를 추천합니다.

연번	소속	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
예시	○○ 고등학교	○○○	○○구 ○○대로 ○○○	010- 1234-567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7】 청소년참여위원회 : 보호자 및 학교장 동의서

보 호 자 동 의 서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만 19세 미만인 경우 제출)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 청소년이 ○○도 『제○○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데 동의합니다.

보호자 성 명 :

주 소 :

청소년과의 관계 :

○○○○. ○○. ○○

보 호 자 : (인)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제출

학 교 장 동 의 서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제출)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 청소년이 ○○도 『제○○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속기관(학교)명 :

소속기관 주소 :

○○○○. ○○. ○○

학 교 장 : (직인)

담당교사 : (인), 연락처 :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기록

【붙임8】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예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예시)

본인은 청소년특별회의 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여성가족부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보험가입,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활동기록 유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보 안내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참여활동 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일반개인정보의 선택적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항목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보험가입,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활동기록 유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보 안내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보 안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항목	생년월일
수집 및 이용목적	보험가입,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여 청소년의 활동기록 유지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참여활동 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청소년특별회의의 활동확인서는 청소년참여포털(youth.go.kr/ywwith)을 통해 발급

20 . . .

성 명 : (서명)

3 청소년 참여 증진 및 구대 사업

해당 청소년 위원			
성 명		생년월일	
지 역		성 별	
해촉 의뢰 사유			
※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			
20 년 월 일			
위탁기관장 : (인)			
○○도지사 귀하			
붙임 : 해촉 경위(사직서, 회의록 사본 등) 1부			

위 촉 장(안)

성 명 : ○○○

생년월일 : 0000. 00. 00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제○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00.00~0000.00.00

0000년 00월 00일

※ 본 위촉장으로 활동내용을 증명할 수는 없으며, 활동내용은 '활동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여성가족부장관

3 청소년 참여 증진 및 구대 사업

해당 청소년 위원			
성 명		생년월일	
지 역		성 별	
해촉 의뢰 사유			
※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			
20 년 월 일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 (인)			

붙임 : 해촉 경위(사직서, 회의록 사본 등) 1부

활동확인서(안)

성 명 : ○○○

생년월일 : 0000. 00. 00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제○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으로 활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활동기간 : 0000.00.00~0000.00.00

0000년 00월 00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 청소년특별회의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년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서

※ 시·도, 시·군·구별 보고서를 나열하지 말고, 주요 실적을 기재하여 5페이지 내외로 간단하게 작성

I. 사업개요

○ 목 적

- 청소년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

○ 근 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기본법 제12조

○ 주요내용

- 지역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지역사회 내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 등
- 청소년특별회의의 지역회의,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캠페인, 워크숍 등 활동

II. 사업추진 실적

○ 활동 현황표

구분	개소수	인원(명)	총 활동현황(회)	세부활동 내역
○○○도	1	20	30 (회의, 토론회, 캠페인 등)	- 회 의 : ○회 - 토론회 : ○회 - 캠페인 : ○회
○○도 특별회의				
○○○군				
○○○구				
계				

○ 정책제안 현황

※ 당해년도 정책제안 현황을 작성

구 분	건수	주 요 내 용
○○○도		○○도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제안 청소년명예부지사 제도 도입 제안 도지사와 함께하는 청소년토크콘서트 정례화
○○○군		
○○○구		
계		

○ 전년도 정책제안 이행결과

※ 전년도 정책제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

구 분	전년도 정책제안		정책제안 이행결과	
	건수		건수*	
○○○도	2	- ○○○도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제안 - 청소년명예부지사 제도 도입 제안	이행 완료 1, 이행중 1	- 도내 ○○시, ○○군 등 6개소 설치(년월) - 청소년명예부지사 제도 도입 추진 중
○○○군				
○○○구				
계				

* 이행결과 건수는 이행완료, 이행중, 미이행으로 구분하여 표기

※ 전년도 정책제안 건수와 정책제안 이행결과의 건수 합은 일치하여야 함

○ 기타 성과

※ 지역만의 특별한 성과 또는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거둔 성과를 작성

구 분	주 요 내 용
○○○도	도지사와 함께하는 청소년토크콘서트 정례화
○○○군	
○○○구	

Ⅲ. 자체평가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발전방안 등
- 홍보 실적(언론보도 현황)
 - ○○○도 청소년특별회의 '17년 총 200건 언론 보도 달성

Ⅳ. 정산결과

- 정산총괄표 * 반드시 원단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단위 : 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계	비고
예산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이자발생액				

가. 사업개요

□ 목적

-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청소년 참여의식 확대
-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이 실제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개선·반영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운영주체 :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 운영
- 설치대상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추진경과
 - 2001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침에서 구성·운영 권장
 - 2003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법적 근거 마련 후 설치 확대

□ 운영현황

- 2006년 210개소에서 2022년 331개소 운영 지원
 - 공공 수련관 및 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중심 선발지원

■ 연도별 운영실적 ■

설치대상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운영지원(개소)	250	258	273	286	286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31	331	331
지원예산(백만원)	250	258	273	286	286	305	381	305	305	305	305	305	305	331	331	331

나. 2022년 세부운영 계획

(1) 지원 대상

- 대상 : 청소년수련시설 331개소
- 지원 : 1개소 당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2백만원 이내
 - * 예산 : 국비 331백만원(청소년육성기금,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지원)
- 구성 : 지역 내 청소년(9세~24세)으로 시설별 10명 이상~20명 이내

■ 2022년 시도별 지원 개소 수 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331	45	15	10	13	7	11	8	2	64	34	17	15	18	16	15	17	24

※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등 지원 할 수 있음

(2)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발

□ 구성

- 지역 내 청소년(9세~24세)으로 10명 이상~20명 이내
- 일반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장애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조손가정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청소년 위주로 구성되어야 함

□ 모집 및 선발

- 모집대상
 - 전체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함
 - * 연임되는 인원 이외의 인원을 신규 선발하도록 함
 - 신규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공개모집과 추천모집(학교, 관련기관 및 단체)를 적절한 비율(50:50 권고)로 적용할 수 있음
 - 지역 여건 등으로 모집 방법에 따른 비율에 미달할 경우는 선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모집시기 : 1~2월(공개모집, 추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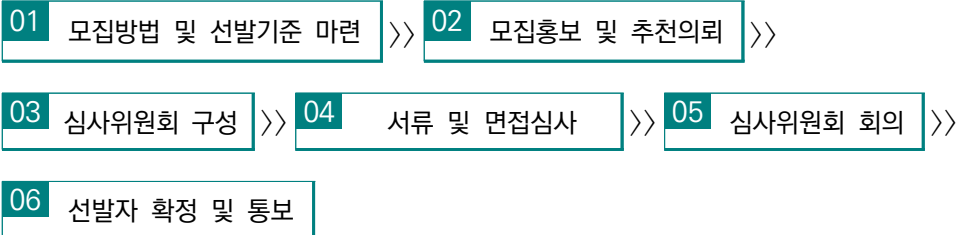
* 시설의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나 2월 28일까지는 구성 완료되어야 함

- 추천대상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관내학교, 관련기관 및 단체 등
- 추천방법 : 해당 청소년(학생)의 참여의사 확인 후 추천서 양식에 따라 추천

○ 선발방식

- 청소년운영위원, 시설관계자,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 * 청소년 관련 분야 교수 및 학계 전문가, 청소년시설·단체 등 지역사회 청소년전문가 등
- 선발시 고려사항
 - 청소년 단체의 회장, 학급 임원 등 자치기구 대표 청소년은 역할 중복 등으로 지속적 활동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하여 선발
 - 성별과 교급(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고려하되 대학생의 비율은 수련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

○ 절차



(3)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기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시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야 함

예시) 위원장 / 부위원장 / 총무 / 분과장 / 실무간사(담당 청소년지도사)* /
자문기구(청소년관련 전문가 / 지역사회 인사 / 학교 교사 등)

* 팀장(경력자) 이상 담당할 수 있도록 권고함

- 위원장 선출 및 권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시행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기구로써, 시설의 사업 수행 도우미 또는 청소년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 위촉 및 해촉

- 위촉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하며, 시설장 명의의 위촉장을 교부함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 연임의 횟수, 연임 임원의 비율은 각 시설의 여건에 따라 정함
- 활동이 불성실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위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는 아래와 같이 해촉 가능

《해촉 기준(안)》

- ①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해촉에 동의한 자
 4. 위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및 결혼

□ 운영 규정(첨부1 참조)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해야 함

□ 주요 활동내용

- 기본계획 수립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연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
 - * 해당 수련시설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실무 간사(담당 전문지도자)를 배치·지원해야 함
- 연간활동계획수립 :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 된 이후 회의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연간활동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3월부터 12월로 계획되는 것이 보통임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예시 ■

1~2월	3월	3~11월	12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모집 및 선발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식 및 워크숍, 연간 활동계획 세우기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활동, 기관장 간담회, 활동 요구조사 및 분석	청소년운영위원회 보고서 발간, 신규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홍보

○ 회의 운영

- ① 정기회의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매달 정기적인 회의를 운영해야 함
 - ▶ 정기회의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고유한 역할(모니터링, 자문·평가 등)과 다양한 기획 사업 등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회의로 운영됨
- ② 임시회의 : 정기회의 이외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전체회의
 - ▶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들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개최할 수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모니터링 및 자문·평가
 - ▶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의견 제시를 통해 청소년에게 적절하게 운영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수렴까지 다양하게 참고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시 청소년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 * 청소년수련시설 환경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반영 및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
 - ▶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자체 회의를 통해 수련시설 모니터링 및 자문·평가 외에 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자원봉사, 캠페인, 교류활동 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 주요 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
 - 우수사례 조사 및 우수활동 발굴, 타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교류 활동
 - 지역사회 내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봉사활동 등
- 청소년시설 기관장과의 간담회
 - ▶ 운영위원들의 건의사항, 모니터링 결과,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 등을 전달하고 실행되지 못한 내용 등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
 - ▶ 기관장과의 간담회는 분기별 1회 또는 반기별 1회로 진행
 - *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주의 요망(첨부 7 참조)
- 청소년수련시설 내 다양한 진로역량제고 관련 활동 장려
 -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수련시설 내 청소년협동조합 등 다양한 활동 장려
- 지자체 방역지침 준수 및 필요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능
 - ▶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지자체의 생활방역지침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 및 활동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능

(4) 청소년운영위원회 의견 및 활동 관리

□ 의견 제출 및 조치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운영위원회 간사(청소년지도사)는 정기 및 임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에 제출된 회의록 중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및 조치하여야 함
 -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여야 함
- 청소년운영위원회 간사(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연간계획, 활동 및 회의내용, 의견 반영 여부를 「청소년수련시설포털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매월)
 - * 국비 미지원 수련시설 운영위원회도 활동실적 등록

[청소년수련시설포털 : www.youthnet.or.kr]

종합관리시스템 → 시설정보관리바로가기 →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리 →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연간계획, 활동실적 등록

《지방자치단체》

- 각 시·도는 소관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정기적인 활동을 점검하고 활동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함(반기별)

[청소년수련시설포털 : www.youthnet.or.kr]

종합관리시스템 → 시설정보관리바로가기 → 해당시설 선택 →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리

《여성가족부》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차년도 지원 대상 선정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참여

- 수련시설장은 청소년운영위원회위원장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청소년 대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천

〈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부터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 추천 필요 없음)
 - 청소년 대표(청소년운영위원회위원장)
 - 지역주민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청소년 대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위원장 등 청소년활동에 대한 의식과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촉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시설에 한함

(5)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 여성가족부

-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단 선정 및 운영 지원
-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 전국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 추진

□ 지방자치단체

- 각 시·도는 「시·도별 운영위원회 대표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정보 교류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수련시설포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활동실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내
 - *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국비미지원 대상)도 활동실적 관리 안내

(6)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등 제출(각 시·도)

- '22년 1월~2월 : '22년 기본계획서, 교부금신청서, '21년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22년 3월 : '22년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제출
- '22년 7월 : '22년 상반기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실적 제출
- '22년 12월 : '22년 하반기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실적 제출

□ 운영관련 사전 기반 조성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련시설 운영관련조례, 정관, 내부규정 등 근거규정을 마련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외에 자체 예산을 적극 확보 운영
 - * 국고 미편성 수련시설의 경우 자체 예산확보 운영

□ 기타

-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시 활동 참가 청소년위원에게 교통비 지급 가능
 - * 참가수당 별도 지급 불가

청소년운영위원회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⑦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규정(예시)

제정 ○○○○년 ○○월 ○○일

개정 ○○○○년 ○○월 ○○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련관 운영 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
3. 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학교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 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조직 구성과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지역사회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0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및 결혼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해 참여하여 서명 날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청소년수련관 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내에 ○○○청소년수련관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및 반영)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제안,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청소년수련관 관장은 그 처리 결과를 회신 및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사회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

제12조(운영규정의 변경)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변경된 운영규정은 ○○○청소년수련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청소년수련관 관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청소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과 함께 다양한 의견 및 요구를 제안함으로써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기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모집기간 : 20○○. ○. ○(화) ~ ○. ○(금), ○일간
- ◆ 자격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가능한 자
- ◆ 주요역할 : 시설의 운영 정책 제안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설의 다양한 행사 참여 및 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체 사업 진행 등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보호자 동의서, 추천서
 청소년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계획서(분량 및 형식의 제한 없음)
 예) 청소년시설에서 하고 싶은 것 등
- ◆ 제출처 : ○○○○청소년시설
 (우편, 이메일 및 직접 제출)
 - ▷ 주소 : ○○○○
 - ▷ 이메일 : ○○○○
 - ▷ 연락처 : ○○○○
- ◆ 1차 서류심사 발표 : 20 . ○. ○(월)
- ◆ 2차 면접 : 20 . ○. ○(금), 14:00 / 장소 : ○○○○
- ◆ 최종발표 : 20 . ○. ○(토)
 - ▷ 최종 선정자는 개인별 통보 및 청소년시설 홈페이지 등에 공지
- ◆ 청소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 www. ○○○○.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은 학교와 학년을 적어주세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소속이 있을 경우만 적어주세요!			
집 주소				
집 전화			E-mail	
손 전화			비상연락처	
활동경력	기간	소속	내용	비고
	※ 특이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 년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자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거주 지역, 메일 주소, 연락처, 소속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 년 3월 31일한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 : _____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보호자 : _____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본인은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활동하고자 본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_____(인) 보호자 _____(인) ○○○○○청소년시설 기관장 귀하				

- 첨부 1. 자기소개서
2. 활동계획서
3. 학교장 추천서(해당자)

청소년운영위원 추천서				
추천 청소년 성명			생년월일	
소 속				
추천 청소년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추 천 인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성 명		이메일	
추천사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 년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자 및 추천인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거주 지역, 메일 주소, 연락처, 소속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 년 3월 31일한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 : _____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보호자 : _____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학생을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청소년시설 기관장 귀하				

보 호 자 동 의 서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19세 미만인 경우 제출)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 청소년이 (시설명) 『제○○기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데 동의합니다.

보호자 성 명 :

주 소 :

청소년과의 관계 :

○○○○. ○○. ○○

보 호 자 : (인)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제출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을 「(시설명)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제〇〇기 위원(20 . 3. 1 ~ 20 . 2. 28)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〇〇〇청소년시설 기관장(직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관리부서 : ○○○청소년수련시설 ○○○부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증빙서류 발급 시까지 활용, 영구보관
소속, 이메일, 연락처, 주소	공지사항, 관련자료 발송, 서비스정보의 제공	
이름, 생년월일, 소속, 이메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위 제공사항은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각종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년 월 일

성 명 : (인)

○○○청소년수련시설 장 귀하

가. 청소년참여예산제

□ 의 의

-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 주체를 청소년으로 확장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하여 배정하는 제도
- * (국정과제 53-3-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및 창의적 역량 강화 :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참여예산제 확대

□ 주요활동

-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 후 정책 및 예산을 제안
- 또래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운영사례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내 ‘청소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 청소년참여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을 검토하여 차년도 예산 반영

나.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 활성화

□ 목 적

- 지역사회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 마련

□ 내 용

- 온라인 청소년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토론회·포럼 등을 활성화
- 사회참여 관련 청소년의 생각을 공유하는 토론 및 발표 대회 마련

Ⅱ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1 청소년 우대 제도

가. 개 요

○ 목 적

-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할인 제고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편의 및 문화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법적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 청소년에게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권고 -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을 위해 청소년증 등 증표 제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 청소년 우대시설의 종류 -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기준

○ 우대 기준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주요내용

- (면제 또는 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
- (할인 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 세제상의 혜택, 업무를 위탁을 받은 자’가 청소년 이용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 할인 권고 가능

나. 우대 시설의 종류

○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선버스, 철도 등

○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 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등

◆ 할인혜택 현황(예시)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능 : 면제~50% 내외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 원 : 면제~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 등

※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 혜택은 다를 수 있음

다. 이용 방법

- 청소년이 시설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가. 개 요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만 18세 이하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대상이 됨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종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 + 선불형 교통카드)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추진경과

- 2003. 9.18 : 청소년증 발급 훈령 제정(문화관광부)
- 2003. 9.25 : 청소년증 카드발급 약정체결(한국조폐공사)
- 2003.10.15 : 청소년증 시범발급 실시(서울, 대전)
- 2004. 1. 1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증 발급 실시
- 2004. 2. 9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근거 마련)
- 2005. 2.10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 2007. 5. 1 : 청소년증 전산화발급 전국실시
- 2008. 8. 1 : 청소년증 발급 알리미 제도 시행
- 2010. 1. 4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발급시스템 변경
- 2011. 6. 1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기관 전국 확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3.12.17 : 청소년증 카드발급 약정체결(여성가족부 - 한국조폐공사)
- 2014. 6.19 : 청소년증 수령방법(등기 또는 신청기관 방문 수령) 선택 가능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4.12.30 : 청소년증 대리인 발급신청 가능 및 신규 발급 신청기관 전국 확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6. 9. 1 : 청소년증 기능확대를 위한 MOU체결(여성가족부 - 한국조폐공사)
- 2017. 1. 11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2017. 4. 19 : 청소년증 분실(철회)신고 기능 개설
- 2017. 7. 14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8. 7. 4. :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한 청소년증 분실 신고,
분실 철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시

다. 기 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라.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및 역할
여성가족부	○ 청소년 우대정책 및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청소년 우대정책 및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보건복지부	○ 청소년증 발급 시스템(행복e음) 운영
지방자치단체	○ 관내 청소년 우대 정책 추진 및 청소년증 관리 ○ 청소년증 발급신청, (재)발급·교부 ○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
한국조폐공사	○ 청소년증 제작 및 발급현황 관리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SMS) 관리
교통카드사업자	○ 전국호환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 교통카드 충전·환불 사후 관리 ○ 교통카드 제작 지원 및 사후 관리

가.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2003. 6. 30.생인 경우

- 만 18세 마지막 날인 2022. 6. 29. 까지 청소년증이 유효함

☞ 만 19세가 되기 직전의 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이지는 하나, 발급소요기간(3주 정도) 및 발급 후 실제 사용 가능기간을 참조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14.12.30. 개정)
신청인	■ 청소년 본인 ※ 단, 만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제7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만 8세 이하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외국인
신청방법	■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서 식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신청인(본인) - 초·중·고 재학 여부 등 선택 ■ 대리신청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교통카드 기능 - 신청서 작성 당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별도로 교통카드 기능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교통카드 기능 추가를 위해서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발급신청 철회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당일(23시까지)에만 가능, 이후 재발급 필요 - 원하는 경우 교통카드명(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하여 기재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청소년증 업무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비 용	■ 무 료 -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우송료(3,820원)는 신청인 부담 - 청소년증 발급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 * 청소년증 발급 단가 : 비교통 4,500원, 교통 5,600원

다. 신청 시 구비서류

청소년 본인	대 리 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 신청인 사진 1매
	■ 대리인 증명 서류 (예시)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청소년의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 청소년증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음

라. 수록사항

청소년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한, 발급일, 발급기관명을 수록

마. 관계기관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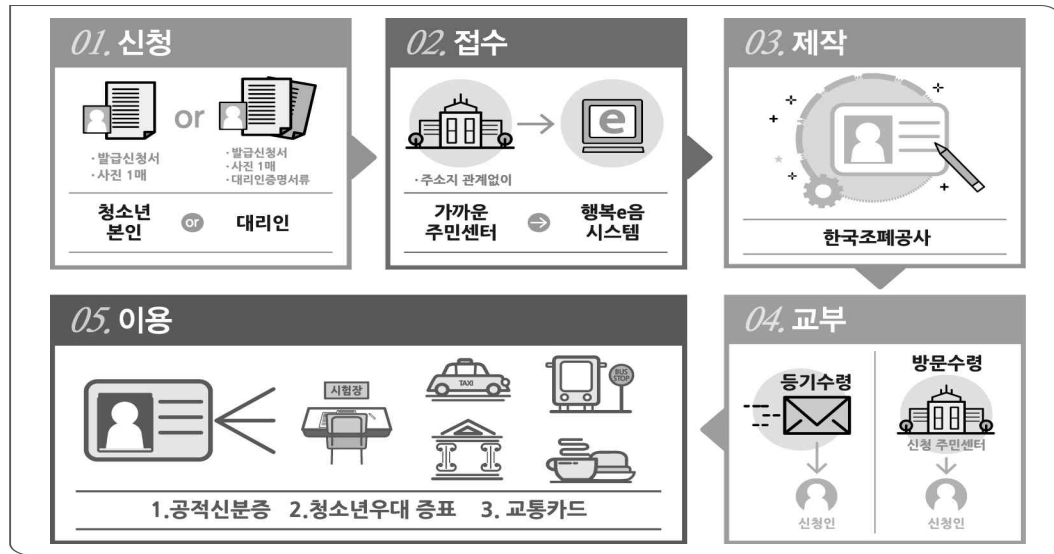
① 주민센터

-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신청서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
- (방문수령 선택 시)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신청기관 방문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확인 후 교부
- (등기수령 선택 시)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요금을 수령하여 접수 즉시 건별로 입금 원칙(편의상 익월 5일까지 입금 가능)
 - * 붙임4 정산방법 참고
 - * 계좌번호/예금주 : 312884-01-006047 / 대전대덕우체국

② 한국조폐공사

- 방문수령인 경우 제작 후 신청지 시·군·구로 청소년증을 배송
- 등기수령인 경우 제작 후 신청인의 등기수령 주소로 배송의뢰(우체국)

바. 발급 절차



(1) 신청

- 청소년 본인은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 단, 만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7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사진 요건(반명함판 3×4cm)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읍·면·동장은 제출받은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진의 규격(3×4cm)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은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본인의 변모,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6개월 이내 사진이라도 이미 청소년증 발급에 사용한 사진은 불가
- 스티커, 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그 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가발 착용,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 등)

- 대리인인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 사진 규정은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 대리 신청 시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상의 서명(또는 인)은 대리인 이름으로 하며, 대리인임을 명시하여야 함

〈대리 신청시 서명방법(예시)〉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11 월 10 일

신청인 (대리인) 홍길동 (서홍길동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 접 수

-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받은 공무원은 신청인(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청소년증 발급대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
 -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지역, 가맹점 등 상세히 안내하고, 반드시 청소년 할인등록을 한 후 이용해야 함을 알려야 함(할인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성인요금으로 결제됨)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함
 - 대리 신청의 경우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공통 : 대리인의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 등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대리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증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음

- 담당 공무원의 착오나 소홀로 타인에게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발급받으려 온 신청인에 대하여는 철저히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청소년증 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 당일 23시까지만 가능하므로 청소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명확히 확인한 후 신청
 - 업무처리 부주의로 동명이인 청소년증 오신청, 개인정보 유출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본인 확인 방법(예시)〉

- 청소년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부착된 사진과 청소년의 얼굴 일치 여부 확인
 - 관계공무원이 해당 청소년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물어보고 행복e음시스템에서 조회한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 보다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상 세대원 이름 또는 생년월일 등 추가 확인
 -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학교선생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등
-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등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확인
 - ※ 공통 : 대리인의 신분증
 - ※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 대리인 신분 및 해당 청소년의 관계가 확인되면 대리인이 제출한 발급신청서와 행복e음시스템 등으로 조회된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의 다른 세대원 이름 또는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확인 가능

- 청소년증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소년증이 교부되기 전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발급 가능
 -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사진 하단에 간인을 날인하고, 투명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전산으로 출력한 확인서도 동일하게 적용)

(3) 제 작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청소년이 신청·접수한 청소년증 관련 자료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한국조폐공사에 제작 의뢰
- 시·군·구청장은 한국조폐공사에 청소년증 제작비용 지급
 - (‘22년 단가) 기본형(비교통) 4,500원, 확대형(교통) 5,600원
 - ※ 청소년증발급기본약정(‘13.12.17) 의거, 매 회계연도 단가계약 체결에 따라 변동 가능
 - 발급일자로부터 1년 이내 교통카드 불량으로 재발급 신청 시 : 한국조폐공사 부담

(4) 교 부

- 시·군·구청장이 청소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청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교부일과 수령자의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며, 행복e음 시스템에서 교부 처리
 - ※ 청소년증 발급대장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만 적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재 항목(수령자, 서명 등)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청소년증 교부 이후 행복e음 시스템에서 교부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분실신고가 진행되지 않는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교부 처리 필요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의 경우, 교통카드 사용 전에 청소년할인 등록을 해야 청소년 요금이 적용됨을 반드시 고지
- 청소년이 읍·면·동장에게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발급된 청소년증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송부
- 읍·면·동장이 청소년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교부인을 날인 하고 신청인에게 교부
 - 시·군·구에서는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청소년증을 인수한 즉시 해당 읍·면·동에 인계
 - 읍·면·동에서는 시·군·구로부터 인수한 청소년증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
 - 청소년증을 교부한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사. 청소년증 재발급

(1) 재발급 사유

- 청소년증의 분실이나 훼손
 - 교통카드 불량
 - 기본형 이용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 개명, 사진 등 기재사항 변경 등
- ※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청소년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 서류 첨부

(2) 재발급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세부 절차는 신규발급 신청 절차와 동일
- 청소년증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증을 첨부하여야 함
-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
단,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아. 분실신고(철회)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단,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고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청소년증 발급 신청인과 동일)
- 절차
 - (신청권자) 분실신고서 작성·제출 → (담당공무원) 행복e음시스템 입력
 - ※ 청소년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별도로 청소년증 분실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만 작성·제출할 수 있음
- 재발급 신청
 - 청소년증 분실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 절차에 따라 진행
- 유의사항
 - 철회 신고 : 분실신고된 건에 한하여 철회신고 가능
 - 분실신고 수정 : 최초 등록한 읍·면·동에서만 가능
 - ※ 분실신고 후 청소년증을 습득한 경우 모든 주민센터에서 철회신고 가능

자. 청소년증 파기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 청소년증을 파기해야 함(시·군·구에서 취합하여 파기)
 -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 기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하는 경우 기존 청소년증
 -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 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청소년증

차. (재)발급 관련 비용 처리

○ 방문수령 시

- 발급비용은 주소지 시·군·구에서 부담
 - ※ 한국조폐공사에서 매월말 기준으로 계산서 청구(건당 발급비: 기본형 4,500원 / 확대형(교통) 5,600원, 우송료: 중량 기준)

○ 등기수령 시 (붙임4 정산방법 참고)

- 발급비용은 주소지 시·군·구 부담, 등기비용은 신청인 부담
 - ※ 발급비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시·군·구에 청구
 - ※ 등기수령 비용(우송료 3,820원)은 신청인에게 수령하여 담당자가 송금 처리
 - ※ 신청인이 등기수령을 선택하였으나 수령인 부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됨
 - ※ 온라인으로 청소년증 재발급을 신청하며 등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등기비용이 우정사업 본부로 바로 이체되므로 별도 정산 불필요
- * 카드 결제 시 등기비용(3,820원)에 카드결제수수료(200원)가 추가로 부과됨

※ 등기수령 선택 시 처리방법(붙임4 참고)

- 신청인이 등기수령 선택 시 신청지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3,820원 수령
- 신청건별 접수 후 즉시 이체 원칙이나 편의상 익월 5일까지 입금 가능
 - * 계좌번호/예금주: 312884-01-006047 / 대전대덕우체국
 - * 송금인명: (읍/면/동)+청소년이름으로 입금 * 7자 이내
 - * 정산문의: 대전대덕우체국 우편영업과(042-930-2430)
- 주소지로 등기수령 비용 이체할 필요 없이 신청지 주민센터에서 모두 처리

카. 행정사항

(1) 사용상의 유의사항을 교부 시 안내(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청소년 할인등록을 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할인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성인요금으로 결제됩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며, 충전금 환불이 불가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청소년증 위·변조, 부정사용 등 인지 시(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준용)

-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가별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그 직무는 공무원의 처리하는 직무만을 뜻하며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3) 학교 밖 청소년 연계

- 신청인이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의 ‘초·중·고 재학하지 않음’에 체크한 경우
 - 정보연계 관련 절차는 2022년 청소년사업 안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별표 4] 참조
 -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유선 1388, <http://www.kdream.or.kr>)에 연계
- * 2022년 청소년사업 안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붙임 3] 서식

(4) 기 타

- 청소년증 발급시스템
 - 업무권한 부여절차 : (시·도, 시·군·구) 청소년 업무 주무과장 → 시·군·구 업무 담당자 및 읍·면·동장 →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발급은 「행복e음」 또는 워드(한글, MS워드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력 및 출력 가능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사진 하단에 간인을 날인하고, 투명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전산으로 출력한 확인서도 동일하게 적용)

○ 청소년증 단체발급

- 청소년증 개별 신청·수령 등에 따른 번거로움 완화를 위해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①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수요를 조사하여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추진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가 준비사항, 신청 가능 여부 등 판단 필요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학교 밀집 지역의 경우 특정 주민센터에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②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하여 주민센터에 제출

※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청소년의 의사, 본인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시 공문 등 첨부(지자체에 따라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확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등록 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

※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변경된 주소 기재 요청 시

- 행복e음시스템 등을 통해 주소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청소년증 뒷면에 주소변경일자, 변경된 주소 등 기재

가. 목적

-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통카드 기능을 청소년증에 추가하여 대중교통 및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용 활성화

나. 유의사항

- 교통카드 사용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3개 교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 교통카드 수령 후 반드시 할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요금으로 결제됨
- 교통카드 이용 전 소득공제 신청해야 함. 소급하여 공제 불가
- 청소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부.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며, 충전금 환불이 불가함

구 분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사용 지역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사용 불가능 지역		- 경북 (군위, 봉화, 영덕, 영양, 청송) - 전남(진도)	- 버스(춘천, 통영, 거제,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경전철(김해)	- 경남(거창,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하동, 함양, 합천) *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일부 지역은 추후사용가능
사 용 처	교 통	- 버스, 고속버스(김해시 제외), 시티투어버스(서울·제주), 공항리무진(인천국제공항↔서울/경기, 인천권 운행) - 지하철(김해 경전철제외) - 기차(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청춘, 누리로 등) - 공항철도 - 택시(서울, 울산)	- 버스(불가능 지역 외) - 지하철(서울 1~9호선, 부산 1~4호선, 대구 1~3호선, 광주 1호선, 한국철도공사 국철구간, 코레일공항철도(서울역~인천국제공항), 인천메트로, 신분당선) - 택시(카드사용 표시 캡이 장착된 대구법인 및 개인택시)	- 버스(전국교통카드 통용지역 시내·마을버스, 경기·충남·경남 시외버스, 전국시외버스 KSCC 운영지역) - 지하철(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광주) - 택시(전국 캐시비 서비스 가맹 택시)

구 분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가 맹 점		- 편의점(emart24, story way) - 유통점(KTX 열차 내 유인이동 판매대, 역사 내 카페스토리 웨이), 유통전문점(일부 프랜차이즈 매장 제외) - 코레일 역사 내 브랜드매장(카페, 음식점, 잡화 등 600여개) - 제휴가맹(레일플러스 스티커 부착 제휴가맹점) - 전국 우리은행, 농협, 롯데(세븐일레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등)	- 편의점(전국 emart24, 대구·경북지역 GS25, 세븐일레븐 대구·경북 전 지점)	- 편의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미니스톱, GS25) - 유통점(롯데마트, 롯데슈퍼, 롬스) - 엔터테인먼트(롯데시네마, 메가박스) - 식음료(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크리스피크림도넛, 파리바게트(롯데계열),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파스쿠치, 잠바주스, 빗은, 오봉도시락, 밀크밥버거, 커피앳웍스(SPC계열)) - 기타(주차장, 자판기, 구내식당, 사직야구장, 음식물종량제 등)
	충전시설	- 철도역(전국 코레일 기차역) - 지하철 내 충전기 및 발매기 - 편의점(storyway, emart24) - 우리은행·농협·롯데 ATM * 농협 ATM은 농협계좌이체 충전만 가능 - 모바일(레일플러스 APP) * 안드로이드 2.2이상/ IOS 5.0이상	- 대구지하철 전 역사의 역무실, 무인충전기 - 대구은행ATM, 대구도시철도 역사, 가두판매점(대구) - 편의점 (emart24-전국, GS25, 세븐일레븐-대구·경북) - 교통카드 판매/충전소 마크가 부착된 토크판매소 및 가맹점 - 모바일(대구은행 아이M뱅크 APP, 스마트터치APP)	- 편의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미니스톱, GS25, emart24) - 수도권/부산지하철 무인충전기 (대구지하철 무인충전기X) - 전국 캐시비 충전소, 롯데슈퍼(일부), 롯데ATM(CD기 제외) - 신한은행, 우리은행 ATM : 현금·계좌 충전 - 경남은행 ATM : 제휴 발행된 캐시비카드만 충전가능 - 롯데월드 어드벤처, 롬스
		※ 소급하여 소득공제 신청 불가하므로 사전에 소득공제 신청 필요		
소득공제 신청		- 홈페이지, 어플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 메뉴 → 할인카드 등록 → 소득공제 체크 후 개인정보 입력	- 홈페이지 회원 및 비회원 등록 절차 중 소득공제 신청여부 선택가능	- 신규회원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소득공제 신청 여부 선택 - 기존회원 : [내 정보수정] 통해 신청 가능
할인등록		- 홈페이지 또는 R+어플 → 카드 등록 → 할인카드등록 → 카드번호입력 및 생년월일 입력 ※ 최초 사용(결제) 후 10일 내 반드시 할인등록 필요 (미등록시 일반요금 전환) ※ 시스템 할인등록기간(최대 5일) 동안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은 청소년 요금 징구 필요	- 홈페이지 → 청소년·어린이 할인카드 등록 → 회원 혹은 비회원 등록 선택 → 본인인증 → 교통카드번호 입력 → 등록완료 ※ 최초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카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일 경과일로부터 성인요금 차감 ※ 청소년(만 13~18세) 등록 시 유의사항	- 세븐일레븐 / CU / GS25편의점에서 생년월일 등록 → 할인 요금 적용(통합권종카드 표기 카드) ※ 내역조회 및 소득공제 필요 시 홈페이지 가입 후 카드등록 및 소득공제 신청

구 분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 등록일 기준 최대 +3일 이후 청소년요금 적용 - 등록일 기준 3일내 대중교통 이용 시, 단말기 조작 필요 (지하철 불가) ※ 카드 허위등록 및 악용으로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카드 등록자에게 있으며,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승차구간 운임요금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	
환불 신청	※ 분실/도난 시 환불 불가		
	- 전국 코레일 역사(전국기차역, 코레일운영전철), 우리은행ATM(계좌보유시) ※ 20만원 이하에 한하여 현장에서 잔액 환불 가능(환불수수료 500원) ※ 20만원 초과 및 훼손카드는 역 방문 반환접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반환접수 가능	- 전국 대구은행, 전국 emart24, 대구·경북지역 GS25 ※ 카드실물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카드 고장 및 훼손의 경우 제휴 편의점(GS25, emart24)에서만 가능하며, 편의점 내 비치된 환불 봉투를 통해 접수가능	- 캐시비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 주요 편의점(일부 매장 제외) ※ 2만원 미만에 한하여 잔액 환불 가능 (환불수수료500원) ※ 신한은행 ATM, 우리은행 ATM : 잔액 50만원 이하(계좌 보유시) 환불 가능(환불수수료 500원) ※ 홈페이지 → 카드잔액 환불 → 환불 봉투 온라인 다운로드를 통해 직접 환불접수 가능
특별혜택	- 철도승차권 구입 시 KTX 마일리지 1% 추가 적립	-	- 가맹점별 할인 프로모션 시행 여부에 따라 상이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이벤트 확인
콜센터	1544-7788(내선 5)	080-427-2342	1644-0006
홈페이지	http://railplus.korail.com	http://www.dgbupay.com	http://www.cashbee.co.kr
사업자명	코레일네트웍스(주)	(주)DGB유페이	(주)이비카드

* 제휴 가맹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통카드사 홈페이지 참조

* 위 표에 명시된 사용처는 교통카드 충전액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을 의미하며, 결제 시 청소년 할인 적용 여부와 별개임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원하는 경우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의 교통카드 기능 ‘신청’에 체크하고 3개 교통카드 중 원하는 교통카드명 기재

※ **사용가능지역, 사용처** 등 ‘나. 교통카드별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여 청소년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필요

※ **카드종류별 사용불가 지역**을 확인하여 교통카드 기능 추가 여부 등 안내

-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청소년증을 원하는 경우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의 교통카드 기능 ‘미신청’에 체크

다. 환불 신청

- 도난/분실
 - 선불형 교통카드 도난/분실은 현금 분실과 동일하므로, 교통카드사 정책에 따라 잔액 환불처리 불가능(카드 뒷면 이용안내에 표기)
- 정상카드 환불
 - 외형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칩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 카드로 이사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잔액을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
 - ‘나. 교통카드별 주요내용’의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이 신청
 - 환불수수료 발생
 - ※ 자세한 내용은 교통카드사별 홈페이지 및 안내전화 참고

라. 칩 불량카드 환불 처리

※ 외형 훼손 여부와 관계 없이 칩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카드 환불

- 개인정보가 포함된 청소년증 교통카드의 특성상 주민센터에서 처리 원칙

①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청소년증 앞면 발급일자 기준)인 경우

청소년증 절단	서식 작성 및 절단카드첨부	처 리
		한국조폐공사 * 재발급 시 확인 교통카드사 * 충전 중 환불(10일정도 소요)
(담당 공무원) 청소년증 뒷면의 교통카드번호 및 부분의 절단선을 따라 절단 ※ 실제 청소년증에는 절단선 표시 없음	(신청인) 환불신청서 작성, 제출 (담당 공무원) - 절단된 상단은 한국조폐공사 환불 서식에 부착하여 봉투에 넣음 - 절단된 하단은 환불신청서와 함께 환불 봉투에 넣음 ※ 서식은 교통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청소년 사업안내 서식6(p.173~180) 출력 ※ 봉투 서식은 오려서 규격봉투에 풀칠 하여 부착	(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재발급 (교통카드사) - 환불 처리 ※ 전산 확인 후 환불까지 10일정도 소요

-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는 '교통카드 불량'으로 체크 후 처리
- 재발급비 처리 : 칩 불량 청소년증(1년 이내) 재발급비는 신청 시·군·구청에
청구되지 않음
- ※ 청소년증 상단은 반드시 한국조폐공사로 반납해야하며, 우송료는 기존과 동일

② 발급한 날부터 1년이 초과(청소년증 앞면 발급일자 기준)된 경우

- 청소년증 절단 후 하단만 교통카드사로 송부, 상단은 주민센터에서 파기
-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는 '교통카드 불량'으로 체크 후 처리
- 발급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이므로 발급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절단 방법 등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와 동일

〈 일반 환불처에서 칩 불량 청소년증을 교통카드사로 잘못 발송한 경우 〉

- 청소년증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속한 처리 필요
 - 해당 청소년증이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교통카드사는 청소년증 절단
후 환불신청서에 따른 환불처리 및 한국조폐공사로 상단 전송
 - 발급한 날부터 1년이 초과된 경우 : 교통카드사는 청소년증 절단 후 환불신청서에
따른 환불처리 및 주소지 주민센터로 상단 전송

서식번호	서 식 명
서식 제1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서식 제2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서식 제3호	청소년증 분실신고 및 철회신청서
서식 제4호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 제5호	청소년증
서식 제6호	환불서식(환불신청서, 환불봉투)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용)

[서식 제1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14.>

(앞쪽)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초·중·고 재학 중 []초·중·고 재학하지 않음 []고등학교 졸업		

신청내용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분실 []훼손 []기타)	
	수령방법	[]방문 []등기우편	사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교통카드 기능	[]신청 : 종류()	[]신청하지 않음	

대리 신청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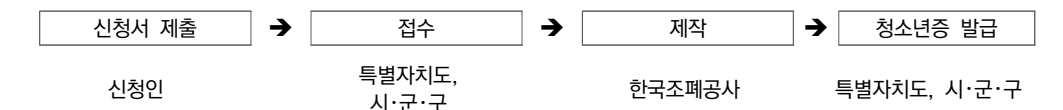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3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신청인	
첨부서류	1. 사진 1매 2.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 청소년증 발급 및 제도개선,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처리 등
- 이용기간 : 19세가 된 바로 전달까지
- 제공기관 :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기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1. 청소년증의 (재)발급 신청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재)발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청소년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6.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최초 발송한 날부터 5일 이내에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청소년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청소년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7.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청소년증을 찾아가기 바라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청소년증은 파기됩니다.
8. “교통카드 기능”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카드의 종류를 적습니다.
9.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은 이후 분실한 청소년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되찾은 청소년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서식 제2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 진 (3cm×4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간 인					

발급신청일자		발급번호		유효기간	
--------	--	------	--	------	--

위 사람은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 인

유의사항

※ 발급 시 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본 서식에 사진을 붙인 후 발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발급번호·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 이용자 유의사항

1. 이 확인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증을 대신 하여 임시로 활용하는 증명서이며, 청소년증 발급통보를 받으면 청소년증을 별도로 수령해야 합니다.
2.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까지이며 청소년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증 발급기관(☎ -)으로 문의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3호]

청소년증 []분실신고서 []철회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고(철회)인	성명	분실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분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철회)내용	분실일자	장소
	분실(철회) 사유	

청소년증의 습득	년	월	일
----------	---	---	---

위와 같이 청소년증의 분실을 신고(분실신고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철회)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청소년증 분실신고만 할 때 사용하시고,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분실자가 직접 신고할 때에는 ‘신고(철회)인’란은 적지 않으며, “청소년증의 습득”란은 담당 공무원이 기재하는 난이므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분실된 청소년증을 되찾았을 때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철회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증 발급대상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서식 제5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14.>

(앞쪽)

청 소 년 증	
사진 (2.5cm × 3cm)	성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주소 : _____ 유효기한 : _____
〇〇시(도) 〇〇시장(군수·구청장) 직인	

86mm × 54mm(플라스틱(PVC))

(뒤쪽)

연월일	주소 변동 사항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서식 제6호]

■ 환불서식(환불신청서, 환불봉투)

○ 레일플러스 - 환불신청서


환 환 신 청 서 (반드시 카드와 본 신청서를 봉투에 동봉해주세요.)

☞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항목	고객명, 연락처, 카드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본인확인, 부정이용방지, 환불서비스 처리에 대한 안내, 고객과의 소통
보유 및 이용기간	반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년, 반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1년

※ 코레일 및 코레일네트웍스㈜는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여 보유합니다.
반환 신청인은 상기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제한됩니다.

☐ 동의 ☐ 동의하지않음 성 명 : _____ (인)

☞ 환불 신청서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카드재교부 ☐ 예 ☐ 아니오 (불량카드에 한함)
Rail+ 카드 종류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Rail+ 카드 번호
신 청 인	고객명	은 행 명
	연락처	예 금 주
		계좌번호

▶ 연락처를 통해 반환관련 서비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환사유

☐ 카드 인식이 안되는 경우
(사용처 및 차량번호 :)

☐ 충전이 안되는 경우(충전처명 :)

☐ 외형이 훼손 및 파손된 경우

주의사항

카드 상태를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접수된 카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용 후 1년 이내 불량카드는 카드재교부 또는 카드 값을 지급해 드립니다.
- 파손카드는 구멍뚫림, 구김, 휘어짐, 찍힘, 태움, 조각남, 깨짐, 갈라짐, 카드번호 지워짐
- 침손상, 안테나 손상 등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된 Rail+카드입니다.
- 충전기에서 잔액 인식이 가능한 경우 5만원 이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환 환 보 관 중 (반환금이 입금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항목	고객명, 연락처, 카드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본인확인, 부정이용방지, 환불서비스 처리에 대한 안내, 고객과의 소통
보유 및 이용기간	반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년, 반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1년

※ 코레일 및 코레일네트웍스㈜는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여 보유합니다.
반환 신청인은 상기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제한됩니다.

☐ 동의 ☐ 동의하지않음 성 명 : _____ (인)

☞ 환불 보관중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카드재교부 ☐ 예 ☐ 아니오 (불량카드에 한함)
Rail+ 카드 종류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Rail+ 카드 번호
신 청 인	고객명	은 행 명
	연락처	예 금 주
		계좌번호

▶ 연락처를 통해 반환관련 서비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환사유

☐ 카드 인식이 안되는 경우
(사용처 및 차량번호 :)

☐ 충전이 안되는 경우(충전처명 :)

☐ 외형이 훼손 및 파손된 경우

주의사항

카드 상태를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접수된 카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용 후 1년 이내 불량카드는 카드재교부 또는 카드 값을 지급해 드립니다.
- 파손카드는 구멍뚫림, 구김, 휘어짐, 찍힘, 태움, 조각남, 깨짐, 갈라짐, 카드번호 지워짐
- 침손상, 안테나 손상 등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된 Rail+카드입니다.
- 충전기에서 잔액 인식이 가능한 경우 5만원 이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 환불 신청서 작성

[반환 보관중_고객 보관용]
절취하여 반환금 입금 완료까지 고객 보관.
[반환 신청서, 본사 송부용]
카드와 동봉하여 봉투를 우체통에 투입

2 반환 접수 및 처리

봉투가 접수되는 시점에서 입금완료까지
약 14일 소요됩니다.

3 반환 완료

규정에 의해 절차대로 처리됩니다.
반환 봉투로 접수된 카드는 전량 폐기하여 반환되지 않습니다.
*타 반환 관련 문의사항은 하단에 기재된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railplus.korail.com>

고객센터 1544-7788 (내선 3번을 누르세요)

○ 레일플러스 - 환불봉투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6.2.22 ~ 무기한
서울중앙체국
제41527호

물어볼 사람

전국노인복지회
노인복지회
Rail+

서울시 중구 청파로 426 철도빌딩 6층 611호
레일플러스카드 반환 담당자 앞

04509

보내는 사람

[illegible]

○ 원패스 - 환불신청서

DGB유펀이 환불 신청서

(우편 발송용)

■ 카드 실물이 등보되지 않은 환불 신청은 처리가 불가 합니다.

■ 신청 정보

카드번호	필수 기재	예상잔액	
카드상태	☐ 인식불가 ☐ 파손 ☐ 일부 교통 사용 불가 ☐ 기타()		
성명		연락처	
환불계좌	아래 기재하신 환불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환불 및 카드 재충전 환불 불가) • 은행: _____ • 계좌번호: _____ • 예금주: _____		
본인은 환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환불 규정 안내를 숙지 하였으며 이에 동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_____ (인/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본인확인, 환불처리, 환불관련 고객민원처리, 카드반송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카드번호, 고객명, 연락처, 은행명,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처리 (단, 민원 분쟁 소지로 인해 아래 기간 동안 보존)
 - 보존기간 : 환불금액 1만원 이하일 경우 1년, 1만원 초과일 경우 5년
 - 보존사유 : 환불금액 정산 및 고객민원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소송 등 기타 필요한 경우 대비
 - 파기절차 : 보존기간 만료 시 카드실물 및 신청서는 DGB유펀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 처리

본 신청인은 작성한 개인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에 동의합니다.
본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_____ (인/서명)

절 취 선

DGB유펀이 환불 신청서

(고객보관용)

■ 환불 완료 시까지 반드시 보관 바랍니다.

■ 신청 정보

카드번호	필수 기재	발송일자	20 년 월 일
카드상태	☐ 인식불가 ☐ 파손 ☐ 일부 교통 사용 불가 ☐ 기타()		

■ 주의사항 및 환불규정 안내

- 분실, 도난, 습득카드는 환불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원패스카드 외 타사카드는 접수 시 기재하신 주소로 반송 처리됩니다.
- 고객보관용 신청서는 환불이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보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배송 및 기타 문제 발생 시 고객보관용 신청서가 없을 시 환불처리가 불가 합니다.)
- 현금환불 및 카드 재충전 환불은 불가 합니다.
- 기입하신 예상잔액과 실제 환불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환불신청 접수 후 D+10 영업일 이내 등록된 환불계좌로 카드 잔액 환불처리됩니다.

■ 홈페이지 및 문의처 안내

- 홈페이지 : www.dgbupay.com
- 고객센터 : 080-427-2342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원패스 - 환불봉투

■ DGB유페이 환불신청 봉투 라벨 양식

DGB유페이 

4203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범어동 223-5 동일빌딩 9층

캐시비 환불 접수 안내 **이비카드** | **MYBI** | **하나로카드**

01 환불 내용 확인 고장상태(증상) 및 실물 외관 확인 * 카드 실물 미 동봉 시 발송 주소지로 반송됩니다.	02 접수증 작성 접수증 작성 후 동봉용 / 보관용 분리 * 연락처 및 입금(계좌)정보 미 기재 시 환불 진행되지 않습니다.	03 봉투 동봉 카드 실물 + 환불 접수증 1부 동봉 * 환불접수증(보관용)은 환불 완료일 까지 꼭 보관하여 주십시오.	04 우편 발송 가까운 우체국 또는 우체통에 봉투 투입 * 본사 도착까지 최소3일에서 최대 10일이 소요(평일 기준) 됩니다.	05 환불 완료 환불봉투 도착일로부터 5일내(영업일 기준) 접수증에 기재된 계좌로 잔액 입금.
--	--	--	---	--

* 주의 사항

1. 정상 · 파손카드 및 특수 제작된 카드(판촉용, 학생증 등)는 잔액만 지급합니다.(품질보증 대상 제외)
2. 고장카드의 보증기간은 최초 출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분실, 도난, 습득 카드는 환불 접수 되지 않습니다.
4. 캐시비, 이비카드, 마이비, 하나로카드 외 타사카드는 접수 시 기재하신 주소로 반송됩니다.

● **환불규정** (환불규정은 각 사의 자체 환불규정으로 고객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변경 시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고지됩니다.)

환불조건	카드명칭	보증기간	처리방법	환불방법
고장카드 외형상 정상이나 단말기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	캐시비카드 (구)이비카드/마이비/부산하나로카드	2년 1년	카드구입비용 + 카드잔액	계좌입금 *반론 접수 시 현금 환불 불가
파손카드 고의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파손 (화아진, 일부 절렬, 금, 노후)	캐시비/(구)이비카드/마이비/부산하나로카드	없음	카드잔액	
정상카드	캐시비/(구)이비카드/마이비/부산하나로카드	없음	카드잔액	

●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수집 및 이용 목적 : 본인확인, 환불 처리, 카드 반송, 환불관련 고객민원처리, 환불 상태 SMS발송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고객명, 연락처, 카드번호, 예금주, 입금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이용목적 달성 이후 민원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 명시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및 내용 : 본사 도착일로부터 1년(환불접수증, 카드실물)

* 보존사유 : 환불금액 정산,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소송이나 민원 분쟁 등 기타 필요한 경우 대비

* 파기절차 : 보존기간이 끝난 카드실물과 환불접수증은 개인정보내부방침 파기절차에 의해 소각처리 합니다.

본인은 작성한 개인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보유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보유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환불이 제한됩니다.

□ 동의

□ 미동의

서명 :

(자필서명)

(인)

● 환불 신청 정보

카드사	☐ 캐시비	☐ 이비카드	☐ 마이비	☐ 부산하나로카드	* 카드실물을 접수증과 함께 꼭 동봉하여 주세요. (실물 없을 시 환불 불가)
카드번호	필수기재			예상잔액	
카드상태	☐ 인식안됨 ☐ 파손(화아진, 금, 노후, 편침 등) ☐ 일부 교통 사용 불가(오류메세지, 과다차감) ☐ 정상 ☐ 기타()			홈페이지 등록여부 ☐ 등록(성명 :) ☐ 미등록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용자 성명을 기재하세요.
신청인				연락처	핸드폰 번호 기재 시 환불 진행 상황을 SMS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계좌	환불금은 아래 기재하신 환불 계좌로 입금 됩니다. (현금환불, 새카드 재충전 환불 불가) · 은행 : _____ · 계좌번호 : _____ · 예금주 : _____				
본인은 환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환불 규정 안내를 숙지 하였으며 이에 동의, 환불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 (자필서명) (인)					

www.cashbee.co.kr www.mybi.co.kr www.busanhanaro.com
(캐시비) (마이비) (하나로)

고객센터 (카드 및 기타 문의) 1588-8990, 1644-0006, 1577-1220
통화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후오6시 (공휴일, 토, 일 제외)

[환불접수증 - 동봉용] 절취후 본 용지는 카드와 같이 봉투에 넣어주세요

[환불접수증 - 고객보관용] 환불금 입금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꼭 보관해주세요.

○ 캐시비 - 환불봉투

캐시비 웹 환불 신청서

(봉투 부착용 우편 표지)

※ 캐시비 환불봉투 표지 부착 안내

- 하단 봉투 표지는 일회성이기에 사용 후 캐시비(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표지, 기호, 실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운영을 도와드립니다.)
- 캐시비(주)로 반환하는 봉투에 캐시비(주) 로고, 기호, 실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운영을 도와드립니다.
- 캐시비(주)로 반환하는 봉투에 캐시비(주) 로고, 기호, 실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운영을 도와드립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지 기재 시 원상 반환 가능)

□□□□ - □□□□

무선시계용대구 권역번호 60

세팅 150원 11종 1112

4 8 0 5 9

캐시비(주)로 반환하는 봉투에 캐시비(주) 로고, 기호, 실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운영을 도와드립니다.



■ 환불봉투(조폐공사)

보내는 사람 (우) _____ _____ 받는 사람 (우)34037 대전 유성구 테크노 10로 7 (탑림동) 한국조폐 공사 ID본부 카드부 청소년증 담당자
--



[조폐공사_카드반납]

칩불량카드 실물 반납(한국조폐공사)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활동정보(www.youth.go.kr)	
연월일	주소변경

교통카드 이용안내

- 본 청소년들은 대중교통과 교통지원을 위하여 기능한 청소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388-211(청소년)로 신청한 후 발급
- 청소년이 사망하거나/정신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사망한 경우, 본인에게 불특정 다인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 청소년이 본인에게 불특정 다인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기능한 청소년 교통카드를, 본인 또는 본인에게 불특정 다인으로부터
- 청소년이 본인에게 불특정 다인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기능한 청소년 교통카드를, 본인 또는 본인에게 불특정 다인으로부터

- 발급일(앞면) 기준 1년 이내 카드
- 카드 실물 투명테이프 부착(교통카드번호 윗부분)

[서식 제7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만 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초·중·고 재학 및 졸업 여부, 발급 신청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교통카드 기능 신청 여부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소년증 발급 관련 본인 확인 및 제작, 수령 등에 관한 업무
- 청소년증 제도개선,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처리 등
- 기타 청소년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통계 자료 생산 등 업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청소년증 발급 후 해당 청소년이 만 19세가 된 바로 전날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내용은 청소년증 발급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절차
- 청소년증 적정 이용 관리업무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본 기관은 청소년증 발급 지원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및 등기 발송 업무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 본 정보는 청소년증 발급 및 복지지원을 위해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현황(2003~2021)

(단위 : 건)

구분	2003년 (시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515	11,848	14,120	12,478	24,455	30,265	33,656	36,244	40,898
서울	436	1,515	1,781	4,355	6,975	8,251	8,480	8,949	9,992
부산	-	381	672	971	1,724	2,198	2,492	2,399	2,868
대구	-	181	214	580	1,754	1,905	2,212	2,069	2,304
인천	-	751	353	640	1,676	2,464	2,216	2,527	2,642
광주	-	282	61	110	318	416	509	576	813
대전	66	103	287	304	607	853	917	944	885
울산	-	86	105	220	640	844	897	950	1,060
세종	-	-	-	-	-	-	-	-	-
경기	-	4,381	1,966	2,894	6,243	7,477	8,863	9,892	11,007
강원	13	148	85	341	428	566	835	908	1,071
충북	-	648	995	350	479	614	845	913	1,129
충남	-	311	4,275	368	855	720	765	889	1,205
전북	-	1,266	450	164	498	1,027	1,066	1,226	1,437
전남	-	244	175	141	390	499	616	624	718
경북	-	521	1,597	486	810	1,048	1,229	1,369	1,438
경남	-	983	677	418	893	1,165	1,440	1,738	2,008
제주	-	47	427	136	165	218	274	271	321

(단위 :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43,543	49,438	50,663	93,536	114,250	188,562	165,408	142,502	182,644	141,169
서울	10,633	10,624	9,779	9,619	9,786	13,609	11,395	13,122	15,155	13,856
부산	2,944	3,202	3,174	3,899	6,326	11,890	6,432	11,704	9,332	9,798
대구	2,216	2,573	3,006	3,406	2,939	8,616	9,225	10,514	6,291	4,820
인천	2,916	3,012	3,126	3,828	3,223	5,180	4,001	4,683	7,801	5,261
광주	1,025	1,215	1,561	1,899	1,779	6,037	8,891	4,399	5,487	4,521
대전	1,044	1,446	1,447	2,403	1,636	4,646	5,913	4,887	6,779	6,448
울산	1,180	1,590	1,243	2,490	1,424	3,791	4,125	1,964	2,071	1,666
세종	32	110	99	473	1,434	2,460	3,381	2,918	3,798	3,160
경기	11,232	12,555	12,737	24,187	39,839	63,327	34,855	38,722	60,701	47,601
강원	1,173	1,773	1,704	3,585	5,899	9,626	8,921	4,840	6,572	3,824
충북	1,206	1,362	1,306	2,519	1,771	3,631	2,648	3,276	6,646	5,278
충남	1,244	1,733	1,701	3,488	5,008	9,181	6,290	4,808	8,617	8,100
전북	1,506	1,776	1,942	3,407	4,630	9,203	11,406	8,428	8,280	5,571
전남	896	1,130	1,362	4,143	5,682	7,248	11,769	5,272	8,963	5,238
경북	1,663	1,935	2,334	14,179	10,816	12,676	17,885	12,220	10,494	6,259
경남	2,326	2,906	3,640	8,253	10,595	14,134	15,475	8,781	13,621	7,652
제주	307	496	502	1,758	1,463	3,307	2,796	1,964	2,036	2,116

* 출처 : 한국조폐공사(2003~2009)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10~)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 시행 안내

1. 목 적

청소년증 신청 접수 후 발급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청소년 편의 증진 제고(한국조폐공사 개발)

2. 서비스 대상 : 청소년증 신청인 중 알리미 서비스를 원하는 자

3. 시행일자 : 2008. 8. 1.

4. 서비스 내용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SMS) 2회 발송
 -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 실시간 조회사이트(www.komsco.com) 설치·운영
(조폐공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카드발급조회)

〈문자메시지 예시〉

① 접수 직후

「○○○님의 청소년증, ○월○일 한국조폐공사에 접수됨
www.komsco.com 검색가능」

② 배송 직후

「○○○님의 청소년증, ○월○일 시군구로 발송함
5일 후 수령가능 - 한국조폐공사」

5. 협조사항

- 청소년증 신청자가 발급 진행 문자메시지(SMS) 수신을 원할 경우
 - 읍·면·동 청소년증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 / 청소년증 신청 및 교부 내역등록」의 신청자정보(HP)에 신청자 휴대폰 번호 입력이 필요함
- 기타 사항은 한국조폐공사 콜 센터(1577-4321) 문의

□ 정산 방법

- 입금기한 : 접수 후 즉시 입금 원칙 * 편의상 익월 5일까지 입금 가능
- 지정계좌 : 우체국 312884-01-006047 (예금주 : 대전대덕우체국장)
- 입금자명 : (읍/면/동)+청소년이름으로 입금 * 7자 이내
 - ※ (예시) 문평동(홍길동), 중앙동김나래, 신림10동김철수
 - * 동명이 긴 경우에도 7자까지 입력하면 우체국 담당자가 최대한 확인 및 연락 예정

〈입금자명 오류발생 주요 사례〉

연번	입금자명	처리불가 사유	비 고
1	충북 충주시, 광주 북구	정확한 접수동 확인 불가	회계부서 입금시 동명이 생략되므로 우체국 담당자와 유선협의 필요 (☎ 042-930-2412)
2	중앙동, 태화동	중복지역 다수 존재	
3	홍길동 (주민센터장, 담당자 이름 등)	접수기관 확인 불가	

- 입금단위 : 신청건별 입금 * 신청자 확인을 위해 건별 입금 필요
 - ※ (예시) 중앙동에서 3명(김영희, 이철수, 박진희)이 등기수령을 신청한 경우
 - 중앙동(김영희)/ 중앙동(이철수)/ 중앙동(박진희)로 각각 3,820원씩 3건 입금
 - * 온라인(복지로)으로 청소년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등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카드결제 대금이 우정사업본부로 바로 이체되므로 별도 정산 불필요
 - ☎ 카드 결제 시 등기비용(3,820원)에 카드결제수수료(200원)가 추가로 부과됨

□ 유의사항

- 회계부서에서 일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명이 누락되어 확인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읍/면/동)+청소년이름으로 입금되도록 처리
- 입금자명 정정이 어려운 경우 입금 후 우체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금 내역 등 확인 필요 (대전대덕우체국 영업과 ☎042-930-2412)
 - ※ (예시) 진주시 ○○동 회계부서 입금 시 '경남 진주시'만 표기되어 확인 불가
- 등기비용 처리 과정에서 청소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담당자 인사 이동 또는 부재 시 인수인계 및 대무자 지정 등 철저
- 우편요금 납부 지연 시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정산기한 준수
- 등기비용 정산 후 별도 공문 발송 불필요

4 PART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 I.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II.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 III.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
- IV.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 V.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I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1 목 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1-2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1-3 지원 대상

- 대상 : 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대상구분		지원대상
일반형	우선순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대상	학교(교장·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주말형	지원대상	주말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지원대상 구분 없음)

* 지역 수요에 따라 (초등) 예비 초4(초3)/ (중등) 예비 중1(초6) 참여 가능(10월부터)

1-4 지원 내역

○ 운영시간 : 방과후~21시, 주 5~6일 운영

○ 운영기간 : 1월~12월

운영모형	지 원 내 역
일반형	·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주중 및 토요일 운영 권장) · 주중 활동(월~금) : 1주 20시수 이상(급식 5시수 의무, 그 외 프로그램의 편성은 기관 자율 편성) · 주말활동(토요일) : 분기별 1회 이상(급식포함 5시수 이상)
주말형	· 일 5시수, 주말 1~2일(토~일) 운영(연간 80일 이상) · 학교 방학기간 중 평일 운영 가능

* 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1-5 2022년 예산

□ 사업예산 : 29,017백만원 *085-2200-2251-432(청소년육성기금, 국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하 '방과후아카데미') 350개소 운영 지원

- 1개소당(40명 기준) 지원 예산 : 164.4백만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

* 국고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2-1

추진방향 및 추진경과

□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 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방과 후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의 인식 확산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 사회의 참여 확대 및 연계체계 구축
-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물품지원 및 후원, 자원봉사, 재능 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

□ 추진경과

연 도	내 용
2005년	○ 청소년위원회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범사업 46개소 실시(20억)
2006년	○ 전국 지역별 운영 도입(46개소 → 100개소)
2007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50개소 확대 지원
2008년	○ 농산어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운영 ○ 운영개소수 확대(150개소 → 185개소)
2009년	○ 실시 개소수 축소 운영 178개소 지원 ※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중단 제도 도입
2010년	○ 사업평가를 통한 부실 운영 아카데미 폐쇄조치 등 161개소 지원
2011년	○ 청소년 기본법 개정(추진 근거 마련) ○ 신규모형(특별지원: 장애, 다문화) 개발 및 시범운영 ○ 운영개소수 확대(161개소 → 200개소)
2012년	○ 200개소 지원

연 도	내 용
2013년	○ 200개소 지원
2014년	○ 200개소 지원 ○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우수운영기관 시상(5개기관)
2015년	○ 조손가정 및 다문화가정, 3자녀이상 가정 청소년으로 참가대상 확대 ○ 국무조정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조정회의('15. 4월) - 방과후아카데미는 중학생 중심으로 특화(사업간 연계·범위 조정) ○ 운영전담인력 인건비 인상(전년대비 3%)
2016년	○ 중학교 대상학년 확대(중학교 3학년 포함) ○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 청소년 지원
2017년	○ 250개소 지원 ○ 종합평가 주기 변경(매년 → 격년)
2018년	○ 260개소 지원('창의융합 역량강화 프로그램' 10개소 시범운영) ○ 범정부 '온종일 돌봄 구축체계 실행계획'('18.4월) 중 '마을돌봄' 시책에 포함 ('22년까지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초등생 1만명 추가지원계획) ○ 우선지원대상에 맞벌이 가정 포함
2019년	○ 280개소 지원(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 9개소 시범운영) ○ 성과에 기반한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체계 개편
2020년	○ 304개소 지원(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 전국 확대 운영) ○ 우선지원대상의 소득기준 폐지
2021년	○ 332개소 지원(비대면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11개소 운영) ○ 긴급돌봄지원 관련 운영기준 제시

※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1월
지 원(개소)	200	200	200	244	250	250	260	280	304	332
참여인원(명)	8,060	8,200	8,091	9,490	9,745	9,773	10,742	11,584	12,341	13,145
국고예산(억원)	155	161	144	184	185	185	197	224	226	282

2-2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 추진 주체별 역할

○ 여성가족부

-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현장지도·점검, 컨설팅 총괄
- 사업운영 평가 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운영모델 개발·시범운영
- 방과후돌봄서비스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사업총괄
- 사업계획 수립·검토·조정
- 운영기관 선정 및 지도 감독 등 수행
- 국고보조금 교부집행 및 지도점검, 관리
- 관내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및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홍보계획 수립
- 관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조정 등(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협조)

○ 운영기관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운영계획, 운영지도안 등)
-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및 지역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 대상 청소년 발굴·지원
- 예산집행 및 정산결과보고
- 지역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협력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운영전담인력 교육(신규자 교육 및 직무연수 등)
- 현장점검(합동) 및 컨설팅 지원
- 운영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사업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홍보, 민간자원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범부처 공동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지원 등

3 '22년 세부 운영 계획

3-1 설치·운영 기준

□ 시설 설치요건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내 설치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기준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별표 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를 기반으로 한 [서식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안전점검표]를 연 1회 지자체가 현장점검 시 실시하고 총 31개 항목의 90% 이상(27개 항목 이상) 적합하여야 함
 -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안전기준 : 공공시설별 설치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내 설치

- 민간운영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소방청 고시 제2019-5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설치

○ 시설기준(권장 모형)

- 전용공간(교실) : 교실 당 정원 수용 규모, 생활에 불편이 없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 30명반은 1개 교실, 40명반은 2개 교실, 60명반은 3개 교실을 마련하여야 함
 - * 교실 위치는 지하층 배제, 환기 원활 등
 -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운영 시수 내 전용공간으로 활용
- 지도자실 : 지도자의 사무 및 연구, 회의 및 상담, 기자재 보관 공간 등으로 구성
 - * 청소년 전용공간과 동일 층 배치 권장
- 활동실(프로그램) : 체육 활동(스포츠, 댄스 등),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 * 수련시설 내 공간 활용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사회 내 공간 연계 활용
- 북카페 및 휴게실 : 참여 청소년들이 도서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단, 지역사회 내 도서관 등 시설 활용 가능)
- 장애청소년 지원형의 경우 참여 청소년의 장애 유형을 고려한 시설 보완 권장

□ 사전 운영공간 확보

○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신규 개소)를 위한 공간확보

-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 건립 설계단계부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공간 확보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8.8.31)’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수련 및 공공 시설(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도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신규 개소 시기 사전 조사 후 개소와 함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선 조치
- 기존의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에도 조속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공간 추가 확보
-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유희 교실(공간)’ ‘방과후 아카데미’ 배정요청 및 신규 개소 추진

법정부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실행계획('18.4월)' 中

- (교실 활용)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돌봄기관 설치·운영 등을 통해 학교 안팎의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시·도교육청별 산출된 활용가능교실을 근거로 활용우선 순위*에 따른 학교·교육청 단위의 수요를 반영한 교실 활용 자체 계획 수립
 - * (활용 우선순위 예시) 교육과정운영-방과후학교·초등돌봄 수요-병설유치원-지역수요 등
 - 자체 계획 반영 후 남는 활용가능교실 현황은 학교 내 돌봄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기초)자치단체에 제공

■ 학교시설 사용시 관리책임 ■

구분	관 리 책 임
학교장	- 임대교실의 골조 등 기본시설*에 대한 점검·지도 * 기본시설이란 당초 학교에서 제공한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을 말함 - 임대시설과 관련한 사용료 및 공공요금 징수·관리(필요시) - 기타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위임하는 사항
지자체, 방과후 아카데미	- 돌봄시설 등 이용자 안전*(위생·보건·급식·통행 등)에 관한 사항 * 아동의 돌봄시설 등 입소시간부터 퇴소시간까지 안전에 관한 관리책임 - 임차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보안 및 화재 예방 등 - 기타 공공요금 납부 및 보험가입 등

■ [참고] 유휴교실의 활용 절차 ■

※ 유휴교실 활용 절차는 학교장-지자체-운영단체 간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대상학교 선정 '계획수립'	시도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 협의 (시도교육감, 지자체)	• 지자체장과 교육감(또는 교육장)은 돌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돌봄시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의
	대상학교 발굴 (시도교육감, 지자체)	• 중기학생배치계획, 지자체 단위의 국공립·공공형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 학교 발굴
	돌봄시설 등 설치 대상학교 추천 (시도교육감⇒교육장, 학교장)	• 돌봄시설 등 설치 대상학교를 추천하고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협조 요청
	해당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및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돌봄시설 등 설치 여부 심의·확정
공유재산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자치단체장⇒학교장)	•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면적 등 양식 명시하여 사용허가신청서 송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24조 ※ 아동복지법 제62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심의 신청 (학교장⇒교육감(교육장))	•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요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 심의회 개최 및 의결·결과 통보 (교육감(교육장)⇒학교장)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 확정 및 결과 통보
	협약체결 (학교장⇔자치단체장)	• 사용허가 조건을 반영한 협약 체결
방과후 아카데미 개소·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개소 (자치단체장, 운영기관)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직영, 위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 개소·운영

□ 운영요건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기관 내 독립된 부서(팀)로 설치·운영을 권장하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업무만 전담하도록 함

□ 운영유형 및 인원

운영유형		1개반	2개반	3개반
일반형	기본형	30명	40명	60명
	농산어촌형	30명	40명	60명
	장애형	8~10명	15~20명	25~30명
	다문화형	15명	30명	45명
	탄력운영형	15명	-	-
주말형		30명	-	-

* 기본형과 농산어촌의 1개반(30명)은 지역적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사전 승인(여가부 보고)에 따라 최소 20명 이상으로 예외적 운영 가능

- 운영형태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운영유형을 선택
 - 기본형, 농산어촌형, 장애형, 다문화형, 탄력운영형, 주말형

□ 연간 운영일수

[일반형]

- 기본운영 :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법정공휴일 휴일)
 - 연간 총 230일 운영
 - * 운영일수 : 참여청소년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일 수
- 운영시수
 - 주중활동 : 1주 20시수 이상(1주 20시수 기준, 급식 5시수 의무포함)
 - * 1시수 60분(휴식포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 * 장애 청소년지원형은 수업 및 휴식시간 조정 가능
 - 주말활동 : 분기별 1회 5시수 이상(급식포함)
 - * 단, 주말체험활동(분기별 1회) 외 주말운영은 운영일수에 미반영
- 정원 일부 단축참여 허용
 - 모집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주 15시수 이상 참여 가능(기관운영시간은 동일, 청소년의 단축참여 허용)
 - * 허용사유 예시 : 학원 등 교습참석, 질병치료, 별도 돌봄서비스 참여 등

[주말형]

- 기본운영 : 일 5시수, 주 1~2일 운영(토~일요일)
 - 연간 총 80일 운영(캠프 권장)
- 운영시수
 - 주말활동 : 일 5시수 이상(급식포함)
 - * 1시수 60분(휴식포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3-2 프로그램 운영(편성) 기준

[일반형]

- 프로그램 운영(편성) 기준
 - 과정편성은 1일 최소 4시수 이상, 기관 상황에 따라 운영과정은 자율선택
 - 공통 운영과정(5시수) :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기본적인 생활지원과정
 - 선택 운영과정(15시수) : 지역의 특성 및 참여 청소년 수요에 따라 다음의 운영과정 선택

선택운영과정	운영방식	운영시수 편성(예시)
① 체험·역량강화활동	▶(공통)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특화) 역량개발,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지역사회프로그램 참여 등 ▶(일반) 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 공통 운영과정(5시수) ○ 선택운영과정(15시수) - 체험·역량강화활동(10시수) - 학습지원(5시수)
② 학습지원활동	▶(공통)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특화) 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일반) 역량개발,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지역사회프로그램 참여 등	○ 공통 운영과정(5시수) ○ 선택운영과정(15시수) - 학습지원(10시수) - 체험·역량강화활동(5시수)

* 제시된 운영시수 편성은 예시로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캠프운영 : 연 1회 캠프(집단) 운영 권장(자율 운영)
 - *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규 운영모형 발굴 및 프로그램 유형 개편 가이드라인 또는 2022년 업무매뉴얼 참조

〈공통 : 프로그램 편성 운영시 참고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 학기초 청소년(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계획 수립, 반기별 1회 이상 수요조사 의무실시, 프로그램 분기별 및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	○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간담회, 가족통합프로그램)은 연 2회 이상 운영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인정)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 주말형 제외)	○ 운영자와 청소년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주당 6시수 이내 자율 편성 가능(긴급돌봄 시 추가 확대 편성 가능) ○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급식지원(간편식, 도시락 등)

[주말형]

○ 프로그램 운영(편성) 기준

- 주말활동 : 일 5시수 이상(급식포함)
- 특성화된 프로그램 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요구, 지역 특성, 시대적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자율운영
 -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주제는 운영기간(연간, 반기, 분기)별로 변경 가능
- 학기 초 청소년(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분기별 및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주말형 프로그램 주제 예시〉

프로그램 주제 예시	운영방식	운영시수 편성(예시)
① 창의융합 프로젝트 활동	과학, 예술,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융합한 창작활동	공통 운영과정(1시수) +창의융합 프로젝트(4시수)
② 진로개발 지역 현장체험 활동	지역 자원을 이용한 현장실습체험으로 진로탐색 및 미래 진로설계	공통 운영과정(1시수) +진로개발 현장체험(4시수)
③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 활동	봉사활동과 접목하여 지역혁신 아이디어 제안 또는 지역사회 개선 활동	공통 운영과정(1시수)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4시수)

□ 참가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상 학년을 선택

* 교급(초등/중등) 및 정원 변경을 희망할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시도)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승인 요청 필요

□ 참가 대상자 선정기준

[일반형]

○ 기본형·농산어촌형·탄력운영형

- 우선순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시설보호청소년의 경우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하여 모집불가(반별 10%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지원대상 : 학교(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을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청소년 증빙서류 구비 필수(지속 참여자는 조건 변경시에만 제출)

○ 장애형 : 학교(교장 및 교사), 전문가,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청소년

* 장애판정은 받지 않았으나, 학교특수교육대상자(교육지원청에서 발급)도 포함

○ 다문화형 : 학교(교장·교사) 및 다문화관련기관·전문가,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 다문화형은 전체 대상의 50% 이상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구성

[주말형]

○ 주말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지원대상 구분 없음)

* 프로그램 운영 기간(연간/반기/분기 등)별 수시 모집 가능(신규)

□ 청소년 이용 절차

○ 신청방법

-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거주지역의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 유·무선 전화로 면담 후 참여 신청
- 초등 청소년은 '정부24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www.gov.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초등 청소년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

○ 우선지원 대상 확인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운영기관에서 우선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최종 선발 : 우선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자에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로 확정 통보

* (우선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청소년) 관련 증빙서류 검토 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의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

* 주말형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및 지원협의회 적격여부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되, 운영기관에서 정한 선정 규정에 따라 선발

○ 우선순위 지원대상 청소년 선발 절차



* 예외) 주말형 청소년 선발 절차



○ 기타 청소년 대상 선발 절차



○ 참가자 모집은 운영기관별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

○ 참가자 모집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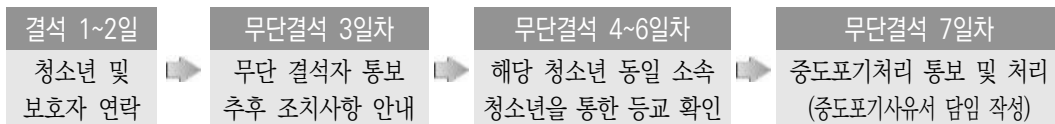
- 공개모집, 추천,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등 다양한 방식 적용
- 공개모집 방법은 사업의 취지를 알리는 내용으로 접근

* 외부 배포자료에 '취약계층' 등 참여자의 낙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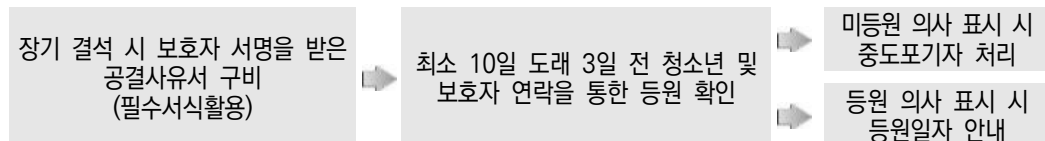
□ 청소년 출결관리

[일반형]

- 모든 운영기관은 전자출결시스템 사용 의무
- 출석률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 공결처리 기준, 결석, 지각, 조퇴의 조치 방법 등 포함
 - * 공결처리 기준 : 가족행사(경조사, 가족여행), 전염성 질환 등의 질병, 종교행사, 학교행사(수학여행 등)
 - * 단, 공결의 경우 반드시 공결확인서 내 공결사유 증빙서류 필히 구비(처방전, 학교공문 등, 가족행사의 경우 양육권자(보호자) 확인서 또는 유선통화결과를 지도자가 약식보고서로 작성 구비)
- 무단 결석 및 장기결석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공지
 - 무단 결석 : 운영 전담 인력에게 별도 연락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시 보호자 또는 학교(담임교사) 사유 확인후 중도포기 처리, 단, 이후 참여 희망하는 경우 지원협의회 승인을 받아 재참여 허용



- 주간출석부, 공결관리기록부 등 출결현황 관리에 철저
 - 주간출석부: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기록
 - * 단, 운영시간 내 청소년 안전관리를 위한 시간별 출석관리 필수(자체관리)
 - 단기 결석 : 질병치료 등 기타 사유로 1일 이상 4일 이하 결석시 출결사항 기재하고 결석 사유 종료 후 재참여
 - 장기 결석 : 사고, 전출입,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5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 단, 대기자가 있는 경우 10일(운영일수) 경과시 중도포기처리 가능(공결사유서 제출 시 보호자에게 해당사항 안내)



- 주간출석부, 공결관리기록부(공결 증빙자료 필수 구비) 등 출결현황 관리에 철저

[주말형]

○ 출석률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 전자출결관리시스템 또는 별도 출석부* 관리

* 프로그램 특성 상 전자출결시스템 활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도 업무지원서비스 내 참여청소년 정보 관리 철저

- 당일 출석여부와 건강상태 등 확인

* 단, 운영시간 내 청소년 안전관리를 위한 시간별 출석관리 필수(자체관리)

○ 무단 결석 및 장기결석자의 경우 기관별 기본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공지

□ 중도포기자 및 대기자 관리

○ 중도포기자 발생 대비 처리절차 마련

- 기관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필요시 동의서를 받아서 운영

○ 중도포기자 처리절차(예시)

참여 청소년 포기의사 전달 → 청소년 면담 → 보호자 면담 → 최종 중도포기 결정

○ 비자발적 중도탈락 기준 및 처리 절차 마련

- 방과후아카데미 부적응 및 문제행동 등 안정적인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크게 위해가 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 퇴소하는 기준 마련

○ 비자발적 중도탈락자 처리절차(예시)

청소년 면담 → 보호자 면담 → 실무자 회의 → 지원협의회 회의 최종 중도탈락 여부 결정 → 최종 통보

○ 대기자 관리

- 중도포기나 탈락에 대비하여 예비자 명단을 작성·관리

□ 청소년 생활지도 및 관리

○ 참여 청소년 일상 생활지도

- 개별 청소년의 문제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개입·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필요 시, 지역 내 전문 상담기관 및 의료 기관 등에 연계
- 연령에 따른 청소년 발달특성 및 심리를 고려한 생활규칙 마련
 - * 청소년과 함께 생활점검표 및 생활규칙을 만들어 적용

□ 건강·안전지도 및 관리

○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청소년의 신체 및 영양상태를 고려한 식단 및 간식 구성
- 청결지도,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 지도
- 지역사회 연계하여 건강검진 등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
 - * 청소년 영양 상태에 따라 식단 및 간식 구성
 - * 외부 업체에 위탁 급식 시 음식물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 청소년과 보호자 대상 정기적인 교육(간담회 등) 실시 등

○ 귀가지도 관리

-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적절한 귀가 방법을 선택(도보·차량) 운영
- 귀가방법에 따라 적절한 귀가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차량 귀가시 지도자가 동승하여 차량 안전사고 예방
- 도착알림 문자발송 시스템 도입 등(전자출결시스템 활용)
-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운영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운영
 - * 관련 사항은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확인(「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 참고)

□ 운영 인력 배치 기준

운영유형		1개반	2개반	3개반
일반형	기본형	팀장1, 담임1	팀장1, 담임2	팀장1, 담임3
	농산어촌형	팀장1, 담임1	팀장1, 담임2	팀장1, 담임3
	장애형	-	팀장1, 담임2	팀장1, 담임3
	다문화형	-	팀장1, 담임2	-
	탄력운영형	팀장1	-	-
주말형		담당자 1명 이상	-	-

* 주말형은 전담인력 배치 및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운영(인건비 총액내에서 제수당 지급)

□ 운영 전담 인력 관리

○ 팀장 및 담임 등 운영실무진의 선발 및 관리

- 팀장, 담임 채용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직원명부, 출근부를 작성 비치

* 전자출결관리 시스템을 운영중인 경우 출근부 제외

○ 운영인력과 관련한 복무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사업지침 및 각 운영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름

구 분		기준 및 자격
팀장	주요 직무	• 1명 전담 배치 - 사업총괄, 사업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환경분석 및 사업점검 및 환류, 지역연계협력, 사업성과관리, 안전관리 등
	자격 요건	① 해당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②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육성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위의 ①~②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①~② 요건 중 자격증을 제외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사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 분		기준 및 자격
담임	주요 직무	• 반단위 1명 - ① 프로그램 기획지원, ② 보충학습지원 및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등, ③ 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④ 급식 지원, ⑤ 문서작성 및 운영지원 등
	자격 요건	①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④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⑤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위의 ①~⑤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사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채용시 유의사항 (팀장, 담임)		* (신규채용)운영종사자 채용 시 공개채용이 원칙 * (전보발령)운영기관 내 기존인력을 방과후아카데미의 팀장 또는 담임으로 전보 배치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 하되 겸직(중복업무)을 금지하고, 팀장 또는 담임 업무만 전담하도록 함 * 운영책임자(팀장)의 교체 시에는 사전평가 실시 반영, 업무의 지속성 감안 * 팀장이 육아휴직, 휴직 등으로 공석일 경우 담임이 팀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고, 직무대리기간 동안 팀장 급여와의 차액만큼 직무대리 수당으로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경우 공무원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함 (단,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1일 최소 7시간 미만으로 채용할 수 없음)

* 장애형 및 다문화형 운영전담인력 채용시 사회복지사, 특수자격소지자, 다문화관련 기관 및 사업 종사경력자 채용 가능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제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 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 「아동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2의1. 시·도 교육청 조례에 의거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2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4. 「경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에서 청소년 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운영상 유의사항〉

-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전담 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에 따라 반복참여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 단, 추가 소요예산은 소관 지자체 또는 채용권자가 부담
-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월)』에 따라 단계별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추진
 - 1단계('18. 지자체 직영), 2단계('19. 지자체 출연 및 출자기관) 등

○ 운영인력 전문성 개발

- 종사자 교육 수료 기준

구분	팀장	담임		주말형 종사자
		기존	신규	
이수시간	16시간 이상 ※ 신규 팀장 추가 교육 참여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 상기 교육은 실무자 의무 교육으로 해당 실무자는 당해 연도 내에 이수시간 이상 수강하되 교육 공백을 최소화 할 것

* 직무역량지원비는 실무자 교육에 한해 지출 가능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지원교육(자체 및 외부교육 가능)

교 육	교육대상	실시횟수	교육내용
상근인력 교육	시설장, 팀장, 담임	연 1회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보조인력 교육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연 1회 (자체 교육 실시)	자원봉사자 및 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자원봉사교육, 담당 프로그램 지도 교육,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 타 지역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자들과의 정보공유, 상호방문 등 교류활동 지원

○ 근무환경

- 쾌적한 환경 및 복리후생 지원(제수당, 건강검진 등) 등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
- 계약시 업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준수하도록 함

〈근로계약 예시〉

- 주말 운영하는 주(주6일): (일일 7시간 × 5일) + 주말 5시간 = 주 40시간
- 주말 미 운영 주(주5일): 일일 8시간 × 5일 =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종사자 휴가 부여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무시간(주 40시간), 휴가,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함

□ 강사인력 확보 및 관리

- 체험활동은 해당분야 우수 전문 강사 선발 운영
- 학습지원 강사는 해당 교과 전공자 또는 지도 경력 있는 자로 채용

구 분	인력확보방안
활동부문	- 각 분야 전문기능 수행가능자 인력풀 구성 - 지역사회 문화 예술인, 체육인 등 전문 인력 활용
학습부문	- 해당 교과 전공자(대졸, 대학원생 등) 또는 해당 교과목 지도 경력이 있는 자로 지역 내 인력풀 구성·운영 - 주부·퇴직교사 등 자원 개발 및 연계

- 강사간담회 및 교육 등 강사관리체계 마련하여 시행

* 채용시 고용근로계약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회보서 등 강사진 현황 작성 비치

□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발굴 및 연계

- 지역 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생 자원봉사인력을 발굴·활용
 - 자원봉사 인력에 대해서는 교통비 및 식비 명목으로 일비 수준(일일 금 20,000원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단, 행정운영비에서만 지급 가능)
- 지역 내 기업·공공기관·사회단체·군부대·경찰 등과 협력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발굴·활용
-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관리·운영계획 수립
 - 활동 기록관리, 정기적인 평가 등
- 자원봉사 영역별 인력풀 구성 등 지속적 사후관리계획 마련
 - * 학습, 귀가지도, 급식지도, 상담지원, 건강지원, 특강분야 등
 - * 자원 봉사자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필요시 프로그램에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구입 가능(자산취득성 불가)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 배치 가능

□ 종사자 및 강사 등에 대하여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필수 확인

- 신규 종사자 및 강사 등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는 필수이며, 기존 운영인력 및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연 최소 1회 이상 실시

운영법인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청소년수련시설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사회복지관	○	○
학교	○	○
도서관	○	○

* 유의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단체의 경우 성범죄 범죄경력 조회 불가하나,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자격취득 시 및 매년 1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의 결과를 활용하여 확인

- 동일인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매년 1회 조회 필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8.1.1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봉사자는 노무(임금을 받으려고 육체적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일)의 제공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불가

◇ 성범죄 경력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 이외 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전문 참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검 대상기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제56조제1항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 이외 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전문 참조

⑥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참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검 대상기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취업제한 대상기관)

-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 이외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전문 참조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절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절차) 참고

3-5 지역연계 및 홍보관리

□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연간 지원협의회 운영계획 수립·시행(주말형 제외)

- (주요기능) 방과후아카데미의 주요 사안의 심의·결정, 지역연계 및 협력의 지원, 자문 및 사업홍보

※ 지원협의회 운영 규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규정 등 자문·심의·결정

- (구성방법)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직·간접적 지원과 조언 등을 할 수 있는 지역 관계자 10명 이내
 - * (필수위원)운영기관장, 지자체 공무원, 청소년상담분야 전문가
 - * (선택위원)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돌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 지원협의회가 지역사회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 실무자 중심의 실무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지원협의회(실무추진위원회)는 정기적인(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다양한 네트워크 발굴 노력
 - * 비대면 회의 실적 인정(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회의에 해당, 단순 서면회의는 불인정)
 - * 청소년 참여 심의(지역사회추천)의 경우 서면으로 운영 가능
-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보고서(3월 이내) 및 지원협의회 운영결과보고서(11월)를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 신규기관의 경우 참여청소년 모집단계에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야 함(지역사회 추천 전형 청소년 선발과 관련)

□ 지역자원 연계 및 관리

- 지역 내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 등과 방과후아카데미를 연계할 수 있는 분야 파악
 - 지자체(방과후아카데미)별로 연초 지역 유관기관·자원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의무 실시
- 지역연계 자원은 지역의 청소년활동 참여활성화를 중점으로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의 지역참여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됨
- 지역의 연계자원 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체계적 관리

□ 홍보관리

- 지역사회의 지지 확보, 참여대상자 발굴 및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계획 수립·운영
 - 지자체(방과후아카데미)별로 연초 모집률 제고를 위한 지역맞춤형 발굴 및 홍보 계획 의무 수립
- 지역 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방과후아카데미 홍보
 - 운영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시정홍보지, 지역신문 등 활용

- 홍보자료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
 - 청소년들의 지역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활동내용 중심으로 작성
- 홍보물 제작시 기관표기 원칙

- ◆ 주최 : 여성가족부, 시·도
- ◆ 주관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 수련관)
예시) 서울 강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강남구 청소년수련관)
- ◆ 복권위원회 CI 또는 브랜드마크 반드시 활용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판 설치 및 교체시 유의사항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판 설치 및 교체시 유의사항
 -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판 설치 의무(기관 표기 원칙 준수)
 - 제작예산은 행정운영비 내에서 활용

3-6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지원

□ 긴급돌봄 수요조사

- 감염병 등 재난 상황발생시 참여 청소년·학부모의 긴급돌봄(보호, 생활지도), 급식제공, 온라인 학습지원 등의 지원 여부에 대한 유·무선(전화·문자, 웹 발신) 수요조사 실시

□ 긴급돌봄 운영시간

- 기존 방과후~21:00(운영시수 4시간) →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 * 참여 청소년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경우 09:00~21:00(운영시수 10시간)까지 연장하여 긴급돌봄을 지원할 수 있음

□ 긴급돌봄 운영프로그램

- (운영기관 내 프로그램) 운영기관 내 제한적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수요에 따라 운영 시수 등 조절 가능
 - 정상운영과 동일하게 체험활동, 교과학습지도 등 지원(강사비 지급 가능)
-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 비대면 활동에 따른 쌍방향 프로그램 지원, 원격수업지원 및 생활지도 등

- 지원프로그램 : 화상회의 앱 이용하여 체험활동, 교과학습지도 등(강사비 지급 가능)
- 급식지원 : 식사 여부 확인, 도시락 배달(간편식 제공 포함) 등
- 생활지도 : 건강상태 확인, 온라인 학습 등 숙제 지도, 개인 면담 실시
- 원격수업 지원 관리 :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원격수업 참여 여부 확인

□ 긴급돌봄 급식제공

- (운영기관 내 긴급돌봄 청소년) 중식 및 석식 제공 가능(2식)
- (가정돌봄 청소년) 도시락배달 및 인근식당 지정 등을 통한 급식 제공(1식)

□ 인력관리

- 실무자 근무형태는 격일 교대 근무 가능, 긴급돌봄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국비지원예산에서 추가부담 가능

※ 1개소당 방과후아카데미 연간운영비(기본형 40명 기준) 164백만원 중 인건비 47~48% 차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또는 운영법인(단체)에서 별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참가 청소년관리

- (지원대상)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청소년을 우선지원대상으로 하고,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청소년도 지원 가능
 - * 긴급돌봄의 경우 운영기관의 교급(초등/중등)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 긴급돌봄을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학부모)의 공결확인서를 첨부하여 공결처리
- (생활지도) 유·무선(전화·문자, 웹 발신)을 통한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원격교육 숙제 지도, 청소년 개인 면담 실시 등
- (일시적 참여자 관리) 일시적으로 긴급돌봄 참여를 희망 청소년의 경우 참여 신청서(증빙서류 제외) 및 업무지원서비스(전자출결시스템) 등록 후에 긴급돌봄 참여 가능
 - * 프로그램 지원, 급식지원 등 기존 참여 청소년과 동일한 긴급돌봄 지원
 - * 긴급돌봄 종료시 업무지원서비스, 전자출결시스템 이수 처리
- (출석관리) 긴급돌봄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전자출결시스템 사용하여 청소년의 출석 여부를 보호자(학부모)에게 전달

□ 운영기관 방역조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코로나19 방역조치 참조(붙임3)

3-7 예산 편성 및 집행

□ 예산편성

○ 예산규모 : 27,771백만원

- 1개소당 방과후아카데미 연간운영비(국비 및 지방비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1개반(30명)	2개반(40명)	3개반(60명)	비고
기본형	109,416	164,432	230,888	
농산어촌형	112,866	169,472	237,538	
장애형	-	141,612	198,048	1개반 정원 : 10명
다문화형	-	151,892		1개반 정원 : 15명
탄력운영형	67,832	-	-	1개반 정원 : 15명
주말형	43,374	-	-	1개반 정원 : 30명

※ 추가 사업비(임차료 지원) 미포함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단,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 예산 편성기준 및 집행원칙

○ 예산구성

- 인건비 등 : 운영전담인력 급여 및 퇴직적립금
- 사업비 : 급·간식비, 프로그램비, 일반운영비

○ 예산편성기준

국고보조금	항 목	세 부 내 용
인건비	인건비 등	○ 운영전담인력 급여 및 퇴직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기관부담액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사업비	급·간식비	○ 실출석인원 또는 전월 평균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지출 * 급식비 예산편성기준은 예산범위 내 자율편성 * 식당 보유 시 식자재비 및 조리사 인건비를 급식비에서 지출 가능
	프로그램비	○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강사비, 캠프비, 주말체험 활동비 등)
	일반운영비	○ 행정운영비 ○ 귀가차량운영비 ○ 보험 및 직무역량 교육 등 * 귀가차량운영비 : 지입차량 보유 시 운전자 채용 및 유류비 사용 가능 (유류비의 경우 차량운행일지 내 km만큼만 주유 가능)

- * 학교, 복지관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개소할 '22년 신규기관에 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30,000천원)
- * 장애형, 탄력운영형의 경우 인건비 외 예산에서 보조인력 채용 가능(연간 8,000천원)
- * 주말형의 경우 연간 인건비 12,168천원 내에서 직원 또는 시간제 인력 배치 가능
- * 종사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에서 재료비 구입 가능(긴급돌봄지원에 한하여 자산 취득성 물품은 연간 500,000원 이내 사용 가능)
- * 행정운영비 내 출장비, 실무자 참가비(야외활동), 통신비, 부모(보호자)간담회, 지원협의회 운영, 비대면 프로그램 사용료 등 운영기관에 맞게 편성
- * 농산어촌형의 경우 귀가차량운영비 추가 및 원거리 강사의 교통비 지원(1회 20,000원 이내) 가능(운영비는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 집행원칙

-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사업예산 편성 지출
- 외부위탁 또는 계약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경쟁입찰과 최저가 낙찰방식을 원칙으로 사업자 선정(다수 비교견적 등)
- 예산과목 편성 항목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 단, 사업비 항목 내에서 당초 사업 계획과 달라 예산 변경 필요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변경집행 가능 (단, 운영유형별 예산비율 유지)

※ 운영유형별 예산비율(인건비 외 사업비로 편성)

구분	비율										
	기본			농산어촌			장애형		다문화형	탄력운영형	주말형
	1개반	2개반	3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인건비	47%	48%	47%	45%	47%	45%	56%	54%	52%	42%	29%

* 지자체 50%(서울 70%) 매칭 예산의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 및 정규직 전환 비용은 비율 내 미포함

- 사업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항목 불용(예정) 예산은 사업비로 전용하여 적극 집행하고, 사업비 예산은 인건비로 전용 불가
-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자산 및 인건비 예산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제수당 등의 인건비는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 ※ 근무시간 외 근무는 가급적 지양하되, 주말체험활동 등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외 근무 발생시 해당 지자체 또는 운영법인(단체)에서 별도 예산편성하여 근무시간 외 수당 지급
- 지자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해야 함

○ 급식비 집행기준

- 외부 위탁급식의 경우 실출석 또는 월평균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식비 집행 가능
 - ① (사후 지출) 사전 계약(약정)을 통해 실출석 인원 또는 평균 모집 인원내에 대하여 익월초 급식비 지급
 - ② (선결제 및 사후 정산) 사전 계약(약정)을 통해 전월 평균 출석 인원내에 급식비를 선지급하고, 익월초 전월의 실출석 인원이나 평균 모집 인원내에 대하여 급식비 정산

□ 회계관리

- 별도 통장 및 회계 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e-나라도움 전용카드’ 사용하고, 예산집행시 지체없이 ‘e-나라도움’ 입력조치
-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외 캠프비, 입학비, 가입비 등의 수익자 부담 책정 절대 불가
 - 수익자 부담금(교재비, 재료비)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기관 통장을 통하여 관리하며, 접수지출내역에 대해 반드시 문서화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
 - * 실무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운영비에서 재료비 구입 가능(단, 자산취득성은 절대 불가)

□ 종사자 처우개선

- 지자체별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 편성 권고 (보조금 매칭 예산 외 별도)
-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 확대 권고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월)’에 따라 단계별 정규직 전환 추진
 - ※ 1단계(지자체 직영, ’18년도), 2단계(지자체 출연·출자 기관 ’19년도) 등
 - ※ 위탁기관 종사자의 경우 동일 처우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권고
- 심리적 소진방지(힐링) 프로그램 운영
 - 종사자 대상 ‘심리적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 개인정보 항목별 처리기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가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동의를 전제로 함

〈 정보수집의 범위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재산정보 등(대상청소년 및 부모)

- 보유기간을 확인하여 원본서류 보관(회계 관련서류 5년 보관) 및 폐기
- 방과후아카데미 대상자 선정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 제공 및 수집목적 외 이용 불가
 - * 상대방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수기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 컴퓨터에 저장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암호화 처리

○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관리·감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최종 책임자는 '운영 기관의 장'임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평가 목적

- 공공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내실화 및 공공성 확립
- 체계적인 사업평가 실시를 통한 자가 점검 실시 및 경영 효율성 제고

□ 평가 개요

- 대상 : '2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전국 운영기관 중 농산어촌형, 장애형, 다문화형, '20년 신규기관(특별점검)
- 사업수행기관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일정 : '22년 1~11월
 - 1~2월 : 사업 종합평가 평가지표 자문회의
 - 3~4월 : 사업 종합평가 사업설명회 및 교육
 - 5~6월 : 자체 평가서 제출
 - 7~9월 : 현장평가
 - 10~11월 : 운영결과 취합 및 결과보고
 - 11월 : 결과보고
- 평가주기 : 3년마다 1회 실시
- 평가영역 : 3개영역(사업관리역량, 사업운영성과, 행정참여도)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학계·교육계·현장관리자 관련 전문가 20명 내외
 - ※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시행예정

□ 평가 결과 및 활용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정
- 평가등급 : 5개 등급
- 평가결과 활용(안) : 평가대상 기관은 평가의견서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및 이행. 추후 평가 시 개선이행 정도 평가 예정

〈운영 중단 사유〉

- 청소년모집, 출결관리, 급식·귀가지도, 회계관리,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사항 최하점
* 모집률의 경우 객관적 수치 외에 전년도 대비 개선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등 질적지표 추가 활용
- 운영과정에서 안전사고(급식, 화재, 건물 등) 발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향후 3년간 운영기관 선정 제외 가능)

3-10 방과후아카데미 컨설팅

□ 컨설팅 목적

- 신규 운영기관의 사업 안정화 및 운영기관 발전 방안 모색

□ 컨설팅 개요

- 운영대상
 - (의무) 신규기관 및 전년도 종합평가 결과 미흡기관
 - (희망) 운영기관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
- 수행기관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운영일정 : 2~10월 * 의무 : 2~10월, 희망 : 상시
- 컨설팅 운영
 - 신규 및 미흡기관(운영, 모집)의 안정적 사업 정착을 위한 1:1 맞춤형컨설팅 운영
 - 신규 운영기관 및 '21년 사업평가 결과 미흡 등급 이하 기관 의무 컨설팅 지원
 - 기존 운영기관 참여 신청을 통한 컨설팅 지원
 -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이 평가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동료(멘티-멘토) 컨설팅 운영

3-11 방과후아카데미 현장점검

□ 목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영 현황과 성과를 파악·관리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 사업 및 예산 집행이 지침에 부합하여 수행되고 있는 지 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표준화 및 질적 제고 도모

□ 현장점검 체계

구 분	세 부 내 용
점검 주체	○ 지자체 현장점검 : 지방자치단체 ○ 합동점검 : 여성가족부, 운영지원단 및 지방자치단체 ○ 불시점검 : 여성가족부, 운영지원단
점검대상	○ 202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실시기간	○ 지자체 현장점검 : 4~6월 예정 ○ 합동·불시점검 : 8~10월 예정
점검 횟수	○ 지자체 현장점검 : 각 기관별 연 1회 이상 ○ 합동·불시점검 : 필요시
점검 결과	○ (시·군·구) 현장점검 완료 후, 현장점검표 및 현장 점검 보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 ○ (시·도)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현장 점검표 및 현장점검 종합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주요 점검 내용	○ 조직 및 운영, 프로그램 및 성과관리, 안전관리, 회계처리, 기타 등

※ 추후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예정

○ 여성가족부 : 현장점검 기획 및 관리

-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표 제공, 현장점검 참여
- 현장점검 점검표 및 시·도별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최종 확인
- 합동·불시 점검 실시

※ 지자체 자체 점검 실시 후, 합동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 시·도 담당자 : 현장점검 진행 총괄

- 관할 내 운영기관 점검 총괄 관리

※ 시·군·구 직영센터는 시·도 담당자가 현장 점검 진행

-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현장 점검표 및 현장점검 종합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 여성가족부 현장 모니터링 시, 담당 공무원 동행 협조
- 시·군·구 담당자: 자체 현장점검 실시
- 관할 내 운영기관 자체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완료 후, 현장점검표 및 현장 점검 보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
 - 여성가족부 현장 모니터링 시, 담당 공무원 동행 협조
- 운영지원단: 현장점검 기획 및 관리 협조
-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 취합·분석 등 현장점검 협조
 -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지자체·여성가족부와 합동점검 실시

3-12 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사업자 지정) 지역현장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법인)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설치 요건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사업자 지정**
 -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재부)
 - ※ 수탁자 자격기준: '청소년육성·보호·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지자체별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1. 청소년 활동관련 업무 공무원, 2. 청소년활동에 관한 학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3. 청소년 상담복지 전문가, 4.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운영의 공백 방지를 위해 사업자 지정은 최소 6개월 전부터 추진방식을 적용

- (사업운영의 중단 및 종료) 운영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전년도 상반기 중에 지자체 및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야 하며, 당해연도에 운영 중단할 경우 지자체는 사전에 대체할 운영기관(장소)을 확보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함

- (사업포기 기관에 대한 조치) 기존 운영기관이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부정수급금 환수 등 조치 **신규사업자 지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기존 참여자 및 지역내 돌봄수요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3-13 방과후아카데미 안전관리

-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참여 시 인증수련활동 확인 후 참여 권장
-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기관장)
 - 역할 : 비상약품, 구호설비 구비 운영, 상시 안전관리체계 점검, 응급 및 재난상황 대응총괄, 응급환자 이송방안 마련,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병원) 등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 * 수련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외 방과후아카데미별 안전관리책임자 추가 지정
- 반기(학기초 필수) 1회 1시간 이상 안전대비 교육(심폐소생술, 재난대응요령 등) 및 비상대피 훈련 실시
- 주말형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기간(연간, 반기, 분기)별 안전대비 교육 및 비상대피 훈련 실시
- 유사시 비상연락체계 구축(방과후아카데미-시·군·구-시·도- 여성가족부)
- 지진·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재난 발생(예보)시 시·군·구(필요시 시·도)의 결정에 따라 일시휴업 가능
 - ※ 일시 휴업시 시·도 및 운영지원단에 즉시 보고
 - ※ 자연재해 및 재난발생으로 인한 휴업시 휴업일은 운영일수에 포함(지자체의 휴업공문 필수)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22.1.17.(월)까지
 - 작성서식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 * 운영기관에서는 기관별 세부사업계획서를 '22.1.12.(수)까지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
- 여성가족부에서는 분기별 국고보조금 교부 : 1월, 4월, 7월, 10월
 -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교부를 위해 지방비예산 편성 및 시스템 입력 완료 처리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사업결과 및 사업정산보고서 제출일 : '22.2.11.(금)까지
 - 작성서식 : 정산보고서(서식 3), 결과보고서(서식 4)
 - 이자발생액도 반드시 보고·반납 조치

□ 기타 사항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교육 등에 참여
- 운영기관별 전담인력의 업무 숙지를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안내 및 온라인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등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이 종사자 정규직 전환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계획 및 결과보고 등)를 지자체 현장점검 시에 제출 필요
- 분기별 현황조사(참여 청소년, 참여 실무자, 대기자 등) 제출
 - 분기별 현황조사 결과 3개월 이상 모집률 80% 미만시,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행정지도 실시

- * 인건비는 해당 지자체 및 기관의 임금체계에 따라 편성 가능하나, 이에 따른 총임금(기본급·제수당 등)은 아래 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함.(최소기준)
- *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자산, 제수당 등의 인건비는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 * 사업운영비는 운영 유형별 인건비-사업비 예산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단가 조정 가능

(단위 : 천원)

항 목			탄력운영형 (15명)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주말형 (30명)
인건비	급여	팀장	25,596 (2,133천원× 12개월×1명)	23,232 (1,936천원× 12개월×1명)	25,596 (2,133천원× 12개월×1명)	28,356 (2,363천원× 12개월×1명)	12,168 (1,014천원× 12개월)
		담임	-	22,980 (1,915천원× 12개월×1명)	45,960 (1,915천원× 12개월×2명)	68,940 (1,915천원× 12개월×3명)	
	퇴직 적립금		* 편성기준 : 기관별 가입된 퇴직금제도에 따른 비율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기관부담액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 육아휴직 대체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 (해당사유에 한하여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 1%p 상향 가능)				
사업 운영비	급식비 (간식포함)		* 지자체 또는 기관의 식비 단가 규정에 근거하여 단가 자율 책정 가능 * 식당 보유 시 식자재비 및 조리사 인건비 지출 가능				
	프로그램비		* 예산 범위 내 과정별 운영시수 및 단가 자율편성				
	일반 운영비		* 예산 범위 내 운영비 자율편성				
	차량운영비		* 지역 시세 고려하여 단가 조정 가능				
	보험		* 10,000원×1명 → 청소년 수				
	직무역량자원		* 150,000원×1명 → 운영전담 인력 수				

■ 운영유형별 예산비율 ■

구분	비율										
	기본			농산어촌			장애형		다문화형	탄력운영형	주말형
	1개반	2개반	3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인건비	47%	48%	47%	45%	47%	45%	56%	54%	52%	42%	29%

(단위 : 원)

유 형 별			기본단가	추가사업비	
				전기관	어린이 통학버스 수요제출 기관
일반형	기본형	30명	109,416,000	1,800,000	8,040,000
		40명	164,432,000	1,800,000	8,040,000
		60명	230,888,000	1,800,000	8,040,000
	농산어촌형	30명	112,866,000	1,800,000	8,040,000
		40명	169,472,000	1,800,000	8,040,000
		60명	237,538,000	1,800,000	8,040,000
	장애형	20명	141,612,000	1,800,000	8,040,000
		30명	198,048,000	1,800,000	8,040,000
	다문화	30명	151,892,000	1,800,000	8,040,000
	탄력운영형	15명	67,832,000	1,800,000	8,040,000
주말형		30명	43,374,000		

□ 기관 방역조치사항

- (출입시 조치사항)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확인
 - * (마스크·체온계 비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내 마스크, 체온계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마스크가 준비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마스크 배포(운영비로 구매 가능)
- (예방수칙 등 교육) 참여청소년 및 운영기관 실무자 대상 감염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예방 교육 실시
- (시설내 준수사항) 급식 간격두기, 소독 철저, 시설 공간 내 거리두기, 창문 수시 개방 및 환기, 방역물품 등 비치
- (격리공간 확보)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 내 격리공간 확보
 -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방역관련 비상연락 및 신고체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위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 내(참여 청소년, 운영종사자) 유증상자 발생 상황 관리
 - *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담인력(방역담당관) 필수 지정
- 관할 지자체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유관기관*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
 -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긴급돌봄 운영지원 참고사항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을 운영기관에서 지원할 경우 지자체 및 교육부의 온라인 교육 장비(노트북, 테블릿PC 등) 활용하여 지원
- 긴급돌봄은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반하여 운영 가능
- 귀가차량 증차 지원은 사업비 예산범위 내 집행 가능
- 급식지원은 1일 2식 지원 가능

사 업 명	2022년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신청기관	시 도 명		부 서 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교부신청 총금액	일금	천원(W)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 방 비	
				시·도	시·군·구
	합 계	0	0	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의 방과 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 서비스 확대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주요내용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2 년 1 월 일 ○○ 시·도 □ □ □ (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 ◎ 2021년도 주요 추진성과(1페이지 이내 핵심적인 내용만 작성)
- ◎ 2021년도 운영결과 분석 및 2022년도 개선계획 수립
 - * '21년도 평가의견서 또는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2년도에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개요중심으로 작성
- 1. 2021년 자체평가 결과(1페이지 이내)
- 2. 전년도 (자체)평가결과를 반영한 주요개선 계획('21년 자체평가 계획 별도로 수립된 경우 자체평가 계획서로 제출)
 - 1) 개선과제(과제별로 작성)
 - 2) 개선과제별 개선계획 *단기, 중기로 구분하여 작성
 - 3) 개선과제 점검 및 이행관리 방안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추진배경 및 경과

2. 사업내용

* 지자체 관할 운영기관별 특색있는 사업내용 등 기재

3. 소요예산 총괄

운영기관명	예 산 액			
	계	국비	시·도	시·군·구

4. 사업평가 계획

* 지자체별 시행예정인 현장점검, 컨설팅 등 사업평가 계획 등 기재

5. 사업홍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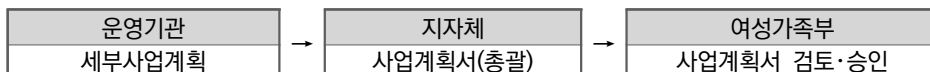
* 지자체 통합 홍보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 사업홍보물 제작시 '여성가족부, 지자체 운영' 반드시 기재

6. 기타 사업운영 관련 추가 계획 수립 사항 등

* 지자체별 자체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 사업계획 작성 절차



1. 사업명 : '22년 ○○시·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2. 사업개요

☐ 목적 :

☐ 사업기간 : '22.1월 ~ 12월

☐ 사업내용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예 산 액 : 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시설 : ○○시설(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 집 ○, 기타 ○)

운영기관명	대상/인원				예산			비 고
	계	초	중	초+중	계	국고	지방비	

3. 정산총괄표

운영기관명	예 산 액			집 행 액			불용액			이자 발생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4. 사업비 집행내역

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나. 보조금 불용액 내역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다. 보조금 예금 결산이자 내역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라.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전용내역 :

1. 사업 실적

- 총평 :
- 운영현황

운영 기관명	대상인원			운영유형					
	계	초	중	일반형					주말형
				기본	농산어촌	장애	다문화	탄력운영	

2. 사업추진성과 및 자체평가

- 우수사례(운영기관별 대표적인 사례 기재)

운영기관명	우수사례

- 미흡한 점

운영기관명	미흡한 점

- 문제점 및 애로사항

운영기관명	문제점 및 애로사항

- 발전방안

운영기관명	발 전 방 안

번호	항 목	서식	시스템	비 고
1	업무보고(팀장, 담임)	-	필수	업무지원서비스 업무보고 사용
2	급식 계획	필수	-	
3	차량운행일지	필수	-	
4	일일교육환경점검일지	필수	-	기관 내 동일 내용으로 작성중인 경우 기관 내 양식 대체 가능
5	분기별 대기자 관리대장	필수	-	
6	중도포기사유서	필수	-	
7	인사기록카드	필수	필수	시스템 상 실무자 인적정보 등록
8	팀장/담임 근로계약서	필수	-	
9	강사 채용계약서	필수	-	
10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필수	-	
11	대상 청소년추천서	필수	-	
12	청소년지원신청서	필수	-	
13	보호자동의서	필수	-	
14	청소년관리기록부	-	필수	시스템상 청소년 인적정보 등록 사용
15	공결확인서	필수	-	
16	개인정보 취급방침 동의서	필수	-	
17	주간시간표	필수	-	업무지원서비스 입력
18	프로그램운영계획서	필수	-	
19	운영지도안(강의/활동)	필수	-	
20	강사근무일지	필수	-	
21	안전사고 상황보고서	필수	-	

※ 유의사항

- 필수서식은 기본내용을 유지하되, 추가로 작성할 내용이 발생시 변경 사용 가능
- 선택서식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사용하고, 기관별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자체 사용 가능
- 작성서식은 운영기관별로 온라인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사용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구분	번호	항 목 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안전관리 체계 및 교육	1	운영대표자의 책임 아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결과 기록유지) 여부			
	2	입교 시 안전사고 예방방법 및 교육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3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여부			
	4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 구조구난 체제 구축과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한 직원 교육의 실시 여부			
	5	시설 이용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의 대피 경로 등을 각 실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 토목부문

구분	번호	항 목 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진입로	1	비상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접근이 용이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옹벽, 석축 및 담장	1	옹벽, 석축 및 담장 등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2	옹벽 및 담장 기초부분에 침하된 부분이 있는가?			
	3	옹벽 부분에 배부름 현상이 있는가?			
사면	1	사면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2	사면의 토사유출 우려는 없는가?			
배수로	1	배수로 덮개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2	배수로의 덮개에는 발, 구두 굽(하이힐 등) 등이 빠질 수 있는 틈새가 있는가?			

□ 건축부문

구분	번호	항 목 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구조	1	모든 건축물의 내·외벽에 균열은 없는가?			
	2	옥상 부분에 돌출된 파라펫(parapet) 및 난간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3	난간의 간격은 적절한가?			
	4	불법으로 증·개축한 시설은 아닌가?			
	5	처마 및 모서리 부분의 균열이나 낙하위험은 없는가?			
	6	천정, 벽체 및 바닥의 누수는 없는가?			
주출입구	1	주출입구의 중앙 및 양측에 손가락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현관 및 로비	1	각종 안내표시판이 적절하게 게시되어 있는가?			
	2	안내 데스크 모서리 등은 충돌 시 부상을 예방·완화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복도	1	복도는 통행, 피난 및 방향전환 등을 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2	바닥은 턱, 요철 등으로 인한 높낮이 차이 때문에 통행 중 쉽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가?			
	3	바닥 마감재는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4	피난유도등, 피난유도표지 등은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5	복도에 통행 및 피난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의자, 자판기, 공중전화 등) 및 돌출물(못, 철물)이 있지 않은가?			
계단	1	계단에 통행 및 피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가?			
	2	각 디딤판의 끝부분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논슬립(Non-slip)이 설치되어 있는가?			
화장실	1	바닥은 넘어짐이나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2	화장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는 보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구분	번호	항 목 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양호실	1	비상구급약은 마련되어 있는가?			
	2	상주인원 부재 시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망은 게시되어 있는가?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1	정기적인 보수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적재중량, 비상시 연락이 가능한 벨 등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옥외구조물	1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상태나 안전망의 설치상태 등은 양호한가?			
	2	안전수칙 및 위험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기계, 전기 및 가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 아래 전기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2	보일러를 포함한 냉·난방기기는 관련법규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는가?			
	3	가스시설의 누설 체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소방	1	소화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가?			
	2	소화기의 충전량은 적정한가?			
	3	소화전 수압 호스의 연결 상태는 양호한가?			
	4	스프링쿨러 배관 및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5	유도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7	사용하고 있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 비상전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8	완강기 및 피난사다리의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9	위험물 저장시설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10	위험물 저장시설의 차광 및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11	화기시설과 가연성 물질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가?			

Ⅱ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1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

1-1

사업 개요

가. 청소년어울림마당 개념

-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공간(상설 공간)을 의미

* (청소년어울림마당) '어울림마당'은 순우리말로, '청소년이 활동을 통하여 상호 소통하는 장'이라는 뜻이 담겨 있음

나. 사업 목적

-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증진을 도모
- 동아리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통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 도모

다. 추진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구축)

라. 추진 경과

- 2004년 청소년어울림마당 시범 실시(8개 시·도, 29개 시·군·구)
 - * 1993~2008년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 실시

- 2008년 16개 시·도, 90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
- 2011년부터 16개 시·도, 110개 시·군·구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 * 지역의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과 연계,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발표 기회 확산 및 수준 향상

1-2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내용

가. 2022년 사업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 사업규모 : 1,512백만원(국비, 보조율 40%)
 - 시·도 대표 청소년어울림마당 : 71.25백만원×40%×16개 = 456백만원
 - 시·군·구 청소년어울림마당 : 24백만원×40%×110개 = 1,056백만원

나. 운영 방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수요자들을 고려한 새로운 청소년 활동 추진
-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연계·융합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상설 청소년 문화·예술·놀이체험의 장으로 운영
 -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어울림마당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 표현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
- 청소년 문화와 기성세대 문화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여 문화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제고
- 4차 산업혁명 도래 및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관점과 사고능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융합과 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필요
 -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자기주도형 청소년활동 및 창의적 진로 개발역량 체험 기회 제공

다. 운영 체계

- 여성가족부
 - 사업 총괄·조정 및 운영지침 수립
 - 현장지도 점검, 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 운영 방향 개선

-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우수 사례 발굴 및 시상(여성가족부 장관상 등)
- 지자체(시·도 / 시·군·구)
 -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자체 예산 확보 및 배정
 - 어울림마당 운영 주체 선정 및 사업 지침 시달
 -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실적 및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 지자체별 평가, 점검, 모니터링 운영 결과 등을 통한 사업운영 개선
-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기관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어울림마당 행사 운영
 - 상시 및 연간 실적 작성·제출 및 피드백
 - * 계획대비 추진실적, 모니터링 활동 결과 반영 여부 등
 - 예산집행 및 정산 결과보고
 - 이행보증보험, 행사 진행 중 사고 등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행사보험 등) 의무가입(예산범위 내 가입)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어울림마당 담당자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지역 청소년자원 연계 및 청소년어울림마당 홍보 지원
 -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효과성 조사 지원
 - 청소년어울림마당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 운영 현황 및 실적 파악
 -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라. 운영 방안

- (운영기관 선정) 지자체별 운영기관을 자체 공모 선정하여 운영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시설·단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 중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역량 있는 기관 선정
 - * 선정심사위원회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시설·단체, 청소년관련학과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에 반드시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운영기관 선정 시, 서면자료와 제안 설명회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정
 - 전국 통일감 있는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 선정은 3월 이내 완료

■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기관 선정기준(안) ■

기 준	항 목
기관의 업무능력	○ 공공성을 띤 주체이며, 지역 청소년활동에 기여(청소년사업실적) 하였는지 ○ 지역 자원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 ○ 담당 실무자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 담당 인원수는 적절한지
사업 내용 적절성	○ 전체프로그램 구성이 지역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 어울림마당 공간이 지속적으로 개발·유지될 수 있는지 ○ 어울림마당 홍보, 청소년참여, 안전대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예산의 적절성	○ 예산 항목은 어울림마당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제시되어 있는지 ○ 세부 산출내역이 근거에 의해 적정하게 제시 되었는지(운영자 및 강사 수당, 출연자 실비보상비의 적정성, 활동재료·홍보물·시설비의 적정성)

- (운영방법) 3월~12월 이내 분기별 배분 운영하되 특정기간 집중 운영 금지
- 분기별 배분 운영이 아닌 특정기간(2~3개월)만 운영 시, 익 년도 국고보조금 불이익 가능
 - *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 기간만 운영 시 반드시 여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말 중심의 정기 운영이 원칙이며, 시험기간·무더위·추위 등 계절 및 시기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운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국가적 재난(법정 감염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 방역 지침 준수

활동방법	주요 내용
대면	○ 정기 운영에 따른 무대와 음향, 조명 등 장비의 상설화 방안 강구 * 사전 소관 지자체의 승인 후 실시하며, 수련시설·체육관·광장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 ○ 우천 또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 경우 일부 실내 프로그램 운영 가능 ○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마스크 제공 및 실내행사 운영 등 자체 운영 대책 마련 ○ 국가적 재난(법정 감염병 등)의 경우, 참여 청소년, 운영기관 종사자, 기타 참가자 대상 위생관리 및 방역 철저
비대면	○ 대면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필요에 의해 비대면(온라인 등)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기준 ■

구 분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시·군·구 어울림마당
지원규모	개소당 71.25백만원(지방비 포함)	개소당 24백만원(지방비 포함)
운영횟수	연 8회 이상*	연 5회 이상
운영방법	대면·비대면	
운영기간	3월~12월	
운영기관	지자체별 자체 공모 선정	

* 코로나19를 포함하여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변경 가능

- (운영내용)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문화·예술·놀이체험의 장 상설 운영
 -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부터 운영, 평가에 참여하는 청소년 주도의 행사 운영
 - 지역사회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 세대별 참여 및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축제나 청소년 문화행사 등과 연계 운영
 - 청소년 문화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동아리의 공연 외에도 다양한 체험 활동(부스, 활동키트 등) 운영 권장
 - * 청소년동아리 공연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주제의 체험활동 운영 권장
 - 활동 분야별 동아리·관련 학과·관련 기관 등 연합 어울림마당 실시로 유사 분야 동아리 네트워크 강화
 - 모니터링 운영 및 관리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행사 운영 도모
- (연합 어울림마당)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합 어울림마당' 운영

〈 연합 어울림마당 운영 〉

(예시) 지역 내(시·도·시·군·구) 지역 외(시·도·시·도) 간 어울림마당, 찾아가는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분야별, 관련 학과 및 기관 등

- (비대면 어울림마당)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어울림마당'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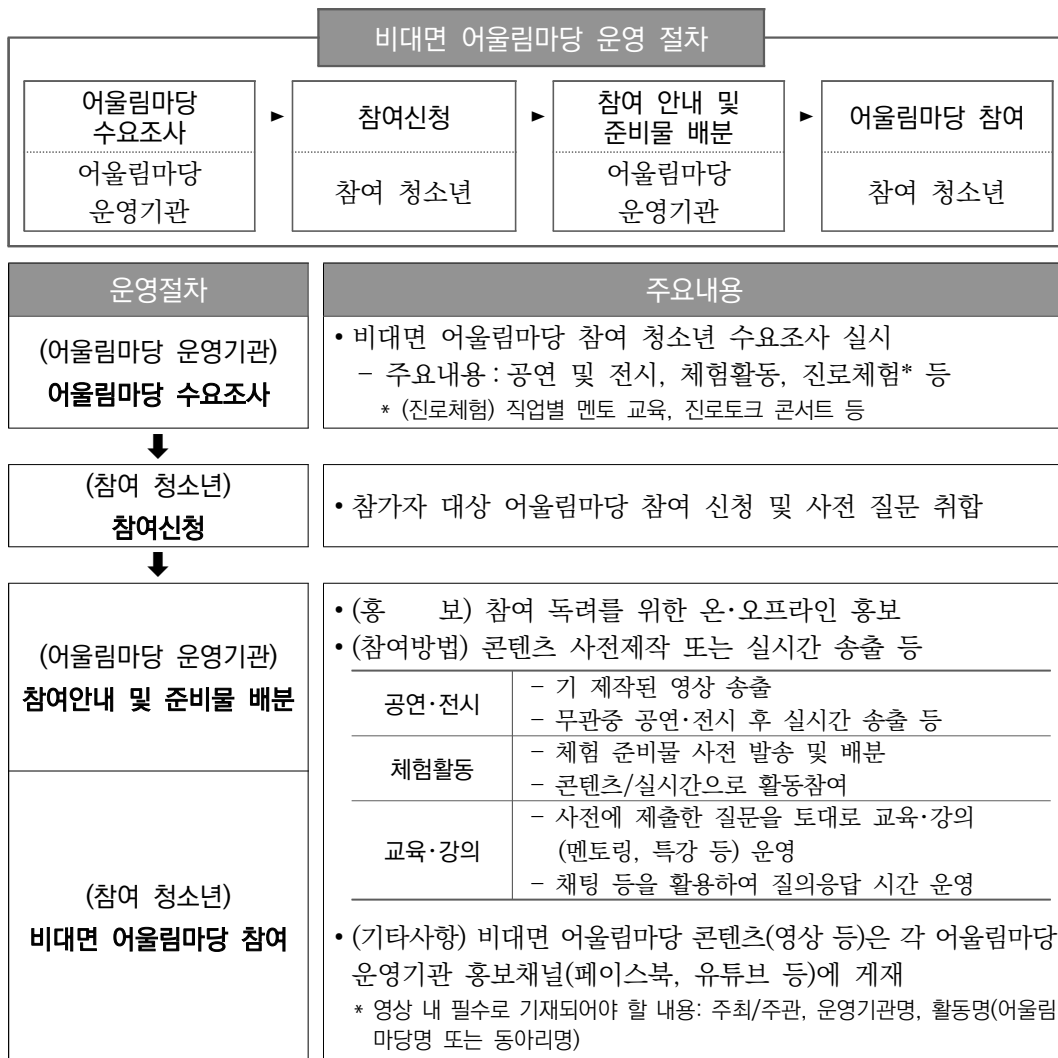
〈 비대면 어울림마당 운영 〉

(예시) 공연·전시, 체험활동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 체험활동 준비물(키트) 제작·배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송출 등

- (운영방법) 콘텐츠 제작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송출

구분	주요내용
공연·전시	(참여 동아리) 동아리 활동 영상 촬영 및 제작 (어울림마당 운영기관) 동아리별 영상 취합 및 SNS 게재
체험활동	(참여 동아리) 동아리 활동 영상 제작 및 체험 준비물 준비 (어울림마당 운영기관) 동아리별 영상 취합 및 SNS 게재, 체험 준비물 배부(드라이브스루(Drive-Thru), 스루(Walking-Thru))
교육·강의	(어울림마당 운영기관) 참여자 수요조사 및 신청, 운영 등

- (세부내용)



○ 운영 기준

- (활동인정) 청소년들의 비대면 활동 참여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활동(밴드, 카페 출석 확인 등) 증빙자료 구비 필요
- (예산사용) 비대면 활동(온라인 등)에 필요한 항목*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지자체 예산관리 기준과 지침 등을 근거로 하여 집행 가능
 - * (예시) 온라인 플랫폼 사용료, 체험활동 준비물 발송료 등
- (실적기준) 온라인 플랫폼 참여형((누적) 조회수), 활동키트형(배포수) 등

○ (어울림마당 운영주간) 전국 단위의 행사를 추진하여 어울림마당 인지도 제고를 위한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주간' 운영(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10월4주)

○ (진로체험 어울림마당)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체험 어울림마당' 운영

-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은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연 2회 이상 운영

〈 진로체험을 주제로 한 어울림마당 행사 운영 〉

예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부스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별 멘토교육, 진로박람회, 진로토크 콘서트, 직업인과의 만남, 대학(학과)탐색 및 상담 등 진로체험 활성화

○ (청소년기획단)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강화를 위해 어울림마당 청소년기획단을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 운영

마.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 운영

○ (목적)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어울림마당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全) 과정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주도의 참여활동 강화

- * 국정과제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연계
-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18~'2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관련 과제

○ (설치대상) 시·도 대표 및 시·군·구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기관

○ (구성인원) 청소년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으로 해당 지역 학교, 기관에 소속된 10~20명 내외 구성

■ 기획단 구성 예시(안) ■

구 분	역 할
단장	○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 대표로서 활동 ○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으로 행사 기획 및 운영 총괄
기획팀	○ 행사 기획 및 프로그램(안) 제안 등
운영지원팀	○ 어울림마당 행사 기획 제안 및 운영 지원 ○ 어울림마당 기획단 활동 평가
홍보팀	○ 어울림마당 행사 일정 공유 및 대외 홍보 지원 ○ SNS 등을 활용한 지역 내 네트워크 활성화

* 어울림마당에서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동아리·지역동아리연합회 대표 참여 권장

○ (역할) 어울림마당 행사 기획 및 운영 단계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 및 주도적으로 행사에 참여

○ (운영방법)

-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행사 기획, 운영, 홍보, 평가 등에 참여
- 청소년 지도자 1인을 배치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기획단 의견이 어울림마당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기관과 지역 행정 기관 등이 협력하여 추진 요망

바. 청소년어울림마당 모니터링단 운영

○ (운영 방향)

- 현장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파악·분석하고 제안하여 어울림마당 이용자에 대한 반응성 및 사업 신뢰성 제고
 - 즉시 개선하기 곤란한 근본적인 과제는 해결 기간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
- 광역지자체가 시·도 및 시·군·구 어울림마당 전체를 모니터링 하되, 운영기관을 별도로 선정하여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 어울림마당 각 수요자 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

- 모니터링 계획을 운영기관에 사전에 안내하여 마찰 최소화
- 모니터링 외에 사업운영 개선(전반적인 운영 등)을 위한 컨설팅 제공
 - * 상반기 모니터링 활동 중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하반기에 반영하도록 조치

○ (구성인원)

- 청소년어울림마당 각 수요자 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
 - * 주된 운영기관 담당자 1인(모니터링단장)과 청소년, 학부모, 자원봉사자, 청소년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
- 모니터링 시, 2명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진행(운영기관 담당자 포함)
 - * 모니터링 운영기관 담당자는 청소년어울림마당에 모니터링 결과송부 및 조치사항 반영 여부 확인 역할 부여
 - * 본 모니터링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
-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시·군·구 어울림마당 운영주체는 모니터링단 운영기관 선정 및 모니터링단에 참여할 수 없음
 - *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총 예산의 10% 이내에서 예산(모니터링 운영기관 별도 교부) 편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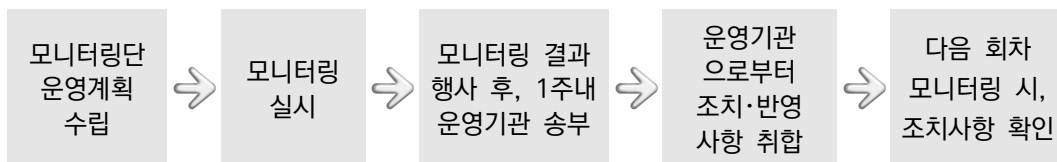
○ (운영내용)

■ 모니터링 운영기준 ■

구 분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시·군·구 어울림마당
운영횟수	4회*	2회
방법	현장 및 서면 모니터링(가능한 상·하반기 운영)	

- 프로그램, 지도자, 활동 장소, 홍보 등 분야별로 상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 * (프로그램) 내용 적절성 및 창의성, 기획·실행 단계 청소년 참여도, 참여 청소년 만족도 등 (지도자) 지도자 역할 및 배치, 안전관리 등 (활동장소) 장소선정 적절성, 무대/장비 적절성, 공간/설비 안전성 등 (홍보) 프로그램 홍보, 행사장 안내 및 홍보 등

○ 업무 내용 및 절차



* 각 지자체는 연말 매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구 분	현장 모니터링	서면 모니터링
공통	• 어울림마당 모니터링 활동조사표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운영기관은 어울림마당 운영기관에 결과 송부 및 확인	
-	• 정기회의 시 어울림마당 일정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모니터링 진행 전(최소 1주 전) 어울림마당 운영기관에 계획 안내 • 모니터링 후 1주일 이내 모니터링 활동 조사표 작성 완료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 어울림마당 운영기관이 모니터링 진행 전(최소 1주 전)에 모니터링 운영기관에 계획 안내 • 어울림마당 운영기관이 모니터링 활동 조사표를 활용하여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1주일 이내 모니터링 운영기관에 제출

○ (후속조치)

- 모니터링 운영결과 우수사례,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에 보고하고 조치사항을 확인 후 어울림마당 운영기관에 결과 공유
- 어울림마당 운영기관의 모니터링 조치사항 반영여부 확인
- 즉시 개선하기 곤란한 근본적인 과제는 해결기간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하도록 독려

사. 홍보 관리

○ 지자체별 자체 홍보

- 지자체별 자체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청소년 참여 증진 도모
- 홍보 시 여성가족부 지정 어울림마당임을 반드시 명기

○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정보 등록 의무화

- (필수 사항)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의 “청소년 활동” 코너에 해당 청소년어울림마당 일정 및 참여 신청 방법 게재(행사일 3주 전)를 통한 참여율 제고 및 내실화 도모

* 어울림마당 등록 방법[참고 1]

- (권고 사항) 시·도 및 시·군·구 별 어울림마당 홍보 SNS 페이지 운영

* 개최 일정, 참여 신청 방법, 활동 결과, 이벤트 등 수시로 업로드

○ 홍보매체 및 홍보방법 선정(예시)

홍보매체	홍보방법
지자체 소식지 등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단체 발행 소식지에 홍보 활동 ■ 홍보용 원고 작성 → 지자체 실무책임자에게 전달 → 소식지에 게재
학교 공문서 발송	■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한 홍보 활동 ■ 교육지원청에 협조 공문 → 각급 학교에 전달 → 학생에게 홍보
인터넷 및 메일링	■ 지역 내 공공기관 등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 시군구청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사이트 발굴
언론매체 활용	■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홍보용 원고 작성 → 홍보 요청 → 발행·방영 내용 확인 ■ 청소년들의 활동을 취재 보도할 수 있도록 요청
현수막 게시 등	■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 부스에 안내 팸플렛, 참가 신청서 등 비치 ■ 게시판 등 홍보시설물 관리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홍보 전개 ■ 지역 내 각종 홍보시설물 및 게시판 등을 활용, 현수막·포스터 등 게시
자체 기관 홍보	■ 기관 자체 발행 소식지 등에 관련 내용 반영 ■ 자체 시설 내외에 현수막 및 포스터 등 홍보 자료 게시

○ 홍보물 기관 표기 원칙

행사명 <2022년 ○○○시(도) 청소년어울림마당> ■ 주최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명/ 주관 : 운영기관명 ■ 홍보물 유형 : 안내문, 포스터, 책자, PPT, 현수막, 소식지, 신문 등 * 현수막 등 홍보물에 여성가족부 주최가 반드시 명기되도록 할 것
--

아. 평가

-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음
- 평가 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음
-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여 적발된 경우 향후 3년간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 운영 주체로 선정될 수 없음

- *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 비리를 행한 경우
- * 운영 방향이 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해를 끼치는 경우
- * 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1-3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가. 추진일정

연번	구 분	기한	비고
1	2022년도 운영지침 수립 및 통보	2022.1월	
2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	2022.1월	서식 1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22.2월	
4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및 모니터링 중간(상반기) 실적 보고서 제출	2022.7월	서식 2
5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023.1월	서식 3 서식 4
	- 운영기관 : <u>2023.1월 중순까지</u>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시·도 : <u>2023.1월 말까지</u> 지자체별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나. 협조사항

- 하반기 중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례 중 우수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기관, 청소년 어울림마당기획단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예정(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

* 세부계획 및 일정 별도 공지

가. 청소년동아리 개요

○ 개념

-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하여 형성되어 취미, 소질, 가치관,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치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활동하는 모임

○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특징

- 자치활동으로서의 특성 :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동아리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집단활동으로서의 특성 : 공통된 취미, 관심사를 가진 다수의 청소년이 집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
- 여가활동으로서의 특성 : 청소년 여가활동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취미·교양·기술 및 생활태도, 문화활동, 친교활동 등을 포함

나. 사업목적

- 청소년들이 자립적·종합적인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계발·체험하고 인성·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

다.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라. 추진경과

- 2002년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60개 청소년동아리 지원
- 2008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2,000개 동아리로 확대 지원
- 2017년 2,500개 동아리(개소당 1,250천원)로 확대 지원

가. 2022년 사업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
- 사업규모 : 1,250백만원(국비 40%)
 -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 : 1,250천원×40%×2,500개
 - 1개 동아리 당 연간 125만원(지방비 포함)이내 지원하되,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가능

○ 예산 사용

- 동아리별 연중 활동비로 지원 가능하며, 행사성 경비*로 사용 불가

* 동아리 대규모 축제성 행사의 경우, 어울림마당 사업을 활용할 것

(행사성 경비 예시)

청소년문화예술대회(○○팀) : 모듬북, 밴드, 댄스, 악기연주, 무술시범 등

청소년활동 체험관 (○○종) : 청소년동아리 박람회 운영

청소년활동·정책홍보관(○○종) : 유관기관 청소년정책사업 홍보, 체험부스 운영

* 예산 집행 계획 상 하나의 항목에 대한 지출이 보조금 총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으나, 동아리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지자체 협의 하에 초과 지출 가능

- 동아리개소 당 지원 단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변경 운영 가능

⇒ 지원 방안(예시) : 1개 동아리당 100만원씩 지원 후, 우수한 실적을 보인 동아리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

○ 청소년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동아리연합회 구성 및 활동 강화

- 10개 이상 동아리가 구성된 지자체(동아리 운영기관)의 경우 지역동아리연합회 구성·운영

* 10개 이상 동아리가 구성되지 않아도 지역 상황에 따라 연합회 구성·운영 가능

- 동아리 지원 사업 운영기관은 지역동아리연합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시·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연합회 활동지원·지도·관리·컨설팅 및 예산·행정사항 등 협의하여 사업 추진

나. 운영 방향

-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며,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을 위한 동아리활동 지원
 - 지역·분야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동아리, 전문기관과 연계한 ‘전문가 멘토형 동아리’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사고능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및 진로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별로 관내 지원 동아리를 선정하되, 공통 기준과 지자체 심사기준을 준수하여 지원·육성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 활동(온라인 등)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신설 동아리 및 신규 동아리 운영기관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교육, 컨설팅, 자료 공유 등을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하여 진행

다. 운영 주체

- 여성가족부
 - 사업 총괄·조정 및 운영지침 수립
 - 현장지도 점검, 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 운영 방향 개선
 -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우수 사례 발굴 및 시상(여성가족부 장관상 등)
- 지자체(시·도 / 시·군·구)
 -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자체 예산 확보
 - 지원 대상 동아리를 선정 및 사업 지침 수립·배포
 - 지자체 소속 동아리, 지역동아리연합회 현황 파악 및 총괄 관리
 - 동아리 담당 지도자, 동아리 대표 청소년 대상 예산 집행 교육 실시
 -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운영 실적 및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 평가, 점검 등을 통한 사업 운영 방향 개선 협조
- 동아리 운영기관
 - 연간 해당 동아리 운영계획 수립 및 동아리활동 지원
 - 지역동아리연합회 구성·운영
 - 지역동아리연합회 현황 자료를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공유
 - 자율적·체계적 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예산 집행 및 정산 결과보고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지역 내 지역동아리연합회 현황 파악 및 동아리연합회 활동 지원
- 청소년활동기관 간 네트워킹 발굴 및 연계 강화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동아리 담당자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지역 청소년자원 연계 및 동아리활동 사업 홍보 지원
- 청소년동아리활동 사업효과성 조사 지원
- 청소년동아리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라. 지원 동아리 선정

○ 선정 방법

- 지자체 별로 공통 기준 외, 별도 기준 설정 가능
- 청소년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선정심사위원회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시설·단체, 청소년관련학과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에 반드시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어울림마당 선정심사위원회와 공동 운영 가능)

○ 선정 기준

항 목	내 용
필수사항 * 해당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청소년(9~24세) 10명 내외로 구성 ◆ 연중 10회 이상(대면·비대면 등)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 동아리 지도자가 반드시 배치된 동아리 ◆ 다양한 동아리 지원을 위해 4개 분야 이상의 동아리 지원 반영 ◆ 구성 이후 6개월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동아리를 우선 선발 * 신규동아리 선정 시 인원수 또는 활동 경력이 미 충족 되더라도, 동아리 활성화 취지에 적합하고, 연간 활동목표 및 월별 활동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가능
권장사항	◆ 청소년동아리 선정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해 3월내 완료할 것 ◆ 청소년어울림마당과 연계하여 참가 가능한 동아리 우선 지원 ◆ 청소년 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기관 소속 동아리 및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학교 동아리 우선 지원 ◆ 청소년의 균형있는 역량 제고를 위하여, 대중 공연 동아리 등 특정 분야·대상에 편중되지 않도록 활동 분야를 고려하여 선정 ◆ 전년도 활동 결과, 지역별 특성화 등 고려하여 선정 ◆ 동아리연합회의 다양한 진로프로그램 참여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이용 연계 협의

항 목	내 용											
중점육성 동아리	〈중점육성 동아리 발굴 권장〉 ◆ 청소년 중점역량 역량강화를 위한 민주시민, 사회정서, 창의융합, 진로·직업(취업·창업 등) 역량개발 관련 동아리지원 * 지자체별 최소 20% 이상 중점동아리 육성											
	<table><tr><th>동아리 유형</th><th>활동 내용</th></tr><tr><td rowspan="3">사회참여 영역</td><td>민주시민(양성평등, 다문화, 다양성(인권) 존중 등) * (내용) 미래사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참여의식 체득을 위해 양성평등, 다문화 및 다양성(인권) 감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td></tr><tr><td>사회정서(감정코칭, 리더십 훈련, 스트레스해소, 심리, 대인관계증진) * (내용) 개인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과 긍정적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활동</td></tr><tr><td>봉사(교육봉사, 동물보호, 수화 등), 상담(학습 멘토링 등), 국제교류, 기자단, 리더십 훈련, 청소년보호, 캠페인(선행댓글 캠페인 등), 토론(시사 등)</td></tr><tr><td rowspan="2">4차 산업 혁명관련</td><td>창의융합(STEAM MAKER 등) * (내용)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 제고 및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이용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활동</td></tr><tr><td>AI(인공지능), IT(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창의로봇, 항공(드론 등), 정보통신기술</td></tr><tr><td>진로</td><td>바리스타, 미용(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직업탐색 및 직업준비를 위한 현장체험중심의 활동 * (내용)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등</td></tr></table>	동아리 유형	활동 내용	사회참여 영역	민주시민(양성평등, 다문화, 다양성(인권) 존중 등) * (내용) 미래사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참여의식 체득을 위해 양성평등, 다문화 및 다양성(인권) 감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사회정서(감정코칭, 리더십 훈련, 스트레스해소, 심리, 대인관계증진) * (내용) 개인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과 긍정적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활동	봉사(교육봉사, 동물보호, 수화 등), 상담(학습 멘토링 등), 국제교류, 기자단, 리더십 훈련, 청소년보호, 캠페인(선행댓글 캠페인 등), 토론(시사 등)	4차 산업 혁명관련	창의융합(STEAM MAKER 등) * (내용)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 제고 및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이용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활동	AI(인공지능), IT(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창의로봇, 항공(드론 등), 정보통신기술	진로	바리스타, 미용(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직업탐색 및 직업준비를 위한 현장체험중심의 활동 * (내용)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등
	동아리 유형	활동 내용										
	사회참여 영역	민주시민(양성평등, 다문화, 다양성(인권) 존중 등) * (내용) 미래사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참여의식 체득을 위해 양성평등, 다문화 및 다양성(인권) 감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사회정서(감정코칭, 리더십 훈련, 스트레스해소, 심리, 대인관계증진) * (내용) 개인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과 긍정적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활동										
봉사(교육봉사, 동물보호, 수화 등), 상담(학습 멘토링 등), 국제교류, 기자단, 리더십 훈련, 청소년보호, 캠페인(선행댓글 캠페인 등), 토론(시사 등)												
4차 산업 혁명관련	창의융합(STEAM MAKER 등) * (내용)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 제고 및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이용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활동											
	AI(인공지능), IT(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창의로봇, 항공(드론 등), 정보통신기술											
진로	바리스타, 미용(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직업탐색 및 직업준비를 위한 현장체험중심의 활동 * (내용)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등											
유의사항	◆ 1개 동아리 2개 분야 동시지원 금지 ◆ 타동아리 지원사업과 중복 시 지원 대상 제외 (반드시 지역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및 지원금 회수 ◆ 학원(「학원법」 제2조제1항) 등에 소속된 동아리는 지원 불가 ◆ 최근 2년 이내 동아리 지원 사업 운영 결과 지원 불가 통보된 동아리는 지원 대상 제외											
제출서류	① 청소년동아리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동아리 회원 현황 1부 ③ 동아리활동 연간 계획서 1부 ④ 동아리활동 보조금 예산 집행 계획서 1부 ⑤ 전년도 동아리활동 보고서(동아리활동 사진 포함) ⑥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⑦ 기타 동아리활동 증빙자료(상장사본, 자원봉사 확인서 사본 등 활동 증빙자료)											

○ 동아리 신청 시 아래 동아리 분류 기준표(15종)에 따라 신청

□ 동아리 분류 기준표

	대분류	소분류
1	사회 참여영역	민주시민(양성평등, 다문화, 다양성(인권) 존중 등) * (내용) 미래사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참여의식 체득을 위해 양성평등, 다문화 및 다양성(인권) 감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사회정서(감정코칭, 리더십 훈련, 스트레스해소, 심리, 대인관계증진) * (내용) 개인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과 긍정적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활동 봉사(교육봉사, 동물보호, 수화 등), 상담(학습 멘토링 등), 국제교류, 기자단, 리더십 훈련, 청소년보호, 캠페인(선행댓글 캠페인 등), 토론(시사 등), 기후변화
2	수리과학	환경, 발명, 생명과학, 지구과학, 기계전자, 디스플레이 제작, 화학, 수학, 수리과학 융합, 의학(간호, 응급처치), 건축
3	4차 산업 혁명관련	창의융합(STEAM MAKER 등) * (내용)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 제고 및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이용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활동 AI(인공지능), IT(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창의로봇, 항공(드론 등), 정보통신기술
4	인문사회	경제, 경영, 법, 정치(외교 등), 문예(문예 창작 등), 지리·국토
5	역사	나라사랑(독도 홍보 등), 문화재 발굴 및 홍보, 위안부관련 캠페인, 역사토론
6	미디어	뮤직비디오제작, 방송, 대중매체 제작, 신문제작
7	요리	식음료, 초콜릿, 제과제빵, 커피/와인, 디저트개발
8	스포츠	무예, 축구, 농구, 국궁, 족구, 태권도, 풋살, 클라이밍, 배구, 호신술, 마라톤
9	외국어	통역, 영어연극, 영자신문
10	진로	바리스타, 미용(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직업탐색 및 직업준비를 위한 현장체험 중심의 활동 * (내용)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등
11	기획	프로젝트 기획, 창업프로젝트, 봉사·축제기획, 홍보, 우리 마을 기획, 관광
12	취미	독서, 여행, 보드게임, 다도체험 등
13	비공연 문화예술	미술(벽화, 디자인), 만화(웹툰·일러스트포함), 공예체험(도예 등), 풍선, 페이스 페인팅, 사진, 코스프레, 컬러비즈·우드아트, 캘리그라피, 작사/작곡, 플래시몹
14	특이공연 문화예술	치어리딩, 오케스트라(타악, 관악 등), 사물놀이, 뮤지컬, 연극, 요들, 한국무용, 마술, 탈춤, 국악(가야금 등), 통기타, 우쿨렐레, 리코더합주, 아카펠라, 오카리나, 핸드벨, 하모니카
15	대중(공연) 문화예술	각종 댄스, 보컬, 밴드

○ 동아리 분류 기준표

분야별 기준	대상별 기준	특성별 기준
문화, 예술, 사회 참여(봉사), 과학, 역사, 인문, 스포츠, 요리, 외국어, 미디어, 진로 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근로·학교 밖 청소년	학교 활동 동아리, 자율적 활동(자생) 동아리, 청소년 기관·단체 활동 동아리

마. 지역동아리연합회 구성·운영

○ 목적 및 기능

-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체계적으로 지역 내 동아리활동 운영 및 관리
- 지역사회 내에서 동아리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건전한 지역 청소년 문화 양성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구성

- 동아리 운영기관에서 지역 상황에 따라 시도별, 시군구별, 동아리 유형별(15종)에 따른 지역동아리연합회 구성·운영
- 10개 이상* 동아리가 구성된 경우 지역동아리연합회 구성·운영
 -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받는 동아리의 대표 청소년으로 구성하며 지역 상황에 따라 구성·운영
- 연합회는 각 동아리의 청소년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1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 권장

○ 운영방법

-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하여 청소년동아리활동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등을 논의
- 동아리 운영기관은 동아리연합회 현황 정보에 대해 파악하고 원활한 연합회 활동을 위해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관련 자료를 공유할 것
- 동아리 연합 활동* 지원 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 * (예시) 발대식, 정기회의, 동아리 박람회, 동아리연합축제, 동아리활동결과발표회 등을 추진하되 지역내 자원을 활용하여 동아리활동 운영
 - * 동아리 운영기관과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도자간 협의체 구성 등 협조체계 구축
- 동아리 연합 활동 추진 시 청소년어울림마당과 연계하여 운영 권장
- 반기별 평가회의를 통한 동아리 연합 활동 평가 및 발전방안 논의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역할

- 동아리 운영기관과 연계 협조하여 지역동아리연합회 활동* 지원
 - * 동아리연합 활동·워크숍·발표회·어울림마당 연계 활동 지원 및 지역동아리연합회 활동 홍보, 지역 자원 발굴·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동아리 연합 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직업 정보 획득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멘토링 지원 가능

- 지역동아리연합회 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반기별 보고
 - * 반기별로 활동 결과보고서를 시·도 지자체에 제출
- 지역 내 동아리활동 홍보 진행 및 강화

바. 동아리 운영 방안

○ 운영 내용

- 원활한 동아리활동을 위하여 수련시설, 학교 교실 등 일정한 공간 확보하여 연 10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 전개
- 활동 분야: 문화·예술, 학습·진로, 전통·역사, 자원봉사, 스포츠 등 청소년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분야

○ 운영 체계

구 분	역 할
여성가족부	- (종합계획 수립) 동아리지원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동아리 육성 지원 - (우수 동아리 시상) 2022년도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동아리를 선정하여 시상(여성가족부 장관상 등)
지자체 동아리 운영기관	- (현황관리) 동아리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현황 파악 및 관리 - (예산집행 교육) 동아리 담당 지도자, 동아리대표(청소년) 대상 예산 집행 교육 실시 - (협조사항) 동아리지원사업과 관련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 및 협조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	- (총괄지원) 전국 동아리 및 지역동아리연합 현황 파악 및 동아리사업 컨설팅 등 총괄지원,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지역동아리연합회 사업 지원 및 관리 - (청소년활동 운영지원단)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등 청소년활동 관련 네트워킹 발굴 및 연계 강화

구 분	역 할
시·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 (동아리연합회 지원) 지역동아리연합회 활동 지원·관리·컨설팅 지원 - (역할) 지역동아리연합회 워크숍·발표회 지원, 어울림마당 연계 활동 지원, 지역동아리연합회 활동 홍보, 지역 자원 발굴·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동아리 지도자	- (민주적 동아리 운영) 동아리 구성원들 간 수평적·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청소년 중심으로 민주적인 운영 노력 - (정보 제공 및 조언)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시설, 인력 등 지역사회 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구축
지역 동아리 연합회	- (연합 활동) 정기·수시회의 개최 및 박람회, 축제 등 동아리연합 활동 전개 - (모니터링) 소속 동아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아. 평가

-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는 청소년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점검 및 평가할 수 있음
- 청소년동아리활동 사업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여 적발된 경우 향후3년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 비리를 행한 경우
- * 운영 방향이 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해를 끼치는 경우
- * 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2-3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 추진일정

연번	구 분	기 한	비 고
1	2022년도 운영지침 수립 및 통보	2022.1월	
2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	2022.1월	서식 1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22.2월	
4	2022년 청소년동아리 및 지역동아리연합회 현황 제출	2022.2월	서식 1
5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시·도 : <u>2023.1월말까지</u> 지자체별 여성가족부에 제출	2023.1월	서식 3 서식 4

○ 하반기 중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례 중 우수 동아리·지역동아리연합회·우수 활동 등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예정

* 세부계획 및 일정 별도 공지

본 안전사고 관리 지침은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운영기관의 참고용으로 운영기관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요망
(* 코로나19를 포함하여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의 방역 지침 준수)

1. 사고예방 단계

1)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 고려 및 확인사항

- 참여 청소년의 연령, 성별, 지역, 장애여부 등의 조건 고려
- 활동프로그램의 유형, 특성, 장소 및 지역, 화학물질 사용, 전문지도자 배치 등 여부
 - * 활동특성별 응급처치가 가능한 지도인력 배치
- 비상연락체계 및 지도자 역할 배치, 보험가입 여부 및 1인당 보장내역
- 참여청소년 및 지도자 등 모든 대상에 대한 사전교육

사전교육	- 발생 가능 사고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 비상시 대피로 및 인솔교사 - 안전수칙 및 그 외 활동내용에 따른 추가교육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위생안전 예방 교육
------	---

- 자체점검 실시 계획: 장소, 안전점검, 안전장비 비치여부, 안전요원 배치여부 등

○ 활동 실시 전 활동장소 및 지역상황(재난정보 등) 정보 확인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안전관련어플: 안전디딤돌(안드로이드·아이폰)
 - 사고신고, 긴급전화, 위기처치방법, 위기상황 대처요령, 재난상황 등 탑재

○ 참고기관

-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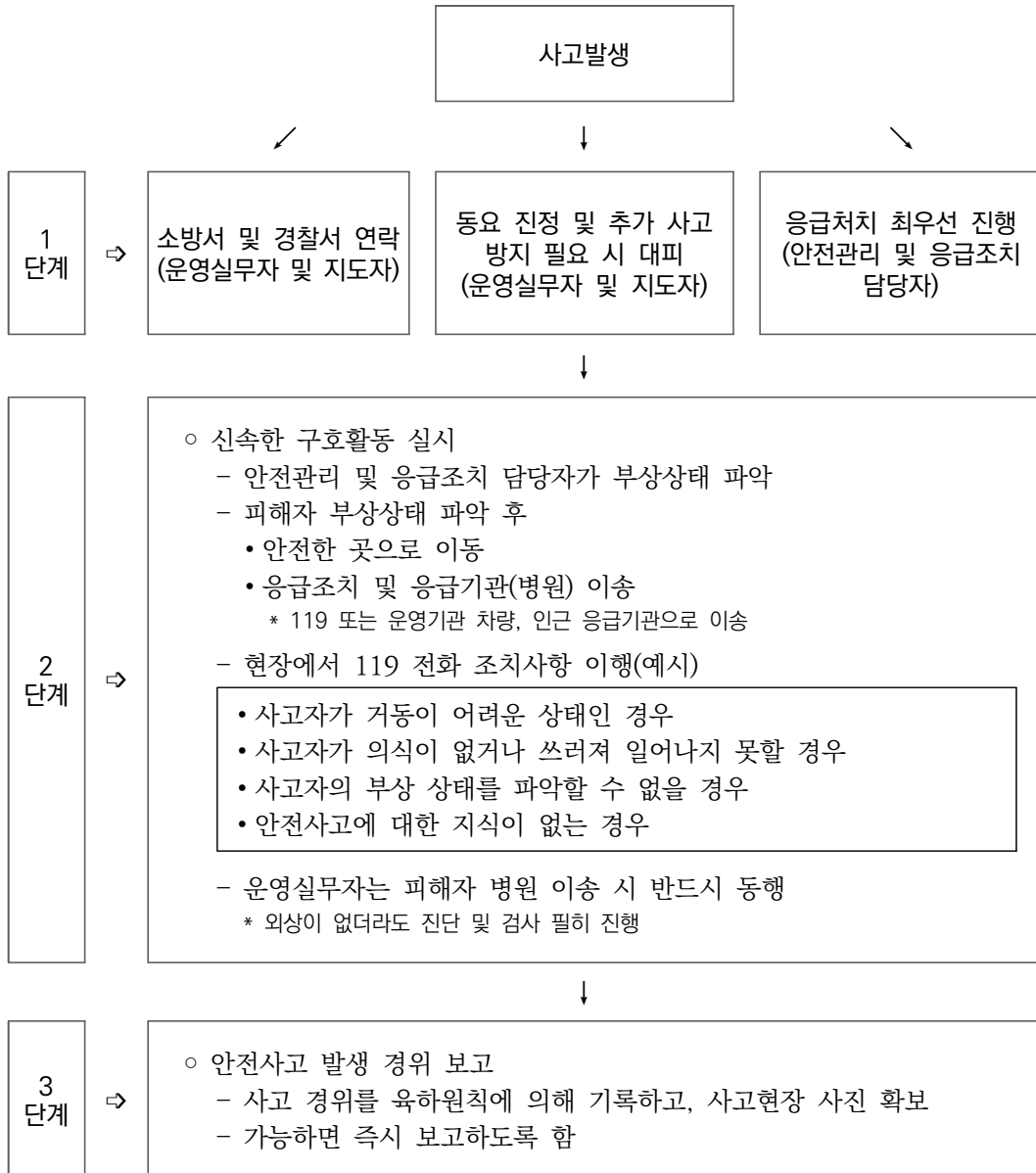
○ 활동장, 구조물 등 관리운영매뉴얼

- 위험장소에 위험표지물 등 설치여부
- 위생안전관리 사항
-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요원(긴급구조요원) 배치 여부

2. 안전사고 발생

1) 대응요령

- 안전관리 계획에 의해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함
- 대응요령(예시)



3.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보고 판단 기준

- 1) 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보고
- 2) 안전사고 경·중에 따라 선 조치 후 보고와 즉시 보고로 구분하여 보고

구 분	예 시
선 조치 후 보고 (1일 이내)	- 어울림마당·동아리 실내·외 활동 중 상해로 인한 통원 치료 - 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외 운영기관의 경미한 안전사고
즉시 보고 (내부보고 시 동시 보고)	- 어울림마당·동아리 실내·외 활동 중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 등 중대한 안전사고 -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한 중앙 차원의 대응 필요 시 - 사망사고 및 대규모 피해 발생 - 활동 참여청소년 실종 및 유괴 - 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외 운영기관의 중대한 안전사고

4. 보고체계

- (선 조치 후 보고) 비상연락망에 따른 기관 내부 보고
(예 : 운영실무자 → 팀장(부장) → 기관장 → 지자체* → 여가부)
- (즉시 보고)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보고
(예 : 운영실무자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안전점검표(안) ■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부적합 내용
안전관리 체계 및 교육	1	[안전사고 예방교육] ○ 시설이용·활동에 관한 운영자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2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3	○ 사고발생시 대응방법 안내 •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및 신속 보고			
	4	[안전사고 예방관리] ○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5	○ 시설의 이용 방법, 소화기의 위치,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 확인			
	6	○ 행사보험 가입 여부			
	7	[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 ○ 사고 발생 시 대응보고체계 매뉴얼 구비 여부			
	8	○ 응급상황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 유무			
위생·유행성 전염병 교육 및 관리	9	[위생안전 예방교육] ○ 시설이용·활동에 관한 운영자 및 행사 참여자에게 위생 및 전염병 예방법 등의 위생관리 교육 실시 여부			
	10	[위생안전 예방관리] ○ 체험활동 및 간식 제공 시 음식물 유통기한 확인 및 위생상태 점검 여부			
	11	○ 외부 식당 이용 시 사업자등록증 및 위생상태 점검 및 확인			
	12	○ 위생관련 물품 구비 및 비치 여부 - 비누, 손세정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마스크 등 운영기관 여건에 맞게 구비·비치			
	13	○ 활동장 청결 및 소독 유지 관리 여부 - 운영기관, 활동장, 식사 장소 등			

□ 예산편성 지침과 회계 관리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

-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시달되는 정부의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사업계획 수립
- 일반적인 국가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처리 기준 작성
- 지자체의 예산관리 기준과 지침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실행 계획 작성

※ 집행원칙

-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사업예산 편성 지출
- e나라도움(gosims.go.kr)을 통한 국고보조금 예산 교부, 집행, 정산 실시
 - * 국고보조금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e나라도움 문의(1670-9595)
- 예산 편성 항목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 단, 사업비 항목 내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예산 변경 필요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변경 집행 가능
 - * 당초 계획 대비 경미한 예산변경 사항은 '기관 내부 회계기준'에 준용하여 기관장 승인 하에 가능
- 사업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하고, 필요시 추가 소요재원은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에서 부담 가능
- 지자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하며, 국가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해야 함

□ 회계 업무 투명성 제고

- 예산의 집행방법은 카드 결제,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사용,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명확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
 - * 현지 여건상 현금 지급 방식이 불가피한 경우는 인정하되 영수 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절대 불가
- 예산 지출에 수반되는 사업계획서(원인행위/지출품의서),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각종 서류를 완결성 있게 정리 보관
- 사업 예산 정산 시 보조금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정산에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제출

□ 예산 처리 요령

- 예산처리 및 정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름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비법인인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운영기관 수준에서 예산 관리
 - 통장은 e나라도움과 연동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및 관리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하여, 0원인 상태의 통장으로 사용할 것
- 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금융기관 부재 등)
-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발급
- 보조금은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
 - 보조 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하여야 함(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기한 내 미 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 사업 확정 통보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존 불가
 - 국비 보조금은 사업 확정 통보일로부터 집행가능하며 사업 확정 통보일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위반 시 환수)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의 항목은 보조금 지출 불가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기관의 일반 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서(예산서)에 의하여 보조금 집행
 - 예산 과목 운영비의 세목 내 예산변경, 금액 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사업 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11.30 이후 변경 승인 불가)

〈동아리 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행 협약서(안)〉

우리 단체(동아리)는 지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여성가족부/○○○시에서 지원하고 ○○○○○에서 수행하는 ○○○○시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단체의 모든 구성원 및 대표자는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지원, 결산에 이르기까지 다음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어떠한 부정행위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보조사업비를 정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증빙서류의 제출은 물론, 정산 기한 준수, 집행 잔액과 수익금 등 반납 대상에 대한 성실한 정산의무를 다 하겠으며 특히,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횡령이나 유용 등 부당 집행 사항과 반납 대상의 불이행시에는 어떠한 사업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3. 보조사업비 수행과 관련한 집행 서류는 정산서류 제출 시까지 보관하며, 대표자 및 담당자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철저한 인수, 인계는 물론 위 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운영기관)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사업의 처분을 수용하며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의견	의견
----	----

소속 및 동아리명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동아리 운영기관명) 귀하

☐ e청소년 사이트(www.youth.go.kr) 연계 어울림마당 홍보

○ 운영기관 연락처 및 참여 신청 방법 안내를 통한 정보 접근성 향상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HOW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또는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운영기관 대표어울림마당 사이트 17개, 시군구어울림마당 110개 운영기간 9월~12월까지 주말운영의 참가 운영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확대와 축소, 휴업 등 운영의 상충할 방안을 강구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연 10회 이상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연 5회 이상 시·군·구 어울림마당 연 5회 이상 하·동절기, 시정기간 등 계절 및 사회적 유인 등을 감안하여 운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유인 또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 경우 일부 일대프로그램 운영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운영참조</th><th>시·군·구 어울림마당 운영참조</th></tr> </thead> <tbody> <tr> <td>운영횟수</td><td>연 10회 이상</td><td>연 5회 이상</td></tr> <tr> <td>운영참조</td><td>가 신청 참조</td><td>가 신청 참조</td></tr> <tr> <td>운영기간</td><td>9월 ~ 12월</td><td></td></tr> <tr> <td>운영기관</td><td>지자체별로 3개 내로 선정</td><td></td></tr> <tr> <td>지원규모</td><td>개소당 70억(한시지원) (후발)</td><td>개소당 24억(한시지원) (후발)</td></tr> </tbody> </table> 한국 어울림마당 프로그램 보기 → ■ 청소년어울림마당 연락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2019년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운영기관</th><th colspan="2">지자체 담당부서</th></tr> </thead> <tbody> <tr> <td>지역</td><td>기관명</td><td>운영참조</td><td>운영기간</td></tr> <tr> <td>서울</td><td>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관</td><td>서울시 진여 동</td><td>19.5 ~ 19.11 (10월)</td></tr> <tr> <td></td><td></td><td></td><td>서울 50, 50개</td></tr> </tbody> </table>	구분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운영참조	시·군·구 어울림마당 운영참조	운영횟수	연 10회 이상	연 5회 이상	운영참조	가 신청 참조	가 신청 참조	운영기간	9월 ~ 12월		운영기관	지자체별로 3개 내로 선정		지원규모	개소당 70억(한시지원) (후발)	개소당 24억(한시지원) (후발)	2019년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운영기관		지자체 담당부서		지역	기관명	운영참조	운영기간	서울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관	서울시 진여 동	19.5 ~ 19.11 (10월)				서울 50, 50개	– 청소년활동사업 안내 페이지 중 어울림마당 부분에 시·도 대표 및 시·군·구 어울림마당 운영기관 연락처가 모두 업로드 되도록 조치 – 시·군·구 어울림마당 운영기관 연락처 탭 구성
구분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운영참조	시·군·구 어울림마당 운영참조																																	
운영횟수	연 10회 이상	연 5회 이상																																	
운영참조	가 신청 참조	가 신청 참조																																	
운영기간	9월 ~ 12월																																		
운영기관	지자체별로 3개 내로 선정																																		
지원규모	개소당 70억(한시지원) (후발)	개소당 24억(한시지원) (후발)																																	
2019년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운영기관		지자체 담당부서																																	
지역	기관명	운영참조	운영기간																																
서울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관	서울시 진여 동	19.5 ~ 19.11 (10월)																																
			서울 50, 50개																																
청소년활동 찾기 청소년활동 찾기 청소년활동 찾기 자유학기제 활동 찾기 청소년자원봉사 David 국제청소년문화교류사업 청소년자기지도교류사업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정책참여 청소년발과후아카데미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어울림동아리지원사업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 찾기 ■ 인증프로그램 인증번호 입력 ■ 신고프로그램 신고번호 입력 활동영역 ☒ 전체 ☐ 건강스포츠 ☐ 모험개척 ☐ 역사탐방 ☐ 환경보존 ☐ 봉사협력 ☐ 교호 ☐ 과학정보 ☐ 진로탐구 ☐ 자기개발 ☐ 문화예술 ☐ 기타 검색어: '어울림마당' 검색어: '어울림마당' ■ 추가검색 ■ 찾기 ■ 초기화 등록순 인가순 기원순 활동일순 마감일순 ■ 문화예술 청소년어울림마당 상상놀이! 11 Youth+ 50 ▶ 활동일: 2019-11-30 ▶ 지역: 경기도 파주시 ▶ 모집기간: 모집마감 ▶ 인원: 1000명 ▶ 참가비: 무료 ▶ 연령: 10세 이상 ▶ 등록일: 2019-11-15																																		
청소년활동 찾기 청소년활동 찾기 자유학기제 활동 찾기 청소년자원봉사 David 국제청소년문화교류사업 청소년자기지도교류사업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정책참여 청소년발과후아카데미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어울림동아리지원사업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 찾기 ○ [문화예술] 2019년 대구광역시 대표어울림마당 9월 'Fall in Dream' 운영 [컬러플렉스팀] ■ 문화예술 ▶ 분야: 일반 ▶ 인원: 600명 ▶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 참가비: 무료 ▶ 활동일: 2019-09-08 ~ 08 ▶ 모집기간: 상시모집 ▶ 참가대상: 개방모집 ▶ 담당부서: 문화팀 ▶ 인증번호: - ▶ 신고번호: - ▶ 인증유무기간: - ▶ 속여버리: - ▶ 문의처: - ▶ 문의처: 대구청소년지원재단 ▶ 전화번호: 053699215 ▶ 담당자: 이은미 ▶ 담당이메일: www@idream.com ▶ 관련사이트: http://www.daguyouth.net/ ▶ 팩스번호: 053-659-4239 ※ 해당 정보는 운영기관에서 직접 등록하였으며 문의 및 신청은 기관전화번호를 참고하세요. ■ 추가검색 ■ 기간검색 ■ 활동일검색																																		

○ 청소년어울림마당 프로그램 등록 방법 안내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청소년활동 청소년 지킴이 활동기관 안내 수련시설평가 e청소년 안내

청소년활동을 검색하세요

전체메뉴

인증수련활동을 운영할 때에는 KYWA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사용하세요.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및 보장범위 확대안내

보장기간: 2019. 8. 13. ~ 2020. 8. 12.

DOVOL(자원봉사)

봉사활동 찾기 재능나눔 등록/찾기

자유학기제 연계활동 지역별 공공기관·수련시설의 연계 활동

인증수련활동 찾기 안전하고 유익한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해보아요?

1365연계 봉사활동 실적율 1365 연계 후 생활기록부 전송

인증수련활동 참가여부 확인 일정, 참가단체명, 활동명, 인원 등 계약사항 확인

나의 활동 확인서 내가 참여한 청소년활동사업 한눈에

최근 등록된 체험활동

청소년

전체관람가 신동청소년아동장애복지센터 033-378-1388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너나...'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031-376-6283

댄스컬 최종 평가 캠프 만안청소년문화의집 031-443-5774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통놀이 "별..." 안동시청소년수련관 054-850-4620

내마음속 "그림책" 남원시청소년수련관 020-5474-0208

– 접속URL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업무지원서비스

– 메뉴경로 : 로그인 후 [업무지원서비스] 탭 클릭

[신고/인증/일반활동] - [활동프로그램 관리] - [활동 등록/관리]

※ 등록 전 시설단체 등록 및 담당자 승인 필수



신고/인증/일반활동

수련활동 신고 >

수련활동 인증 >

활동프로그램 관리 >

활동 등록/관리 >

공지사항 >

활동 등록/관리

신고/인증/일반활동 > 활동프로그램 관리 > 활동 등록/관리

분류 ① ☒ 일반(전체)활동 ☐ 방학영 활동 ☐ 수능 후 활동 ☐ 자치 활동 ☐ 동아리 활동

영역 ② 전체

참가대상 ④ 전체

지역 전체 전체

가격 전체

활동명 ③ 2019 00시(도) 청소년어울림마당

연령 전체

숙박형태 당일형 숙박형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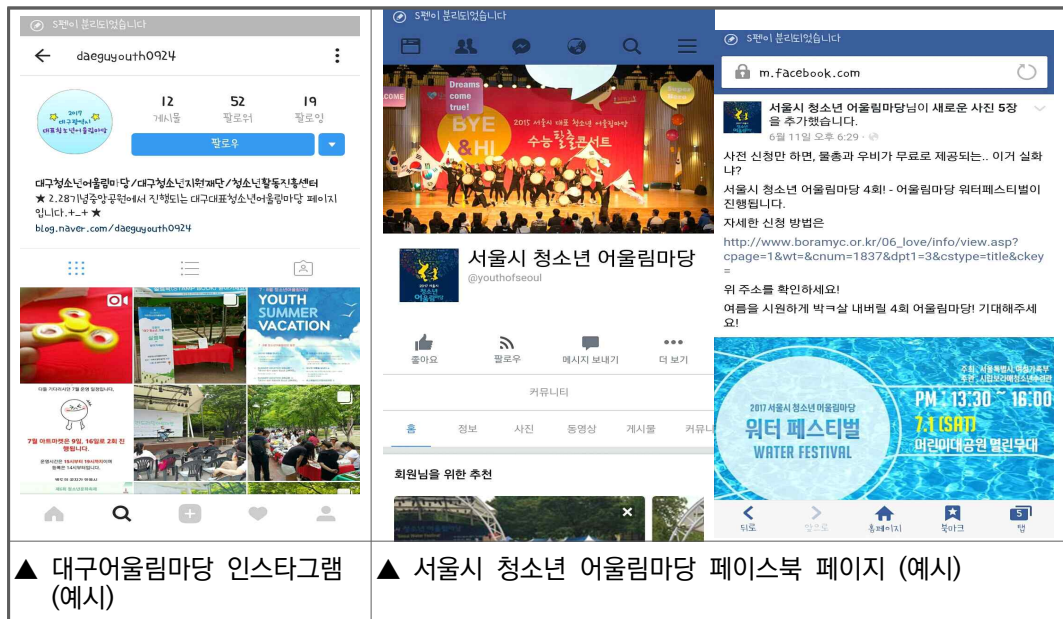
등록일자

⑤ ★활동프로그램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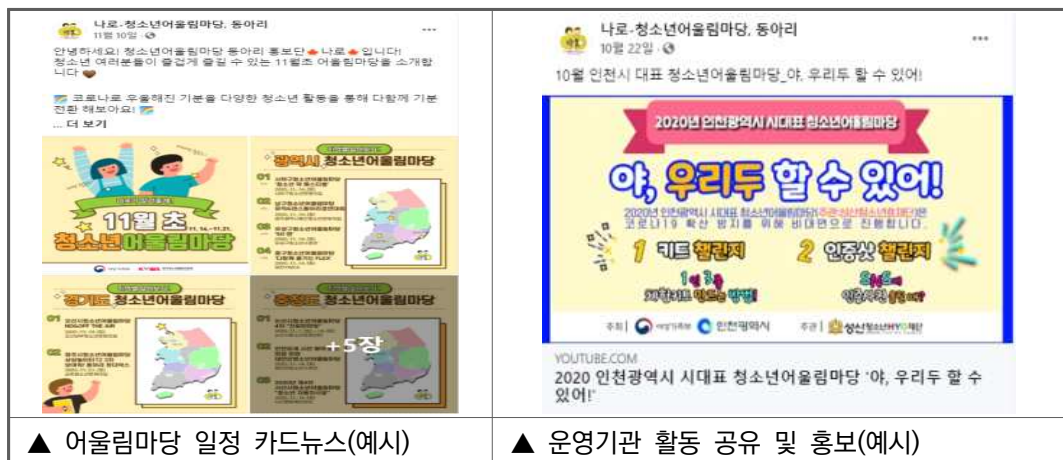
- ① 분류 : 일반(전체)활동
- ② 영역 : 어울림마당 주제에 해당되는 영역 선택
- ③ 활동명 : 2022년 ○○시 청소년어울림마당 ‘주제명’
★ 활동명에 ‘청소년어울림마당’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청소년어울림마당으로 활동 검색 가능
- ④ 참가대상/연령/지역/숙박형태/가격/등록일자 : 각 어울림마당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선택
- ⑤ 활동프로그램 등록 누르면 완료

□ 대표 SNS 계정 이용한 홍보 시행

- 여성가족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대한민국 청소년) 활용
 - * 청소년, 지도자 및 학부모 등 7만여 명에게 월 1회 메시지 발송
- 특색 있는 지자체 어울림마당 안내, 우수 동아리 경진대회를 대국민 이벤트와 연계,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안내 등에 활용
-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SNS 계정 생성 및 관리 권고



○ 공식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홍보(나로) SNS 활용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관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 신청액	일 금 원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고	지방비	
				시·도	시·군·구
	계				
	대표 어울림마당				
	시·군·구 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사업 개요	○ 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간략히 작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0년 월 일 시·도지사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붙임 : 1. 총괄표 2. 사업계획서 3. 운영 현황					

자치단체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천원(국고	천원 / 지방비	천원)
횟수/인원		장 소	
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방법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추진계획(아래 내용 반드시 반영) - 프로그램 운영계획, 참여인원계획 * 어울림마당은 모니터링활동조사단 구성여부 및 운영횟수, 만족도(%) - 홍보계획 등 - 기타 ○ 세부추진일정		
기대효과			
홍보방안			
예산편성			

□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정현황

구분	지역 (시군구)	운영기관 (위탁기관)	장소	운영기간	운영계획 횟수	세부내용	예산		
							계	국고	지방비
대표 어울림마당									
시군구 어울림마당									

□ 청소년동아리 운영 현황

지역 (시·도)	지역 (시군구)	동아리 명	운영기관 (위탁기관)	소속 기관명	활동 부문	창립일		인원수							예산		
						년	월	계	초	중	고	대	기타	계	국고	지방비	

□ 시·도 명 :

□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실적

○ 대표어울림마당 운영실적

운영일	어울림마당 사업내용	운영기관	참가인원 (연인원, 명)

○ 시·군·구 어울림마당 운영실적

- 시·군·구 1

운영일	어울림마당 사업내용	운영기관	참가인원 (연인원, 명)

- 시·군·구 2, 3, 4....

운영일	어울림마당 사업내용	운영기관	참가인원 (연인원, 명)

□ 청소년어울림마당 모니터링 활동조사표[대면]

청소년어울림마당 모니터링활동 총괄표 (A면)	
청소년어울림마당명	
모니터링활동조사단	(운영기관명) ○○○,○○○,○○○
행 사 개 요	
행 사 일 시	년 월 일(요일) 시 ~ 시
행 사 장 소	
참 가 인 원	명 정도
주요프로그램	
종 합 의 건	
잘 된 점	지도자 및 청소년 의견 작성
문제점 (어려운점)	
개선사안 및 반영여부	즉시, 장기 개선사안에 대해 작성 전 회기 개선사안에 대한 반영여부 작성
총 평	

청소년어울림마당 모니터링활동 세부조사표 (B면)			
어울림마당명		일자	
청소년 참여	청소년관객(수)	약 명	
	일반참가자(수)	약 명	
	만족도조사(수)	00명(공연 00명, 체험부스 운영 00명, 기타참여 00명)	
항목	세부항목	만족도(5점 척도) ※평균점수기재	모니터링 내용
프로 그램	계획대로 사업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가?		
	청소년의 흥미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가?		
	프로그램 내 성차별적 언행을 포함한 성희롱 또는 다른 인권 침해적 언행이 있었는가? * 성희롱 : 성적 언어, 행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지도자	어울림마당의 청소년지도자 및 진행요원의 배치와 안내는 적절했는가?	
청소년	참여하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어울림마당 행사에 참여하는가?		
	어울림마당을 다른 친구들(제3자, 타인) 에게 추천할 의향 있는가?		
활동 장소	어울림마당 개최 장소는 적절한가?		
	어울림마당 공연시설 및 행사준비실 등 설비는 적절한가?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영되었는가?		
홍보	어울림마당 홍보방법은 다양한 방법 및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가? (e청소년, 홍보물 등)		
인터뷰	대 상 구 분	인 원	내 용
	청소년(프로그램제공자)		
	관객청소년		
	지도자		
	기타		
어울림마당 관련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청소년어울림마당 모니터링 활동조사표[비대면]

청소년어울림마당 모니터링활동 총괄표 (A면)	
청소년어울림마당명	
모니터링활동조사단	(운영기관명) ○○○,○○○,○○○
행 사 개 요	
행 사 일 시	년 월 일(요일) 시 ~ 시
운 영 방 법	
참 가 인 원	누적 조회 수 건(종료시간 기준) / 물품(키트 등) 배포 인원 명
주요프로그램	
종 합 의 건	
잘 된 점	지도자 및 청소년 의견 작성
문제점 (어려운점)	
개선사안 및 반영여부	즉시, 장기 개선사안에 대해 작성 전 회기 개선사안에 대한 반영여부 작성
총 평	

청소년어울림마당 모니터링활동 세부조사표 (B면)			
어울림마당명		일자	
항목	세부항목	만족도(5점 척도) ※평균점수기재	모니터링 내용
프로그램	계획대로 사업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가?		
	청소년의 흥미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가?		
	프로그램 내 성차별적 언행을 포함한 성희롱 또는 다른 인권 침해적 언행이 있었는가? * 성희롱 : 성적 언어, 행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지도자	욕설, 비방 등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였는가?		
청소년	참여하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어울림마당 행사에 참여하는가?		
	어울림마당을 다른 친구들(제3자,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 있는가?		
활동 접근성	어울림마당 운영매체는 원활하게 운영되었는가?		
	어울림마당에 참여하거나 접속하는 방법은 쉬웠는가?		
홍보	어울림마당 홍보방법은 다양한 방법 및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가? (e청소년, 홍보물 등)		
청소년 참여	누적 조회 수(종료시점 기준)	명	
	참여 인원 수(키트 배포 등)	명	
참여자 호응	특정 댓글 또는 전반적인 소통 창구 분위기		
어울림마당 관련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시·도 명 :

□ 보조금 정산결과

○ 총 괄 표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반납금액		
			합계	집행잔액	발생이자
국고					
지방비					
계					

○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반납금액		
			합계	집행잔액	발생이자
총 계					
청소년어울림마당					
국고					
지방비					
청소년동아리					
국고					
지방비					

위와 같이 2021년도 청소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시·도지사(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1. 사업개요

2. 사업결과

□ 사업결과

○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 결과

- 추진개요

- 목 적 :
- 사업기간 :
- 추진 현황

구 분	어울림마당 사업내용	운영기관	운영횟수	프로그램 운영횟수	참가인원 (연인원, 명)	활동사진
합계						
시·도명						
시·군·구 명						
시·군·구 명						

* 어울림마당 행사 개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수막 등 활동사진 첨부 요망

- 청소년어울림마당 모니터링활동 결과

지 역	상반기				하반기				활동사진
	프로 그램	지도자	활동 공간	홍보	프로 그램	지도자	활동 공간	홍보	
평균점수									
시·도명									
시·군·구명									

* 어울림마당 행사 개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수막 등 활동사진 첨부 요망

○ 청소년동아리 사업 결과

– 추진개요

- 목 적 :
- 사업기간 :
- 추진 현황

지역	총괄 운영기관	동아리수 (개)	참가인원 (명)	어울림 마당 활동횟수	연간 활동횟수	동아리활동 내용	활동 사진
계							
시·도명							
시·군·구명							

* 청소년동아리 활동사진 첨부 요망

○ 지역동아리연합회 활동결과

– 추진개요

- 목 적 :
- 사업기간 :
- 추진 현황

지역	총괄 운영기관	동아리수 (개)	참가인원 (명)	연합회 활동횟수	연합회 활동내용	활동사진
계						
시·도명						
시·군·구명						

* 청소년동아리 활동사진 첨부 요망

☐ 관리부서 : ○○○청소년수련시설/단체/학교 ○○○부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이름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증빙서류 발급 시까지 활용, 영구보관
소속, 이메일, 연락처, 주소	공지사항, 관련자료 발송, 서비스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위 제공사항은 청소년동아리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각종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년 월 일

성 명 : (인)

○○○○청소년수련시설/단체/학교장 귀하

청소년동아리사업 지원신청서(예시)

동아리 명					
창립일			회원수		
대표청소년	성명		지도자	성명	
	연락처			연락처	
카페주소			E-mail		
분야			소속		
학교동아리와 중복지원여부 (○, × 체크)	학교동아리와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 ○, × 체크				
동아리 소개					
활동목적 · 활동내용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3가지 이상)					
위와 같이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아리 대표 : (인) 동아리 지도자 : (인) ○○시도 귀하					

동아리명		
구 성 일	20 년 월 일	
구성목적		
지 난 활동경력 (수상내역 등)		
월별 활동계획	월	활동계획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서식 8

청소년동아리 관리카드(예시)

동아리명		소 속	
활동분야			
창립일자			
활동목적			
회 원 수			
대 표 자	이 름		
	연 락 처		
	이 메 일		
지 도 자	이 름		
	연 락 처		
	이 메 일		
동아리소개 (구체적으로 (회원현황포함))			
2022년 활동 계획 (구체적으로)			
동아리의무사항	▷ 청소년 동아리관련 행사참여(발대식, 동아리 공연, 교육 등)		
기관명			

동아리 명					
대표청소년	성명		지도자	성명	
	연락처			연락처	
분 야			소 속		
동아리 소개					
참가 목적 및 연합회 활동 계획					

위와 같이 지역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아리 대 표 : (인)

동아리 지도자 : (인)

〇〇시·도/시·군·구 귀하

서식 10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기관 선정 기준(예시)

기준	배점	항 목	비고
합계	100		
기관의 업무 능력 (40)	10	• 기관의 구성 및 운영이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지역의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는가?	
	15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는가?	
	10	• 담당 실무자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 여부 등)	
	5	• 어울림마당을 운영·관리할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었는가?	
사업 내용의 적절성 (40)	10	• 지역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10	• 어울림마당 공간이 지속적으로 운영 및 개발·유지될 수 있는가?	
	10	• 어울림마당 운영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홍보, 청소년참여 등)	
	10	• 청소년 안전 대책이 적절하게 구비되었는가?	
예산의 적절성 (20)	10	• 예산 항목은 어울림마당 운영 목적에 맞게 제시 되었는가?	
	10	• 세부 산출내역이 근거에 의하여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운영자 및 강사 수당, 출연자 실비보상비의 적정성, 활동 재료, 홍보물, 시설비의 적정성 등)	

■ 매우 그렇다 : 10~9 / 그렇다 : 8~7 / 보통 : 6~5 / 그렇지 않다 : 4~3 / 전혀 그렇지 않다 : 2~1

기준	배점	항목	비고
합 계	100		
동아리 구성 (30)	10	• 동아리 운영 기관이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지역의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는가?	
	5	• 청소년(만 9~24세)이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는가?	
	5	• 연중 10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10	• 동아리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지도자, 학부모, 교사 등)	
사업 내용의 적절성 (50)	10	• 구성 이후 1년 이상 활동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 활동 내용이 창의적이고, 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 향후 지역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 전년도 활동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10	• 청소년 안전 대책이 적절하게 구비되었는가?	
예산의 적절성 (20)	10	• 예산 항목은 청소년 동아리 운영 목적에 맞게 제시 되었는가?	
	10	• 세부 산출내역이 근거에 의하여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강사 수당, 활동 재료, 홍보물 제작, 시설비의 적정성 등)	

■ 매우 그렇다 : 10~9 / 그렇다 : 8~7 / 보통 : 6~5 / 그렇지 않다 : 4~3 / 전혀 그렇지 않다 : 2~1

Ⅲ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

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가. 목 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형태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조직·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개선을 유도

나. 근거 및 경과

- 지원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 추진경과
 - 2006년부터 종합평가 실시(시설유형별 3년 주기)
 - 2014. 7월부터 법적 의무화(평가실시·결과공개) 및 시설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
 - ※ 2018. 6. 13일부터 종합평가 자료제출 거부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사업 주요내용

- (평가대상)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 출수해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 짝수해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사업기간) '22. 1월 ~ '22. 12월(12개월)
- (평가대상 기간) '20. 1. 1 ~ '21. 12. 31(2년간)
 - ※ '20년도 중에 등록된 시설은 등록시점부터 '21.12.31까지 운영실적 평가

- (평가지표) 코로나19로 운영을 하지 못한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 또는 완화하고 청소년 이용률 등 일부 지표는 실태만 조사하고 평가 미반영
* 평가지표(안)에 대하여 피 평가시설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21년 말 지표 확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개별시설에 평가결과(안)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이행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 결과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1 제1항의 사고, 제70조 및 제72조의 처벌(분) 결과 반영

○ (평가등급)

평가등급	적정	보완	미흡
평가점수 (100점기준)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미만

라. 평가등급의 조정 및 감점

- 관련규정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5조
-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기간 중 아래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등급 조정 또는 감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의 사고 발생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및 제72조의 처벌(분)을 받은 경우

■ 조정 및 감점 기준 ■

구 분	기 준
청소년활동진흥법 20조의2 제1항 사건발생	감점 또는 등급조정
청소년활동진흥법70조(고발)	유죄확정시 등급조정
청소년활동진흥법72조(과태료)	1건당 1점 감점

- 평가등급 조정 또는 감점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유예 가능

- 종합 안전·위생 점검과 연계(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
 - 7개 점검분야(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위생) 중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종합평가’ 등급 부여시 보완이하*로 조정
 - * 1개 분야 부적합 : 1등급 하향 조정, 2개 분야 이상 부적합 : 미흡 등급

마. 평가거부의 기준

- 평가기간 중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평가거부로 보며,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미제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함

바.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결과 통보 및 공개
 - (여가부) 교육부 및 지자체에 평가결과 통보 및 대국민 공개*
 - * 홈페이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공개
 - (교육부) 수학여행·수련활동 시 종합평가 결과 활용
 - (기초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개선요구 및 조치결과 확인, 미이행시 시정명령
- 평가거부 시설에 대한 조치
 - (여가부)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시 거부시설임을 명시
 - (교육부) 학교대상 프로그램 참여 제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 (지자체) 과태료부과,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별도의 감독 실시
 - * 종합평가 자료제출 거부 및 지적사항 미이행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흡·매우미흡 등급 시설에 대한 조치
 - (여가부) 지자체에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여부 확인(년 2회 이상)
 - (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피드백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미흡등급이하 시설에 대한 컨설팅
 - (기초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개선요구 및 미이행시 시정명령
 - (수련시설) 지적사항 개선 추진
- 성적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여가부)
 - 성적 우수시설(평가심의위원회 선정)에 대해 “우수시설” 인증 표식 게시(2년간)
 - 장관상 시상 및 부상 제공* 등
 - *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수시설 중에서 선정(시설유형 고려)

사. 사업추진 절차

계약단계	조달계약 의뢰, 입찰 공고	2021. 10~12	■ 조달계약 의뢰(조달청) 및 입찰 공고 ■ 제안서 심사(기술능력 평가)
	계약	2022.1	■ 계약 체결
평가준비 단계	사업설명회 개최 및 평가위원회 구성	1~4월	■ 착수 보고 ■ 평가편람 개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워크숍 ■ 종합평가 사업관련 설명회 개최
	자체평가표 작성· 제출	5~6월	■ 자체평가표 및 자료 제출 - 평가대상자 작성·제출 - 자체평가표 미제출 시설 평가참여 독려
평가실시 단계	서면평가 실시	6~7월	■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실시 - 평가대상 시설별 서면조사표 심사
	현장평가 실시	7~10월	■ 현장평가 실시
	평가결과 정리 및 확정	9~11월	■ 평가 중간보고 ■ 평가결과 개별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내용 심의 및 반영 ■ 종합 안전점검 결과 반영 ■ 차년도 평가지표 개발
	종합평가 결과 공개	12월	■ 교육부, 지자체 통보 ■ 평가결과 일반공개 (여가부, 활동정보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및 정리 단계	최종보고서 작성 및 후속조치	12월	■ 평가 후속조치(최종보고서 보고 및 인쇄) ■ 우수기관 포상 추진

※ 상기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가. 목 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시설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시설개선 및 안전성 확보

나. 근거 및 경과

- 지원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 추진경과
 - 2006년부터 종합 안전점검 실시(시설유형별 3년 주기)
 - 2014. 7월부터 법적 평가실시 의무화 및 시설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
 - ※ 2015. 8월부터 법적 결과공개 의무
 - 2018년부터 안전점검에 위생 분야 추가(시행 '17.9.22.)
 - 안전점검 미참여 수련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행 '18.6.13.)

다. 사업 주요내용

- (점검대상)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 홀수해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 짝수해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여성가족부 : 민간 설치시설 전수 및 공립 시설의 모험시설 및 가스시설
- 지방자치단체 : 관내 공립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 타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도 포함

- (점검분야) 7개 분야(건축·토목·기계·가스·소방·전기·위생)

- (등급판정)

점검분야	등급 구분	비 고
건축·토목·기계·소방	A, B, C, D, E(5등급)	D·E 등급 : 부적합 처리
전기·가스·위생	적합, 부적합(2등급)	부적합 등급 : 부적합 처리

라. 세부 점검방법

1. 중앙 점검

- (점검대상) 민간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전 분야 및 공립청소년수련시설 내 설치된 모험시설, 가스시설
- (점검시기) 코로나 19에 따른 현장상황을 고려 4월~10월 중 시설별 점검 희망시기 조사 후 추진
- (점검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점검

2. 지자체 점검

- (점검대상) 관내 공립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점검기간) 4월~10월 중 선택
 - * 지자체 여건(재난부서 예산사용 등)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 가능하며 이 경우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등록시 지자체 자체수행시설로 등록
- (청소년담당 공무원 점검) 운영* 및 위생**
 - *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안전관련 청소년활동 진흥법 규정사항
 - ** 시·군·구 위생부서 집단급식소 점검을 제외한 청소상태 등 환경 점검
- (전문가* 점검) : 시설(건축·토목·기계), 소방, 전기**
 - * 해당분야(건축, 토목, 소방, 전기 등) 안전점검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공무원, 각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자" 항목 참조)
 - ** 자연권 수련시설은 전기 용량이 커 전문가 점검 필요
- (점검결과) '22.10.30까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공문제출

마. 지자체공무원 대상 안전점검관련 교육실시

- 신규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실시
 - * 교육자료는 여성가족부 나라배움터 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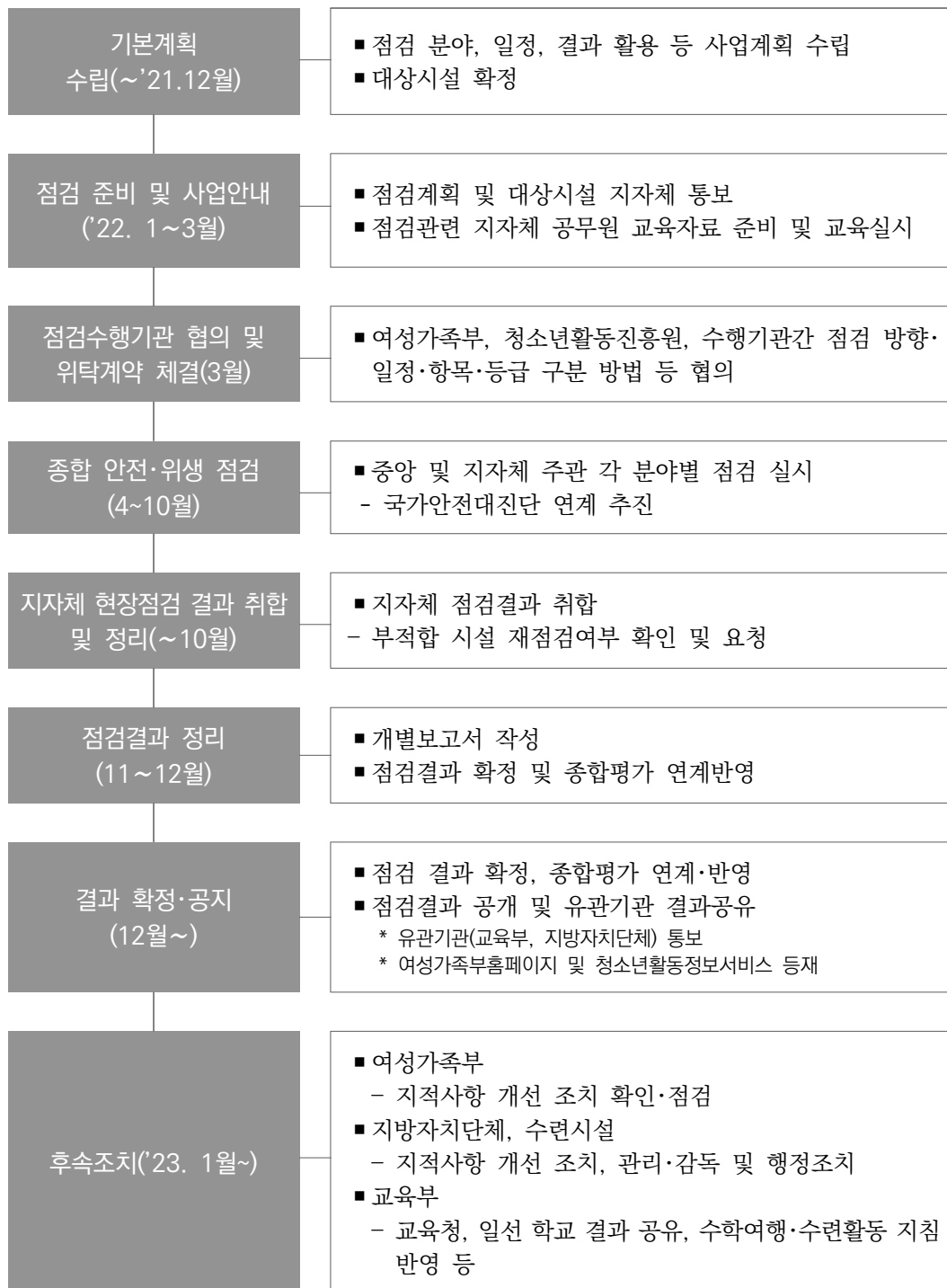
바. 종합평가와 연계(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 7개 점검분야(건축·토목·기계·가스·소방·전기·위생) 중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종합평가' 등급 부여시 보완이하로 조정
 - * 1개 분야 부적합 : 1등급 하향 조정, 2개 분야 이상 부적합 : 미흡 등급

사. 점검결과 활용 및 조치

- 점검 등급 등 결과를 교육부, 지자체 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점검거부 시설명도 공개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결함사항 및 보수·보강방안 등이 포함된 기관별 점검 결과 안내로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 안전성 확보
- 결함 등 점검 지적사항은 개·보수 시정명령 및 조치이행 여부확인 후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조치
- 점검 거부 시설은 과태료 부과 조치

아. 사업추진 절차



자. 점검 인력 자격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따른 건축, 전기·전자, 안전관리(건설안전, 소방, 가스 등)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각 해당분야(건축, 전기·전자, 안전관리 기계 등)의 기사 취득 후 경력이 4년(산업기사의 경우 7년) 이상인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건축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소방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따른 소방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전기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전기·전자 직무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가스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따른 가스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주)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의 중급기술인 이상 포함
2. 해당분야(건축, 토목, 소방 등) 안전점검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공무원 포함

IV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

개요

가. 목 적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전담 지도를 통해 인성 함양, 도전정신 등을 길러줌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역량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 지도사의 배치 등)
- 추진경위
 - '03년도부터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을 추진
 - ※ 배치실적 : ('11년) 316명, ('12년) 351명, ('13년) 349명, ('14년) 368명, ('15년) 374명, ('17년) 374명, ('18년) 374명, ('19년) 414명, ('20년) 430명

다. 2022년 예산

- '22년도 예산액(국비) : 5,318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1인당 연 지원액
 - 기본급 : 1급 12,384천원, 2급 11,760천원, 3급 11,364천원(1.4% 증)
 - * 월 1급 206.4만원 2급 196만원 3급 189.4만원 지원(지방비 50% 포함)
 - 정규직전환 수당 : 1,380천원 이내

2 기본 방향

- 활동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중심으로 수련활동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시설에 우선 배치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되, 1시설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함
- 청소년지도사의 배치(채용) 자격요건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
- 배치 청소년지도사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등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또는 청소년 대피훈련·이용자 안전교육 등 안전업무 담당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시설 운영프로그램 또는 안전교육에 대한 홍보실적 등의 성과(시설별 1개) 및 이용자(청소년, 학부모 등)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환류(분기별 1회 이상)

3 배치지원 계획

가. 배치대상 시설 및 인원 기준

- (지원 대상 및 인원)
 - 대상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중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준수 시설
 - * (청소년수련원) 기존 지원시설에 한하며 지원중
 - ※ '18년부터 기존 지원자 퇴사시 추가지원 불가(대상자를 변경하여 계속 지원시 발견 즉시 지원 중단)
다만, 생활권으로 전환시 변경 보고 후 지원 가능
 - 지원 인원 : 시설별 청소년지도사 1인 인건비 지원(국비 50%)
- (지원 제외대상)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미준수 시설은 제외, 다만
 - ① 도서 및 산간 지역*으로 지도사 구인이 어려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
 - ② 퇴사로 인한 일시적인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은 지원가능
 -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참조

※ 기존 지원시설 중 배치기준을 미준수 시설은 준수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22. 10월 까지 지도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22.11월까지 구인공고 실적 제출(미제출 및 미공고 시설은 익년도 사업 제외)

－ 청소년수련관 내 문화의집

* 청소년수련관(수련원 포함)내 문화의집이 설치된 경우 수련관 또는 문화의집 중 1개 시설에만 배치 지원

나. 지원 인원 및 지원액

○ '22년도 배치계획 : 430명(430개소)

구 분	시설수 (개소)	지원인원(명)			
		소계	1급	2급	3급
합 계	430	430	21	394	15
청소년수련관	156	156	9	146	1
청소년문화의집	267	267	12	241	14
청소년수련원	7	7	-	7	-

○ 1인당 월 국비 지원액(월 기본급)

1급 : 월 1,032천원, 2급 : 월 980천원, 3급 : 월 947천원

※ 지방비 포함시 : (1급) 월 206.4만원 (2급) 월 196만원 (3급) 월 189.4만원

○ 기타 제 수당, 4대 보험금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은 반드시 별도(추가)로 예산 확보하여 지급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체임금 적용으로 국고보조금 월 기본급보다 자체임금의 기본급이 적은 경우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전환 지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관계부처 합동)에 따름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 배치지도사에 대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족한 임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 지방자치단체는 배치지도사 보수 책정시 지도사 간 임금불균형 해소 노력

○ 정규직 전환 수당 지원액

- 지원대상: 지자체 직영시설 또는 직영에 준하는 위탁운영 형식의 시설(지방공기업, 자치단체 설립재단 등)에 채용된 인력

- 지원수당

- ① 복지비: 최대 200천원 / 년(400천원 × 50%)
- ② 급식비: 최대 780천원 / 년(130천원 × 12개월 × 50%)
- ③ 명절휴가비: 최대 400천원 / 년(400천원 × 2회 × 50%)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관계부처 합동)에 따름

다. 배치 청소년지도사 담당임무(역할)

○ 청소년지도사 담당임무(역할)

-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청소년동아리 운영 등 청소년활동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업무

- 청소년 대피훈련·이용자 안전교육 등 안전업무

※ 동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지적('18~'19)으로 성과 관리를 위한 필요성 대두(붙임 4-2)

(지적사항)

- 청소년지도사 활동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한데 상세한 내용이 없어 아쉬움
- 사업 전반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우수평가 사례가 없어 아쉬움

○ 배치 청소년지도사가 위 담당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 지원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청소년활동과 무관한 위탁법인 업무 등은 수행 불가

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조건

○ 각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50% 이상 확보해야함

○ 배치 지도사 퇴사시 신규 인력 채용없이 기존 지도사를 배치지도사로 전환 금지
- 다만, 기존 지도사를 배치지도사로 전환하고 공석인 자리에 다른 청소년지도사를 신규채용을 한 경우 예외 인정

- 시설(재단 포함)내부 인사발령을 통해 업무가 변경된 경우도 인정
 - * 기존 미준수 시설 및 수련원 해당안됨
 - * 기존 근무자 지원 사실 발견시 차년도 지도사 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신규채용자는 정산보고서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 제출)
 - * 7~8월 추진실적 점검시 관련 내용 제출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안전점검 등 국가 정책에 참여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원 제외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 각 시·도에서는 반기별 추진실적 제출시 배치기준 준수현황도 같이 제출 :
【붙임 3】 양식
 - ※ 배치 청소년지도사, 방과후아카데미 등 개별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추가 채용한 청소년지도사는 배치기준에 따른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기 배정된 청소년지도사의 급수에 따라 인력 채용
 - 기 배정된 청소년지도사 등급보다 상위등급을 배치할 경우 부족한 인건비는 시설에서 자체부담하고, 배정된 등급보다 하위등급을 배치할 경우 보조금 잔액 반납
 - ※ 기 배치지도사자의 지도사 자격등급 변경으로 인한 상위등급 채용은 가능

4

배치 청소년지도사 선발 및 배치 절차

가. 청소년지도사 모집

- 모집 주체 : 각 지방자치단체, 해당 청소년시설
 - 해당 청소년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자체 모집 가능
 - ※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와 공개모집을 통해 자체 선발
- 모집방법 : 공개 모집
 - *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널리 공고하고, 기타 세부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청소년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
 -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링크 가능

○ 자격 요건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3급)을 취득(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해당연도 자격연수 신청자 포함*)하고 창의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전담·지도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자
 -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및 자격연수 신청여부 확인
-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자
 - 청소년관련 전문연수 이수 등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 활동 실기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
 -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 분야에 폭 넓은 지식과 비전을 소유한 자로 신분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타 청소년시설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그 자격을 갖춘 자

나. 청소년지도사 선발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실시 원칙, 필요시 실기 추가 가능
- 선발원칙 : 공개모집 ☞ 반드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를 선발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해당연도 자격연수 신청자 포함*)로서 청소년활동을 성실하게 전담·지도할 수 있는 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및 자격연수 신청여부 확인
- 동일시설에서 계속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 향후 채용기간 연장 여부는 근무태도 및 업무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해당시설에서 판단
- 미 개원 청소년수련시설의 배치지도사 채용은 개원 1개월 전부터 가능

다. 청소년지도사 근로조건 및 임금

- 근로계약 체결
 - 해당시설에서는 선발된 청소년지도사와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 체결(근로기준법 준용)
 - ☞【붙임1】 표준 근로계약서 참조
 - ※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 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위탁단체(기관)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등

- 청소년시설의 운영 위탁단체(기관) 변경 시 청소년지도사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 의사에 반해 임의로 중도 퇴직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음

○ 근무조건, 임금 등

- 복무: 근무시간, 공가·휴가, 업무분장 등은 해당시설의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 준용
- 임금

〈기본급〉

- 지도사 1급: 월 206.4만원 이상(국비 1,032천원, 지방비 1,032천원 이상)
- 지도사 2급: 월 196만원 이상(국비 980천원, 지방비 980천원 이상)
- 지도사 3급: 월 189.4만원 이상(국비 947천원, 지방비 947천원 이상)
- 지급 방법: 보수는 매월 당해 시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중도 퇴직자 및 충원으로 인한 후임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보수외 각종 수당 추가 지급〉

- 해당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지도사에게 보수(국비·지방비부담)외에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기말수당, 자격수당, 기타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 4대 보험 부담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관련 법령에 의거 가입
- 사용자 법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반드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적립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동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퇴직적립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 배치지도사에 대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족한 임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가.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시·도에서는 '22.1.14까지 국고 보조금 신청 : 【붙임 2】 양식
- 여성가족부에서 3분기에 걸쳐 국고보조금 교부 : 1월, 4월, 7월

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시·도에서는 상반기 실적 추진을 7. 31일까지 배치 추진실적, 배치기준 준수현황, 담당임무(역할) 추진실적 제출 : 【붙임 3】 양식
- 10월까지 공석이 발생한 경우 11.30까지 구인공고 실적 제출(향후 정산과 비교)
 - 구인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익년 사업에서 제외

횟수	구인실적			
1	구인공고기간		구인공고방법	
	관련자료 캡처			
2	구인공고기간		구인공고방법	

- 시·도에서는 '23. 1. 31까지 배치지원 사업 결과 및 사업정산보고서 제출 : 【붙임 4】 양식
 - 이자발생액도 반드시 보고·반납 조치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시설'의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결과 필히 포함(분기별 1회 이상 실시, 배치 청소년지도사가 참여한 프로그램 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표준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__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 원
 - 상여금 : 있음 () _____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_____ 원, _____ 원
 - _____ 원, _____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_____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_____ (전화 : _____)
 주 소 : _____
 대 표 자 : _____ (서명)

(근로자) 주 소 : _____
 연 락 처 : _____
 성 명 : _____ (서명)

(참고) 유의사항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임금 외에 별도 예산으로 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 사항임)

【붙임 2】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2022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신 청 자	시 도 명			
	부 서 명		담 당 자 명	
	전 화 번 호		이 메 일	
교 부 신 청 액	일 금 원 (₩)			
총 사 업 비 (단 위 : 천 원)	합 계	국비	지방비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1.1. ~ 12.31까지(12개월) ○ 사업내용 :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 청소년수련관 : ○○명(1급 ○명, 2급 ○명, 3급 ○명) - 청소년문화의집 : ○○명(1급 ○명, 2급 ○명, 3급 ○명) - 청소년수련원 : ○○명(1급 ○명, 2급 ○명, 3급 ○명) - 합 계 : ○○○명(1급 ○명, 2급 ○명, 3급 ○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시·도지사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붙 임 : 2022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 계획 1부 (붙임2-1 서식)				

【붙임 2-1】

2022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 계획

(시도명 :)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 종류	급수	성 명	성별	연령 (만)	계속 신규	'22 예산액			비 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강남구	○○수련관	수련관	2급	홍길동	남		계속	00,000	00,000	00,000	
				1급				신규				
								——	작성예시	——		
합 계												

▶ 작성시 유의사항

- 보조금 신청 기일까지 미 채용(배치) 시 기 통보한 수련시설별 배정인원(급수기재) 및 예산액을 기재
(* 추후 채용현황 제출)
- 양식 변경 금지

2022년도 (상반기) 청소년지도사 배치 추진실적 (시도명 :)

(단위 : 천원)

[illegible]

4
정소년활동
아전사연
님

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현황

구 분	시설명	수용 정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상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A)				2022년 현재 배치현황(B)				증감(C=B-A)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기준 충족 여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관	420	1	1	2	4	1	2	1	4	0	1	-1	0	○
	○○청소년 수련관	750	1	1	3	5	0	2	3	5	-1	1	0	0	×
	소 계	.	.	.	.	.	.	.	.	.	.	.	.	.	.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의집	.	.	.	.	.	.	.	.	.	.	.	.	.	.
	××문화의집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청소년 수련원	○○수련원	.	.	.	.	.	.	.	.	.	.	.	.	.	.
	××수련원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붙임 4】

2022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

□ 시·도명 :

□ 사업개요

- 목적 :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전담 지도를 통해 인성 함양, 도전정신 등을 길러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22. 00 ~ 00
- 지원내용 : 청소년지도사 00명 배치지원

□ 사업결과

- 배치지원 사업 추진실적 : 붙임 참조 ☞ 붙임4-1양식
- 배치 청소년지도사 추진 성과·실적(※세부결과 붙임) : ☞ 붙임4-2양식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세부결과 붙임) ☞ 붙임4-3양식, 시·도별 제출양식만 제출

시설수(개)	프로그램(개)	항목별 조사결과			
		1	2-1	2-2	2-3

□ 보조금 정산결과(※ 세부결과 붙임) ☞ 붙임4-1양식에 포함 (단위 : 원)

합 계				국비				지방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위와 같이 2022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 1. .

시·도지사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붙임 4-1】

2022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추진실적

□ 예산 집행현황(시도명)

(단위 : 원)

시군	시설명	급수	성명	성별	근무 기간	'22 예산 집행현황								비고
						국비				지방비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이자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이자	
강남구	○○수련관	1급	○○○		'22.1~12									
	○○문화의집	1급	○○○		'22.1~3									
		2급	○○○		4~									
	○○수련원													
총 계			명											

※ 작성요령

- 중도 퇴직자의 경우 발생 시 근무기간에 전·후임자 연계 작성
-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기재(국비, 지방비 구분)
- 신규채용자는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 제출

【붙임 4-2】

2022년도 배치 청소년지도사 추진 성과·실적 증빙자료 제출양식(시도명)

* 엑셀 양식에 작성 및 제출(①, ③)

① 배치 청소년지도사 운영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실적 현황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프로그램 주요내용	참여인원(연인원)
계			

② 청소년 안전교육 또는 활동프로그램 관련 외부 홍보실적 등 성과 제출(시설당 1개)

jpg파일 또는 pdf파일

〈보도날짜 기사제목(언론사) 순 기재〉
 〈예시: 221221 청소년~~~(한국일보)〉

- ※ 대피·안전관리·안전교육 등의 안전과 관련 내용 홍보·성과 실적 제출 우선
 (없으면 활동프로그램 홍보·성과 제출 가능)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기사 제출 필요X)
 ※ 용량이 클 경우 시·도 담당자가 시도별 10개 정도로 추려서 제출 가능

③ 청소년(또는 이용자) 대피훈련·안전교육 운영 실적 현황

운영일시	장소	내용	대상	참여인원
계				

【붙임 4-3】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시·도별 제출양식〉

□ 시·도명 :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

○ 시설수(전체) :

○ 프로그램수(전체) :

○ 조사인원(전체) : ○○명

○ 항목별 조사결과

조사항목	조 사 결 과	비 고
1.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점수 기재
2. 분야별 만족도		평균점수 기재
2-1. 프로그램		평균점수 기재
2-2. 지도자		평균점수 기재
2-3. 시설/환경		평균점수 기재
3. 인식조사		
3-1. 참여 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항목별 비율
3-2. 참여 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항목별 비율
3-3. 참여희망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항목별 비율
3-4. 충족여부		평균점수 기재
3-5. 도움여부	① % ② %	항목별 비율
3-6. 도움이된 점		요약기재
4. 기타		요약기재

※ 1. 평균점수 : 5점 만점으로 기재

2. 각 시설별 설문조사결과 첨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시설별 작성양식〉

☐ 시 설 명 :

☐ 프로그램명 :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인원 : ○○명

○ 항목별 조사결과

항 목	조 사 결 과	비 고
1.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점수 기재
2. 분야별 만족도		평균점수 기재
2-1. 프로그램		평균점수 기재
2-2. 지도자		평균점수 기재
2-3. 시설/환경		평균점수 기재
3. 인식조사		
3-1. 참여 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항목별 비율
3-2. 참여 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항목별 비율
3-3. 참여희망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항목별 비율
3-4. 충족여부		평균점수 기재
3-5. 도움여부	① % ② %	항목별 비율
3-6. 도움이된 점		요약기재
4. 기타		요약기재

※ 평균점수 : 5점 만점으로 기재

설문지(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 본 설문지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시설 운영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각 질문에 정성껏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각 해당 질문 만족도 체크 란에 “✓”표시를 해주시고, 단답형은 요점만 간략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교 급	성 별
초() 중() 고()	남() 여()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I. 다음은 참여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프로그램명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II. 다음은 각 분야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분 야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러하 지 않다	매우 그러하지 않다
프로 그램	1.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2.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	⑤	④	③	②	①
	3. 흥미롭고 유익했다.	⑤	④	③	②	①
	4. 진행은 나의 수준에 적합했다.	⑤	④	③	②	①
	5.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기자재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받았다.	⑤	④	③	②	①
지도자	1. 친절하다.	⑤	④	③	②	①
	2. 열성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3.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을 이끌어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4. 청소년들을 존중하며 활동을 지도했다.	⑤	④	③	②	①
	5. 폭언이나 욕설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가르쳐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시설/ 환경	1. 활동시설은 청소년에게 맞게 갖추어져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편의시설(매점, 자판기 등)이 잘 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대피로 등 시설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III. 다음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귀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어떠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① 자율적 청소년 활동 ② 학교의무 행사 ③ 자연친화적 활동 ④ 문화체험 활동
 ⑤ 강압적 극기 활동 ⑥ 공동체 활동 ⑦ 기타 (적어주세요:)
2. 귀 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어떠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율적 청소년 활동 ② 학교의무 행사 ③ 자연친화적 활동 ④ 문화체험 활동
 ⑤ 강압적 극기 활동 ⑥ 공동체 활동 ⑦ 기타 (적어주세요:)
3. 귀 하가 향후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한가지 만 선택해주세요.
 ① 봉사과 협동심 함양에 필요한 프로그램
 ② 인권폭력 예방에 필요한 청소년 인권보호 프로그램
 ③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④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⑤ 전문적 직업능력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⑥ 환경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⑦ 과학 및 정보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⑧ 기타(적어주세요:)
4. 귀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교육에서 부족했던 과정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① 매우 아니다
5. 귀하에게 이번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6.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IV.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좋았던 점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어주세요.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V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1

신고제 이해

1-1

사업 개요

- (개념)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실시 계획을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수련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1-2

신고 대상

- (신고 수리 주체)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신고 주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운영하려는 자
 - ※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단체)
(직접 기획·주최, 모집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신고한 수련활동에 단순 참가하는 경우는 제외)
- (신고 기한) 참가자 모집 14일 전
- (신고 대상 참가자 연령) 19세 미만의 청소년
 - ※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하고, 모집 예정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
- (신고 대상 활동 범위)
 - 숙박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 비숙박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등

2 신고 절차

2-1 신고제 추진체계

구 분	주 요 기 능
여성가족부	신고 업무 관련 법령·제도 개선 총괄 신고제도 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보완 요청
시·군·구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접수 신고 현황 관리 및 감독 신고 수리 사항 정보 공개 신고제 관련 위반자 확인, 규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www.youth.go.kr) 운영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지원반 교육 및 관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컨설팅 청소년수련활동 불편사항 등 접수 모니터링 신고지원 인력 확보(신고 교육, 모니터링, 보완사항 검토 등) 신고 현황 이행실태 수시 점검(모니터링)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	신고서 제출 신고 수리 후 규정 준수 •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 조치 •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활동 실시 3일 전)

2-2 신고 관련 업무 절차

- 주최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리기관(주최자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서 제출(모집 14일 전)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를 시스템에서 자동 매칭
 - *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서류는 처리기관 담당자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내 업무지원서비스를 통해 등록 가능
 - ** 각 기관 민원담당 부서에 요청하여 서울행정시스템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연계하여 신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가능

○ 처리기관에서는 접수 후, 구비서류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처리하고, 보완요청의 경우 보완요청 기한 내* 신고자가 보완요청사항 미 이행시 신고 반려 가능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함

- 주최자 등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통해 경력유무(有無) 등 조회 후 경력확인에 따라 별도확인 필요시 관할 경찰관서 또는 해당 등록기준지 시·군·구에만 요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조회는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권한을 각각 받아 모두 확인

- 행안부·경찰청의 조회 절차개선에 따라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를 통합조회

* 하나의 조회메뉴를 통해 통합 조회 가능, 다수건(500~1,000건)조회도 일괄 처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내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 가이드'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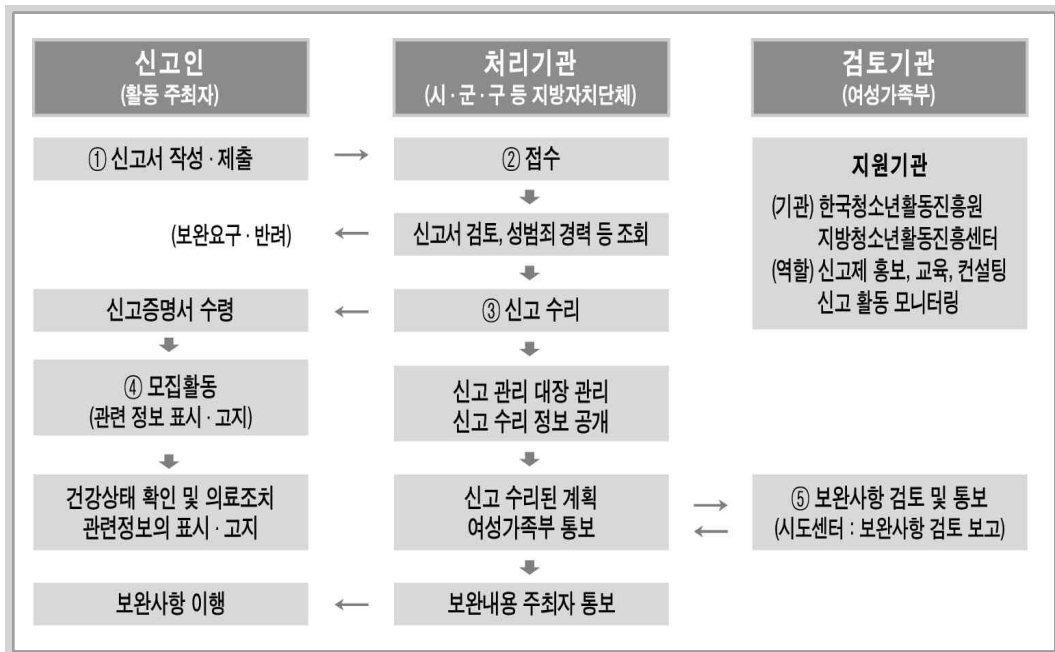
- 신고 수리 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내 업무지원서비스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지체 없이 신고 관리 대장에 기록
 -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경우 신고 수리 시 신고증명서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급 가능하며, 신고 수리 후 별도 정보 등록 절차 불필요
 - 신고관리대장의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등록 시(시스템 수리 완료 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 대장이 자동 생성
 -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전자이미지 관인 사전 등록 필요
- 처리기관에서는 신고 수리된 계획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계획을 검토한 여성가족부는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기관에 보완사항을 통보를 하며, 처리기관은 주최기관에 보완사항 통보
 - 신고시스템(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을 통해 접수된 경우는 별도로 여성가족부 통보 절차는 불필요
 - 오프라인으로 접수 받아 신고 수리한 경우는 신고 수리 사항과 접수된 신고서 일체를 공문으로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에 발송
 - * 다만, 지자체 담당자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수리 사항과 접수된 신고서 일체를 등록할 경우 제외
 - 지자체 담당자가 신고서 일체를 시스템(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는 삭제(음영) 처리 후 등록 실시, 부득이한 경우 비공개 공문으로 별도 송부
 - ** 여성가족부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신고 수리된 계획의 보완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처리기관에서는 주최기관에 활동 실시 전 보완을 하도록 하고, 보완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통보
- 주최자는 신고 수리 후 모집 시 안전점검, 보험가입, 수련활동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모집활동 및 계약 시 인쇄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고지
- 미신고자 또는 신고수리 후 법령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신고수리 전에는 모집 활동 금지
 - 신고수리 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합동으로 신고 수리 활동의 이행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모니터링) 실시

○ 신고 수리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활동 시작 3일 전까지 변경 사유, 관련 서류를 처리기관에 제출

- 변경 가능 범위(예시)

- * (프로그램) 중요 프로그램이 아니며, 전체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2분의1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
- * (활동장소 및 장비) 신고 수리된 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
- * (지도자) 신고 수리된 지도자와 유사 경력 및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신고 수리 절차 ■



2-3 신고 시 구비서류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시행규칙 별표1 운영기준 준수(시행규칙 제1조의2)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 인증서로 제출
- * 대규모(청소년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은 인증을 받아야 신고 수리 가능
- *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 설치 시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 내에서만 수련활동 운영 가능
- *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 조치 후 프로그램을 주최 여부 확인 (시행규칙 별표1.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준 2. 프로그램 운영 '사'항 참조)

-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시행규칙 별지 제2호)
- 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보험증권 등 법 제25조에 따라 주최자가 가입한 보험 가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보험가입 청약서 등 신청서는 가입 증빙 서류로 부적합
 - * 보험 보장금액이 사망·후유장애 8천만원 이상, 부상 1급 1천5백만원 이상 등 가입 확인

2-4 신고 수리 시 유의사항

- 처리기간이 14일이나 가급적 빠른 처리로 주최기관의 참가자 모집 등 업무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처리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 보완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2항 및 3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에서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된 것으로 간주됨('18. 9. 14일부터 시행)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연계·협력
 - 주최기관에서 신고 서류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 각 시·도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신고제 컨설팅 및 설명회, 불편 사항 처리, 신고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및 점검 등 신고제 업무에 지자체 적극 협조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시·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전문기관임

-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 확인 사항
 - 운영계획서 대신 첨부된 인증서의 각 항목과 신고서 및 세부내역서 일치 여부 확인
 - * 결격사유 조회, 세부내역서 및 보험가입 확인 등은 미인증 수련활동 신고 수리 검토 시와 동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 인 증 번 호 : 제 45 호

• 운 영 기 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사업자등록번호 : 106-82-

• 주 소 : [120-7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진양빌딩 5층

• 활 동 명 : 한중 청소년교류(숙박형 - 8박 9일(46.3시간))

• 인 증 유효 기 간 : 2015/05/13 ~ 2019/05/12

• 주 요 활 동 장 소 : 국내·라비올리조트, 중국·북경, 대련, 본계, 정도, 유방, 내룡고

• 참여대상/인원 : 고등, 대학 / 230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결과 위와 같이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09월 30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 필수 확인 사항

- 인증번호 일치 여부
- 운영기관명 일치 여부
- 활동명 일치 여부
- 인증기간(유효기간) 내 신고 여부
- 참여대상 및 인원 일치 여부
(신고서의 인원이 인증서의 인원보다 많은지 등 확인)

3 행정 사항

- 시·군·구에서 신고 수리 후 관련 서류 일체를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로 공문 시행
 - ※ 다만,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해 신고내용이 접수된 경우는 별도 통보 절차가 불필요
- 여성가족부에서 보완 사항을 시·군·구에 통보 한 경우 보완 내용을 주최자에 통보하고, 보완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
-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군·구별 신고 현황과 신고 관련 행정처분 현황을 시·도에서 취합하여 여성가족부 제출
 - 상반기 : '22. 7. 15. 까지
 - 하반기 : '23. 1. 15. 까지

【참고】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유형 구분	프로그램명
수상활동	•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거리 걷기활동	• 10Km 이상 도보이동
위험수반활동	•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및 의무 인증 대상

구 분		신고대상	의무인증대상
영리법인, 단체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청소년수련시설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청소년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회원 대상 실시의 경우)	×	×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비회원 대상 실시의 경우)	×	○
종교단체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보호자*와 함께 하는 활동 * 참가자 개별보호자(부모)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타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단체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 신고 제외 대상

제외대상	예 시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이외 다른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민법」에 의한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 교육관계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상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 영리법인·단체는 신고 대상 ※ 지도·감독에 해당 않는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6에 따른 수련활동 실시 제한 대상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참여 청소년의 개인별 부모 등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 ※ 모집 시 보호자 참여를 홍보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성지순례, 수련회 등을 포함하는 수련활동 ※ 예시 • 종교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단·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 및 개별단체 •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
비숙박 청소년수련활동 중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미만인 수련활동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신고 수리 시 점검 사항

구비서류	점 검 항 목		확인
1.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①	주최자(기관대표)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였는가?	
	②	프로그램명의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하였는가?	
	③	신고인은 확인 가능한가?	
2.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자유양식_인증수련 활동의 경우 제출 면제)	①	프로그램 진행 개요와 전체 일정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가? (목적, 추진일정 및 운영 내용 등)	
	②	사고, 환자 발생에 대비한 긴급 후송 대책이 계획되어 있는가?	
	③	활동 전 참가자와 지도자의 안전교육 시행 계획이 있는가?	
	④	지도자의 역할, 적정인원 배치 확인 할 수 있는가?	
	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확보 계획이 있는가?	
	⑥	숙식을 위한 공간과 장비가 확보가 계획되어 있는가?	
	⑦	보험 증권 등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가?	
	⑧	(이동형의 경우)이동 관리 계획을 포함하였는가?	
	⑨	숙박 장소 현황 및 관리 계획이 있는가?	
	⑩	프로그램의 자원은 구체화시켰는가?(기자재, 소요 예산 등)	
	⑪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인 경우 법 제36조에 의한 인증을 받았는가?	
3.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①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가?(전문·일반·보조지도자)	
	②	주최자 등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범죄경력조회·성범죄 조회, 후견 등기 사항 부존재 확인 등)	
4.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①	주최자(단체)명은 활동계획서와 일치하는가? (활동계획서의 주최자 또는 신고인 여부를 확인)	
	②	주최자(단체)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었는가?	
	③	프로그램명과 활동기간을 기재하였는가? (동일 프로그램의 경우 연 진행기간을 기재)	
	④	프로그램의	인증 여부(인증수련활동인증서 확인)
		안전점검사항을	위험도 높은 활동 여부(시행규칙 별표7)
		표기하였는가	프로그램 위탁 여부
			보험가입 여부(보험증권 등 확인)
	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주체는 표기되었는가? (활동장이 2곳 이상일 때 모두 체크)	
	⑥	활동장소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였는가?	
	⑦	참가대상과 활동규모는 표기하였는가?	
	⑧	프로그램 형태와 구성, 영역은 표시하였는가?	
	⑨	프로그램의 내용을 작성하였는가?	
	⑩	지도인력의 인원수는 작성하였는가?(지도명단과 일치확인)	
	⑪	예산형태는 작성하였는가?	
	⑫	위탁프로그램 현황을 작성하였는가?	
	⑬	위탁프로그램은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시간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 업무 지원 담당자 연락처

지 역		연 락 처	주 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5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2층
지 방 청 소 년 활 동 진 흥 센 터	서 울	02-849-0405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61
	부 산	051-852-346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1
	대 구	053-659-6220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인 천	032-833-80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광 주	062-234-0755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226번길 광주홍사단회관 2층
	대 전	042-488-073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 평송청소년문화센터 3층
	울 산	052-227-0607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세 종	044-864-7935	세종특별자치시 마일로 284 2층 (고운동, 고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경 기	031-232-9383(내선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3층
	강 원	033-731-3704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 원주시민복지센터 4층
		033-641-399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 강릉청소년수련관 2층
	충 북	043-256-450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충북도청 제3별관
	충 남	041-562-900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3,4층
	전 북	063-232-047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64 JK 사이언스 2층
	전 남	061-280-9063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여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4층
	경 북	054-850-1091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2층
	경 남	055-711-135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경남대표도서관 청소년관 3층
	제 주	064-751-504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4(이도2동)

2022년 청소년사업 안내 (I)

2022년 2월 인 쇄

2022년 2월 발 행

발행인 정 영 애

발행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

인쇄처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전화 / 02-325-1585
